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해 양 수 산 부 소 관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최 선 영

목 차

[해양수산부 소관] 1

I. 예산안 개요 1

1. 총 괄 1

가. 총수입·총지출 1

나. 세입·세출예산안 5

다. 기금운용계획안 7

라.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8

2.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10

가. 2025년 신규사업 내역 10

나. 2024년 종료사업 내역 13

3.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14

II. 예산안 총괄 분석 20

1. 수입 관련 20

2. 지출 관련 22

Ⅲ. 회계 · 기금별 검토 ---------- 42

1. 일반회계 ---------- 42

가. 개 요 ---------- 4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45

1)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45

2) 해양수산부 R&D 사업: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51

3)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 국고여객선 펀드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56

4)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 지자체로의 업무 이양에 따른 지방관리항만 소속 관공선에 대한 예산조정 계획 수립 필요 ····· 65

5)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관리 필요 ····· 71

6) 해상안전 국제협력 사업: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철저 필요 ····· 76

7)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82

8)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환율 제고 필요 ····· 8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5

가. 개 요 ····· 9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98

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양식업분야 취업·창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 및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의 장기 운영계획 마련 필요 ····· 98

(1)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99

(2)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운영계획 마련 필요 ····· 103
2)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등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09
3)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 사업추진형태 재검토 필요 등 ····· 115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확대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123
5)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의 집행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33
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 ····· 141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비목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148

3. 교통시설특별회계 ---------- 154

가. 개 요 ····· 15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57
1)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의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57
2)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부지 확보 관련 법안심사 경과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65
(1)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부지 확보 관련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166
(2) 향후 추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72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74

가. 개 요 ····· 17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76
1)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 실제 신조 수요 반영으로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중소·중견선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76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4

가. 개 요 ····· 18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86

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186

2)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패각 친환경처리 사업의 사업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194

(1) 인증부표 보급사업 집행 제고 필요 ····· 197

(2)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의 집행 제고 필요 ····· 202

3)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205

6. 수산발전기금 ---------- 209

가. 개 요 ····· 20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11

1)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211

2)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 연례적인 예산액 조정을 고려한 편성의 정확도 제고 및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16

(1) 예산의 연례적 조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219

(2)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정산자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필요 ····· 222

[해양수산부 소관]

I. 예산안 개요

1. 총 괄

가. 총수입·총지출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됨.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총수입은[1] 1조 3,44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380억원(48.3%) 증가하였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23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91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억원, 수산발전기금 6.890억원임.

---

1)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를 성질별로 보면, 재산수입 340억원, 경상이전수입 5,539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64억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억원, 관유물매각대 1,259억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46억원으로 구성됨.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총수입 】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202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 산	339,899	280,477	655,951	375,474	133.9
- 일반회계	47,395	53,279	423,100	369,821	694.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932	31,820	32,171	351	1.1
- 교통시설특별회계	152,384	183,790	191,814	8,024	4.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49	3,851	3,845	△6	△0.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9	7,737	5,021	△2,716	△35.1
기 금	604,069	626,468	688,995	62,527	10.0
- 수산발전기금	604,069	626,468	688,995	62,527	10.0
합 계	943,986	906,945	1,344,946	438,001	48.3

* 주: 일반수입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2]은 6조 7,83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58억원(1.4%) 증가하였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8,42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6,71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7,73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91억원, 수산발전기금 7,956억원임.

□ 이를 성질별로 보면,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한 경우는 건설비가 전년대비 10.4%(1,903억원) 증가한 2조 136억원, 운영비는 전년 대비 7.5%(243억원) 증가한 3,483억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5%(124억원) 증가한 3,736억원, 출연금(일반 및 연구개발)은 전년 대비 2.2%(128억원) 증가한 6,029억원임

2)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총지출 】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202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 산	5,623,981	5,877,865	5,988,084	110,219	1.9
- 일반회계	3,575,297	1,877,846	1,842,368	△35,478	△1.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24,032	1,679,937	1,671,078	△8,859	△0.5
- 교통시설특별회계	1,490,030	1,753,070	1,773,642	20,572	1.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7,455	63,251	61,802	△1,449	-2.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2,137	503,761	639,194	135,433	26.9
기 금	583,541	810,011	795,603	△14,408	△1.8
- 수산발전기금	583,541	810,011	795,603	△14,408	△1.8
합 계	6,207,522	6,687,876	6,783,687	95,811	1.4

* 주: 일반지출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조 2,37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80억원(20.9%)이 증가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3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7,73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억원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231으로 2024년 대비 3,698억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조 7,736억원으로 2024년 대비 20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50억원으로 2024년 대비 27억원이 감소하였음.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202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	47,395	53,279	423,100	369,821	694.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932	31,820	32,171	351	1.1
교통시설특별회계	1,586,286	1,753,070	1,773,642	20,572	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49	3,851	3,845	△6	△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9	7,737	5,021	△2,716	△35.1
합 계	**1,773,801**	**1,849,757**	**2,237,779**	**388,022**	**21.0**

* 주: 총계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5,68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10억원(1.6%)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42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6,71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7,73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92억원임.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575,300	3,447,126	3,422,432	△24,694	△0.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24,028	1,679,937	1,671,078	△8,859	△0.5
교통시설특별회계	1,490,031	1,753,070	1,773,642	20,572	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7,455	63,251	61,802	△1,449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2,137	503,761	639,194	135,433	26.9
합 계	**7,078,951**	**7,447,145**	**7,568,148**	**121,003**	**1.6**

* 주: 총계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204억원으로 전년 계획안 대비 230억원(△2.7%) 감소한 규모임.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수산발전기금	859.876	843,400	820,384	△23,016	△2,7

* 주: 총계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라.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 2025년도 해양수산부 회계 · 기금간 재정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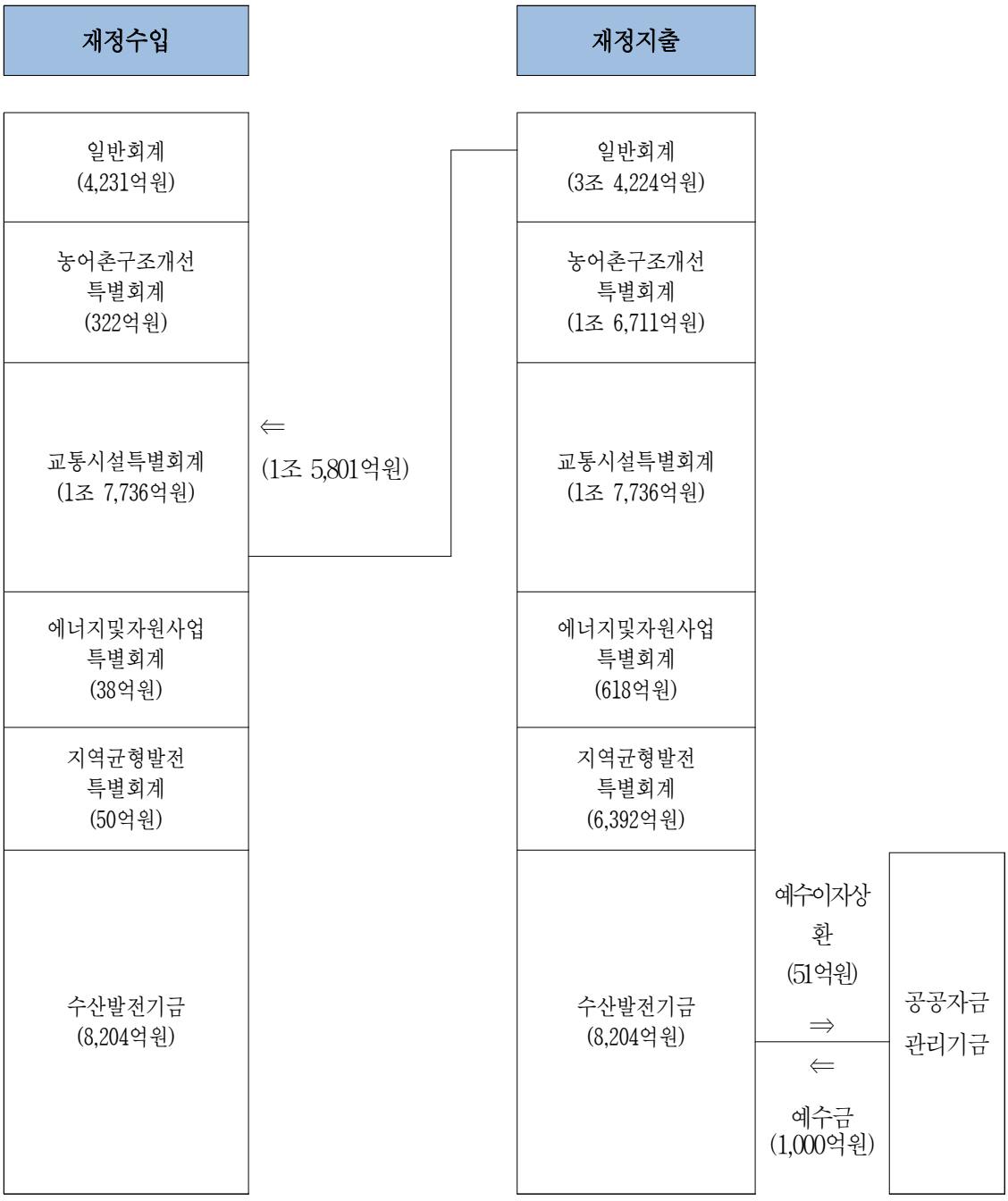

* 자료: 해양수산부

□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5,801억원이 전출되었음.

□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00억원을 예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1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함.

2.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가. 2025년 신규사업 내역

□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598억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감독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속가능한 우량 김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기술개발(R&D)'사업은 기후변화 및 해상 양식환경 변화에 따른 고수온, 갯병, 황백화 현상 등 생산성과 품질저하를 극복하여 연중 고품질의 양식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0억으로 편성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어구 및 국내 침적 폐어구 상시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억 4,5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임.

【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5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합 계(20개 사업)	59,816	
· 남극해 급격한 온난화대응 남극해빙예측기술개발(R&D)	2,600	· 남극 해빙 융해 프로세스 규명 및 국제협력 기반 AI 적용 남극 해빙 장기예측 시스템 개발과 계절 예측 자료 생산
· 아열대 해양환경 적응시나리오 개발 대응책 및 활용체계 구축(R&D)	2,000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자료 표준화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기술 개발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태환경 관리기술 개발(R&D)	1,700	· 국내 해양환경 마이크로바이옴 센서스(다양성 조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해양생태계 위해요소 예측 및 산업적 활용기술개발·검증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건강성 증진
· 해양생물독 생산 및 기능성 활용 기술개발(R&D)	3,100	· (해양생물독 생산) 해양생물독의 특성을 이해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연구 및 기능성 소재 생산기술 개발 · (펩타이드 활용) 글로벌 식이보충제 및 의약소재 펩타이트 발굴, 미 FDA에 건강기능식품 원료(NDI) 승인 신청
· 한·미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기술개발(R&D)	7,450	· 한-미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로 국가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스마트 생산 효율화
· 해양수산딥테크육성기술개발(R&D)	4,125	· 해양수산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해양수산 딥테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 지원
· 해양 블루테크 미래 리더양성 프로젝트(R&D)	4,350	· 친환경·첨단선박, 블루푸드·바이오, 해양레저관광, 해양공간·자원 4대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 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신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
·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124	·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감독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 등
· 국제사회 IUU어업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기술 개발(R&D)	3,000	· 국제사회 IUU어업 근절 강화 기조 대비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활동 감시(기술) 강화와 한국형 EM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상용화 및 국제표준 선도
· 수산부산물산업 활용성 기술 개발사업(R&D)	2,500	· 국내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필요한 소재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산물-수산부산물의 분리 및 저장 기술 개발

사 업 명	'25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 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 사업(R&D)	1,700	· 어촌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 요소기술 고도화 및 자동화 기술개발 추진
· 지속가능한 우량 김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R&D)	6,000	· 국내 양식 김의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 해양아쿠아포닉스기반 에너지절감형 육상양식시스템 구축 및 운용기술개발(R&D)	2,050	· 해양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친환경 육상양식시스템 개발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R&D)	4,400	· 항만장비를 구성·운영하는 핵심부품·시스템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항만장비의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및 국내 항만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한국형 연안재해 정밀예측기술 개발(R&D)	4,300	· 통합 해양예측체계와 연안재해 발생 요인별 예측체계 개발 추진
· 항만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원	1,470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지원 및 선용품 공급업 유통체계 디지털 전환 등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지원	757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반구축(안전성평가), 법정계획 수립, 현황조사, 정책위원회 운영 등
·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375	· 생산자단체 중심의 거점별 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비용 부담완화 및 수산물의 고품질, 안전성 확보
· 감척어선 공공활용	3,045	· 중국 불법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같은 근해안강망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고 대형 근해어선을 활용하여 근해어장의 침적폐어구 수거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	2,770	·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해양수산, 등의 피해 예방·저감을 위한 기초자료인 해양 기후변화 전망 정보의 생산·제공

* 자료: 해양수산부

나. 2024년 종료사업 내역

□ 해양수산부 소관 2024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은 어촌뉴딜300 등 총 20개로, 2024년 해당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액은 총 2,383억 42백만원임.

【 해양수산부 소관 2024년도 종료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4예산	회계명
합 계 (20개 사업)	238,342	
▪ 해양수산기술창업 Scale-up사업(R&D)	4,650	일반회계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1,080	
▪ 해양바이오 원료·제형화 기술개발(R&D)	480	
▪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해수부)(R&D)	100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R&D)	3,335	
▪ 4대강 물길복원에 따른 연안하구역환경, 생태계모니터링 및 활용기술개발(R&D)	285	
▪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촉진(R&D)	1,250	
▪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R&D)	435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R&D)	700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R&D)	1,723	
▪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940	
▪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R&D)	6,156	
▪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1,179	농특회계
▪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R&D)	331	
▪ 컨테이너 스마트화 및 자동통합검색 기술개발(R&D)	3,280	교특회계
▪ 수소선박 안전기술 개발(R&D)	3,940	
▪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R&D)	1,538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21,778	
▪ 부산항 신항만 남컨 배후단지	20,799	
▪ 어촌뉴딜300	164,363	지특회계

* 자료: 해양수산부

3.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및 선제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 6조 7,8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정부 전체 예산안의 약 1.0% 수준임.

2025년도 예산안은 어촌 활력 증진, 해양모빌리티 기술 우위 선점 등에 대한 투자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국내 연근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 해운 환경규제 대응, 해양바이오 산업 및 스마트·자동화 항만 구축 등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과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6조 7,83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58억원(1.4%) 증가하였음.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5조 9,88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7,956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8%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 감 (B-A)	%
▣ 예산+기금(총지출)	66,879	67,837	958	1.4
○ 예산	58,779	59,881	1,102	1.9
○ 기금	8,100	7,956	△144	△1.8

* 자료: 해양수산부

- 부문별로는 수산어촌(2.2%), 해운항만(2.3%), 해양환경(3.1%), 과학기술연구지원(2.4%) 분야는 증가한 반면, 물류등기타(△4.0%) 분야는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문별 총지출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비중(%)	'25예산안 (B)	비중(%)	전년대비 (B-A)	%
총 지출		66,879	100	67,837	100	958	1.4
부문별	◇ 사업비	66,446	99.4	67,380	99.3	934	1.4
	▣ 해양환경	3,356	5.1	3,459	5.1	103	3.1
	▣ 수산어촌	31,026	46.7	31,716	47.1	690	2.2
	▣ 해운항만	20,374	30.7	20,850	30.9	476	2.3
	▣ 물류등기타	9,608	14.5	9,224	13.7	△384	△4.0
	▣ 과학기술연구지원	2,082	3.1	2,131	3.2	49	2.4
	◇ 기본적 경비	432	0.6	457	0.7	25	5.8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2025년도 예산안 800억 6,700만원, 내역신규)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비와 BTL 정부지급금,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및 미래해양과학관의 건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해양박물관·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을 보면 각 기관의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이처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각 기관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은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이 인력 운용 상황에 맞추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내역사업인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2025년도 예산안 84억원)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국고여객선 펀드를 조성하고, 동 펀드를 통해 「해운법」 상 기준선령 20년이 도달한 노후 국고여객선의 대체건조를 하기 위해 정부부담액을 출자하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민간부문 출자 70%, 적용이자율 4.5%를 기준으로 동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향후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재정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펀드를 조성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여 적용이자율 4.82% 초과 시 펀드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내역사업인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사업」(2025년도 예산안 4억 5,000만원, 내역신규)은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과 배터리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장비를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고여객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수송실적 및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국고여객선 외에 전기차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선에 대하여 화재 대응 장비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2025년도 예산안 30억 4,500만원, 신규)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해양에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어구 등을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상 정부 업무위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추진형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

등 다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2025년도 예산안 1,118억 600만원)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의 보급 및 사용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안에 편성된 2025년도 증액분(79억 9,000만원 증액)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2025년도 예산안 20억 200만원)은 연안침식 원인 규명,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등 방재연구와 해안·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연내 함께 집행이 어려운 비목이므로 향후 사업경과에 따른 예산이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2025년에 완료될「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용역 결과 지연 시

완공시기도 늦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예산안 총괄 분석

1. 수입 관련

□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안 총수입[3]은 6,560억원이며, 2020년과 2021년은 결산 결과 매년 예산안에 비하여 실제 수입이 적었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예산안에 비하여 실제 수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해양수산부 총수입 예산안 대비 실제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총수입	296,401	298,424	213,952	329,814	280,477	655,951
실제 수입(결산)	227,927	252,093	238,881	339,899	-	

※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은 70억 2,900만원으로 전체 총수입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3)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 대비 실제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농특세 세입 예산안	6,116	6,316	6,506	6,893	6,859	7,029
농특세 실제 수입(결산)	4,168	2,235	15,109	8,080	-	

※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총수입은 2024년도 대비 133.9%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에 비하여 1.7억원 증가(2.5%)하여 예산안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예산안 총수입 대비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A)	2025년(B)	증감액(B-A)	증감률(B-A/A)
예산안 총수입	280,477	655,951	375,474	133.9%
농특세 세입 예산안	6,859	7,029	170	2.5%

※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2. 지출 관련

□ 2025년도 정부 총지출(안)[4]은 677.4조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3.2%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해양수산부의 총지출은 6조 7,837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1.4% 증가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2025년도 해양수산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1.02%→1.00%)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부처별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비중	
			2024 예산	2025 예산안
총지출	6,566,182	6,774,108	100.0	1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9	0	0.00	0.00
감사원	1,462	1,508	0.02	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54	646	0.01	0.01
경찰청	129,907	135,364	1.98	2.00
고용노동부	336,825	353,661	5.13	5.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7	253	0.00	0.00
공정거래위원회	1,584	1,634	0.02	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6,213	190,178	2.84	2.81
관세청	6,624	6,583	0.10	0.10
교육부	957,888	1,048,767	14.59	15.48
국가교육위원회	103	106	0.00	0.00
국가보훈부	64,057	64,814	0.98	0.96
문화재청	13,659	13,878	0.21	0.20
국가인권위원회	413	424	0.01	0.01
국가정보원	8,921	9,310	0.14	0.1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604	6,747	0.10	0.10
국민권익위원회	1,116	1,054	0.02	0.02
국방부	433,523	451,769	6.60	6.67
국세청	19,512	20,040	0.30	0.30

4)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비중	
			2024 예산	2025 예산안
국토교통부	609,439	582,161	9.28	8.59
국회	7,677	7,762	0.12	0.11
금융위원회	15,031	17,409	0.23	0.26
기상청	4,482	4,698	0.07	0.07
기획재정부	407,195	423,988	6.20	6.26
농림축산식품부	183,392	187,496	2.79	2.77
농촌진흥청	10,974	10,616	0.17	0.16
대법원	21,738	23,127	0.33	0.34
대통령경호처	1,341	1,391	0.02	0.0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31	1,040	0.02	0.02
문화체육관광부	69,545	71,214	1.06	1.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50	358	0.01	0.01
방송통신위원회	491	505	0.01	0.01
방위사업청	176,432	180,607	2.69	2.67
법무부	43,640	44,774	0.66	0.66
법제처	454	463	0.01	0.01
병무청	4,119	4,732	0.06	0.07
보건복지부	1,223,779	1,256,565	18.64	18.55
산림청	26,126	26,246	0.40	0.39
산업통상자원부	115,188	115,010	1.75	1.70
새만금개발청	477	1,128	0.01	0.02
소방청	3,404	3,311	0.05	0.05
식품의약품안전처	7,182	7,489	0.11	0.11
여성가족부	16,861	17,769	0.26	0.26
외교부	41,905	43,194	0.64	0.64
우주항공청	0	9,614	0.00	0.14
원자력안전위원회	1,360	1,488	0.02	0.02
인사혁신처	266,541	284,888	4.06	4.21
재외동포청	1,067	1,071	0.02	0.02
조달청	2,425	2,466	0.04	0.04
중소벤처기업부	149,497	152,920	2.28	2.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2	3,635	0.13	0.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67	169	0.00	0.00
질병관리청	6,488	4,921	0.10	0.07
통계청	4,253	5,628	0.06	0.08
통일부	10,965	10,554	0.17	0.16
특허청	5,485	5,641	0.08	0.08
해양경찰청	18,967	19,923	0.29	0.29
해양수산부	66,879	67,837	1.02	1.00
행정안전부	724,474	720,872	11.03	10.6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48	2,288	0.02	0.03
헌법재판소	568	585	0.01	0.01
환경부	135,534	139,819	2.06	2.06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정부 총지출 중 해양수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 1.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안은 1.00%임.

【정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안)
비중	1.09	1.1	1.05	1.01	1.01	1.00

※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9조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 일반·지방행정(111.3조원), 교육(98.5조원)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R&D(11.8%), 보건·복지·고용(4.8%), 환경(4.0%) 등의 순으로 높고, 전년 대비 총지출 규모가 감소한 분야는 SOC(△3.6%) 분야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5년 예산안은 25.9조원으로, 2024년도에 비하여 1.9% 증가하였음.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본예산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1.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2. 교육	95.2	98.5	3.3	3.5
3.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4. 환경	12.5	13.0	0.5	4.0
5. R&D	26.5	29.7	3.2	1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7. SOC	26.4	25.5	△0.9	△3.6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9
9. 국방	59.4	61.6	2.2	3.6
10. 외교·통일	7.5	7.8	0.3	3.7
11. 공공질서·안전	24.4	25.1	0.7	2.6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난 5년간 증가율은 5.1%로 12대 분야 중 세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향후 5년간 증가율은 1.4%로 네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12대 분야 재원배분 변화】

(단위 : 조원, %)

구분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1 본예산	2022 본예산	2023 본예산	지난 5년간 증가율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2026 계획	2027 계획	2028 계획	향후 5년간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61.0	180.5	199.7	217.7	226.0	8.8	237.6	249.0	261.0	273.5	286.3	4.8
2. 교육	70.6	72.6	71.2	84.2	96.3	8.1	95.2	98.5	102.1	105.5	108.9	3.4
3. 문화・체육・관광	7.2	8.0	8.5	9.1	8.6	4.5	8.7	8.8	8.9	9.0	9.1	1.0
4. 환경	7.4	9.3	10.6	11.9	12.2	13.3	12.5	13.0	13.1	13.3	13.4	1.7
5. R&D	20.5	24.1	27.4	29.8	31.1	11.0	26.5	29.7	30.0	30.3	30.5	3.5
6. 산업・중기・에너지	18.8	37.2	28.6	31.3	26.0	8.4	28.0	28.3	28.6	29.0	29.3	1.1
7. SOC	19.8	23.2	26.5	28.0	25.0	6.0	26.4	25.5	26.0	26.4	26.9	0.4
8. 농림・수산・식품	20.0	21.5	22.7	23.7	24.4	5.1	25.4	25.9	26.3	26.6	26.8	1.4
9. 국방	46.7	50.2	52.8	54.6	57.0	5.1	59.4	61.6	63.4	65.4	67.1	3.1
10. 외교・통일	5.1	5.5	5.7	6.0	6.4	5.8	7.5	7.8	7.9	8.0	8.1	1.9
11. 공공질서・안전	20.1	20.8	22.3	22.3	22.9	3.3	24.4	25.1	25.7	26.3	26.8	2.3
12. 일반・지방행정	76.6	79.0	84.7	98.1	112.2	10.0	110.5	111.3	118.9	125.4	131.9	4.5

* 향후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로 작성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안은 1조 935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574억원(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31개 부처 중 10번째로 큰 규모임.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안 부처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보건복지부	536,579	530,569	94.7	15,588	2.8	13,940	2.5	560,097
환경부	76,361	3,477	4.4	69,017	87.0	6,862	8.6	79,356
교육부	52,697	55,010	73.1	20,252	26.9	-	0.0	75,263
국토교통부	69,804	32,372	44.9	30,647	42.5	9,021	12.5	72,039
농림축산식품부	55,169	-	0.0	22,740	40.1	33,932	59.9	56,672
행정안전부	24,553	4,127	23.6	13,362	76.4	-	0.0	17,488
여성가족부	14,491	5,323	34.9	892	5.9	9,017	59.2	15,233
문화체육관광부	12,062	1,606	12.2	4,164	31.6	7,403	56.2	13,173
산림청	10,945	4,672	42.3	6,366	57.7	-	0.0	11,038
해양수산부	10,361	676	6.2	10,094	92.3	165	1.5	10,935
산업통상자원부	7,196	245	3.4	5,019	69.7	1,938	26.9	7,202
국가유산청	6,524	5,936	88.8	282	4.2	470	7.0	6,689
기획재정부	6,342	-	0.0	-	0.0	6,322	100.0	6,322
농촌진흥청	2,223	896	43.4	1,169	56.6	-	0.0	2,065
고용노동부	2,505	854	43.2	1,120	56.7	1	0.1	1,975
중소벤처기업부	1,473	-	0.0	1,658	98.8	20	1.2	1,6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6	33	2.2	1,473	97.8	-	0.0	1,506
식품의약품안전처	745	733	95.0	38	5.0	-	0.0	771
외교부	70	501	100.0	-	0.0	-	0.0	501
법무부	372	1	0.3	-	0.0	386	99.7	387
소방청	237	287	100.0	-	0.0	-	0.0	287
통일부	222	106	92.2	-	0.0	9	7.8	115
대법원	142	112	100.0	-	0.0	-	0.0	112
질병관리청	171	108	100.0	-	0.0	-	0.0	108
새만금개발청	22	93	100.0	-	0.0	-	0.0	93
경찰청	67	27	35.0	50	65.0	-	0.0	77
국가보훈부	106	43	64.3	24	35.7	-	0.0	67
방위사업청	23	30	100.0	-	0.0	-	0.0	3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8	100.0	-	0.0	-	0.0	8
재외동포청	-	7	100.0	-	0.0	-	0.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	0.0	2	100.0	-	0.0	2
국방부	1	-	0.0	-	0.0	1	100.0	1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	-	-	-	-	-	-	-
총계	892,667	647,851	68.8	203,957	21.7	89,488	9.5	941,296

※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해양수산부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은 5,155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1,240억원(19.4%) 감소하였으며, 민간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총 42개 부처 중 해양수산부의 민간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번째로 나타남.

【2025년도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 부처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농림축산식품부	33,439	1,996	5.8	27,185	78.9	5,294	15.4	34,475
문화체육관광부	29,425	13,485	46.8	1,141	4.0	14,218	49.3	28,844
산업통상자원부	26,167	6,522	29.1	10,082	44.9	5,831	26.0	22,435
중소벤처기업부	23,906	7,872	36.8	195	0.9	13,332	62.3	21,399
보건복지부	10,697	12,064	87.5	482	3.5	1,236	9.0	13,783
국토교통부	13,470	4,254	34.4	6,753	54.6	1,354	11.0	12,360
환경부	8,875	29	0.3	9,629	99.6	7	0.1	9,665
기획재정부	8,443	49	0.6	-	0.0	7,446	99.4	7,495
고용노동부	5,974	3,984	60.7	143	2.2	2,433	37.1	6,561
외교부	7,050	6,387	100.0	-	0.0	-	0.0	6,387
통일부	5,500	126	2.4	-	0.0	5,188	97.6	5,314
해양수산부	6,395	1,401	27.2	3,715	72.1	39	0.8	5,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90	79	2.4	609	18.0	2,691	79.6	3,380
교육부	5,070	1,940	70.6	809	29.4	-	-	2,749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산림청	1,869	1,501	84.7	270	15.3	-	-	1,771
법무부	1,422	1,283	85.7	-	0.0	214	14.3	1,497
국가유산청	1,094	987	86.1	-	0.0	159	13.9	1,146
국가보훈부	1,176	1,004	90.7	94	8.5	9	0.8	1,106
행정안전부	731	816	97.0	25	3.0	-	-	841
특허청	776	-	-	789	100.0	-	-	7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10	531	100.0	-	0.0	-	-	531
여성가족부	525	395	75.3	-	0.0	130	24.7	524
국방부	420	327	69.4	-	-	144	30.6	471
식품의약품안전처	372	224	100.0	-	-	-	-	224
금융위원회	136	141	100.0	-	-	-	-	141
질병관리청	132	134	100.0	-	-	-	-	134
방송통신위원회	122	120	100.0	-	-	-	-	120
국회	104	102	100.0	-	-	-	-	1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90	100.0	-	-	-	-	90
새만금개발청	-	65	100.0	-	-	-	-	65
대법원	43	-	-	-	-	43	100.0	43
조달청	9	-	-	21	100.0	-	-	21
경찰청	19	20	100.0	-	-	-	-	20
농촌진흥청	37	20	100.0	-	-	-	-	20
해양경찰청	17	17	100.0	-	-	-	-	17
국세청	15	14	100.0	-	-	-	-	14
방위사업청	28	12	100.0	-	-	-	-	12
우주항공청	-	3	100.0	-	-	-	-	3
국조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2	100.0	-	-	-	-	2
국가인권위원회	2	2	100.0	-	-	-	-	2
공정거래위원회	2	2	100.0	-	-	-	-	2
재외동포청	8	2	100.0	-	-	-	-	2
국민권익위원회	1	1	100.0	-	-	-	-	1
소방청	1	-	-	-	-	-	-	-
총계	198,153	68,002	35.8	61,942	32.7	59,770	31.5	189,714

※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 5,369억원으로 2024년에 비하여 11.8% 증가하였는바, 2025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은 2,159억원으로 9.5% 증가하여 해양수산부 R&D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 전체 및 해양수산부부 R&D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정부 전체 R&D	265,369	296,783	31,414	11.8
해양수산부 R&D	7,518(7,307)	8,233(7,488)	715(181)	9.5(2.5)

※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 작성(괄호는 기후대응기금 제외 금액)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025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751,818 (730,700)	823,319 (748,810)	71,501 (18,110)	9.5 (2.5)
주요 R&D	638,697 (617,579)	718,374 (643,865)	79,677 (26,286)	12.5 (4.3)
(다부처)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 및실증(R&D)	500	2,000	1,500	300.0
AI기반스마트어업관리시스템개발(R&D)	2,996	4,996	2,000	66.8
CO2수송-주입복합기능선박기술개발(R&D)	1,347	1,800	453	33.6
EEZ관심해역및해양과학탐사기술개발(R&D)	5,802	5,802	0	전년동
LNG벙커링동시작업기술개발(R&D)	720	1,220	500	69.4
갯벌공간정보변화모니터링기술개발(R&D)	2,994	2,994	0	전년동
고품질준실시간해양그리드데이터서비스체계 개발(R&D)	2,217	3,067	850	38.3
과학기술기반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 (R&D)	3,360	3,360	0	전년동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
관할해역첨단해양과학기지구축및융합연구(R&D)	7,384	16,466	9,082	123.0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해수부)(R&D)	7,925	8,425	500	6.3
국제사회IUU어업예방을위한원양어선전자모니터링기술개발사업(R&D)	-	3,000	3,000	순증
국제표준기반지상파-위성통합VDES체계기술개발(R&D)	2,636	3,436	800	30.3
극지해양환경및해저조사연구사업(R&D)	6,186	7,994	1,808	29.2
극한지개발및탐사용협동이동체시스템기술개발(다부처)(R&D)	2,207	2,970	763	34.6
급격한남극빙상용융에따른근미래전지구해수면상승예측기술개발(R&D)	3,896	4,541	645	16.6
기후변화예측력향상을위한대양연구(R&D)	5,529	5,529	0	전년동
남극해급격한온난화대응남극해빙예측기술개발(R&D)	-	2,600	2,600	순증
대체해조육및수산배양육기술개발(R&D)	3,420	4,120	700	20.5
머신러닝기반해저면특성분류기술개발(R&D)	2,670	3,170	500	18.7
민군활용AI기반융복합해양데이터분석기술개발및보안플랫폼구축(R&D)	2,400	3,200	800	33.3
블루카본증대를위한세라믹계융합소재활용해양인공구조물개발(R&D)	525	1,600	1,075	204.8
빅데이터기반해양바이러스제어및마린바이오틱스(R&D)	5,362	4,462	△900	△16.8
생태계기반수산정책지원기술개발(R&D)	1,920	2,700	780	40.6
선박배출온실가스(GHG)통합관리기술개발(R&D)	3,000	7,774	4,774	159.1
선체부착생물처리기술개발(R&D)	4,784	5,654	870	18.2
수산물신선유통스마트기술개발(R&D)	4,725	3,875	△850	△18.0
수산부산물산업활용성기술개발사업(R&D)	-	2,500	2,500	순증
수산생물질병대응및안전한의약품사용기술개발(R&D)	8,039	8,090	51	0.6
수산시험연구(R&D)	40,265	43,674	3,409	8.5
수산식품산업맞춤형기술개발사업(R&D)	3,606	1,950	△1,656	△45.9
수산업현장맞춤형기술고도화사업(R&D)	-	1,700	1,700	순증
수산연구시설및선박관리(R&D)	30,254	29,847	△407	△1.3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
수산전문인력양성(R&D)	3,700	3,700	0	전년동
수산종자산업디지털혁신기술개발사업(R&D)	3,700	3,700	0	전년동
수출입물류항만-내륙연계기술개발(R&D)	5,505	4,451	△1,054	△19.1
순환적응형연안침식관리기술개발(R&D)	2,134	2,988	854	40.0
스마트선박용수로정보표준개발(R&D)	2,000	2,400	400	20.0
스마트항로표지및연계기술개발(R&D)	4,725	7,125	2,400	50.8
스마트항만기술산업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R&D)	-	4,400	4,400	순증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연계기술개발(R&D)	5,113	5,113	0	전년동
스마트해양조사및정보활용기술개발(R&D)	5,686	5,100	△586	△10.3
심해저광물자원기술개발(R&D)	7,094	10,000	2,906	41.0
아열대해양환경적응시나리오개발대응책및활용체계구축(R&D)	-	2,000	2,000	순증
연어류예방양식연구(R&D)	1,848	2,152	304	16.5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R&D)	500	500	0	전년동
유수식디지털양식혁신기술개발사업(R&D)	7,000	7,140	140	2.0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R&D)	10,540	5,697	△4,843	△45.9
지상파항법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R&D)	2,430	7,070	4,640	190.9
지속가능한우량김종자생산및육상양식기술개발사업(R&D)	-	6,000	6,000	순증
차세대쇄빙연구선건조사업(R&D)	18,103	7,861	△10,242	△56.6
천리안2B호산출물정확도향상연구사업(R&D)	4,677	4,677	0	전년동
천해용수중모빌리티기술개발(R&D)	1,000	2,597	1,597	159.7
쿠로시오해류로인한한반도해양위기대응기술개발(R&D)	2,500	2,500	0	전년동
한국형연안재해정밀예측기술개발(R&D)	-	4,300	4,300	순증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사업(R&D)	42,654	31,704	△10,950	△25.7
한-미공동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R&D)	-	7,450	7,450	순증
항만하역장비자동화시스템기술개발(R&D)	3,089	2,100	△989	△32.0
해상디지털통합활용연계기술개발(R&D)	4,200	1,800	△2,400	△57.1
해상물류통신기술검증테스트베드구축(R&D)	3,636	3,636	0	전년동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사업(해수부)(R&D)	1,545	1,720	175	11.3
해양공간디지털트윈적용및활용기술개발(R&D)	5,975	6,675	700	11.7
해양기후변화진단및장기전망연구(R&D)	3,392	5,475	2,083	61.4
해양디지털항로실증기술개발(R&D)	3,909	8,448	4,539	116.1
해양레저장비및안전기술개발(R&D)	6,200	5,580	△620	△10.0
해양마이크로바이옴기반생태환경관리기술개발(R&D)	-	1,700	1,700	순증
해양무인시스템실증시험평가기술개발(R&D)	3,959	8,314	4,355	110.0
해양미세플라스틱오염대응및관리기술개발(R&D)	2,855	5,630	2,775	97.2
해양바이오산업소재국산화기술개발(R&D)	3,220	5,115	1,895	58.9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R&D)	6,100	7,500	1,400	23.0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선박개발및실증(R&D)	227	200	△27	△11.9
해양생물독생산및기능성활용기술개발(R&D)	-	3,100	3,100	순증
해양블루테크미래리더양성프로젝트(R&D)	-	4,350	4,350	순증
해양수산딥테크육성기술개발사업(R&D)	-	4,125	4,125	순증
해양수산부산물바이오소재화기술개발(R&D)	2,000	3,000	1,000	50.0
해양수산산업핵심기자재국산화및표준화기술개발(R&D)	2,641	2,591	△50	△1.9
해양아쿠아포닉스기반에너지절감형육상양식시스템구축및운용기술개발(R&D)	-	2,050	2,050	순증
해양위험유해물질(HNS)배출등관리기술개발(R&D)	6,632	7,132	500	7.5
해양유해물질오염원추적기법개발(R&D)	2,846	3,146	300	10.5
해양치유자원효능검증및활용기술개발(R&D)	1,621	1,010	△611	△37.7
해저공간창출및활용기술개발(R&D)	4,100	5,530	1,430	34.9
해저활성단층특성규명연구(R&D)	2,550	4,500	1,950	76.5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R&D)	70,082	78,123	8,041	11.5
극지연구소운영지원(R&D)	71,236	75,895	4,659	6.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운영지원(R&D)	37,476	40,279	2,803	7.5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
(다부처)CBM+기반기술적용하이브리드엔진시스템개발(R&D)	1,080	-	△1,080	순감
4대강물길복원에따른연안하구역환경,생태계모니터링및활용기술개발(R&D)	285	-	△285	순감
ICT기반항만인프라스마트재해대응기술개발(R&D)	660	-	△660	순감
극지유전자원활용기술개발사업(R&D)	435	-	△435	순감
기후변화에따른해양생태계반응변화연구(R&D)	700	-	△700	순감
수소선박안전기준개발(R&D)	3,940	-	△3,940	순감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R&D)	331	-	△331	순감
자율협력주행기반화물운송시스템개발및실증(R&D)	6,156	-	△6,156	순감
전기추진차도선및이동식전원공급시스템개발(R&D)	1,723	-	△1,723	순감
중소선박보급형온실가스등저감장치개발(R&D)	940	-	△940	순감
차세대수산물품질관리및검역시스템구축(R&D)	1,179	-	△1,179	순감
컨테이너스마트화및자동통합검색기술개발(R&D)	3,280	-	△3,280	순감
해양PNT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1,538	-	△1,538	순감
해양바이오원료제형화기술개발(R&D)	480	-	△480	순감
해양수산기술창업Scale-up사업(R&D)	4,650	-	△4,650	순감
해양수산신산업기술사업화지원(R&D)	1,080	-	△1,080	순감
해양장비연구성과활용촉진(R&D)	1,250	-	△1,250	순감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저감을위한기술개발(R&D)	3,335	-	△3,335	순감
해양플랜트친환경해체실용화기술개발(다부처)(R&D)	100	-	△100	순감
블루카본기반기후변화적응형해안조성기술개발(R&D)/(기후대응기금)	7,411	7,411	0	전년동
에너지절감형친환경어선개발연구(R&D)/(기후대응기금)	5,197	5,697	500	9.6
친환경선박혼합연료기술개발및실증(R&D)/(기후대응기금)	6,490	5,110	△1,380	△21.3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
해양CCS중규모실증을위한해양환경평가감시체계및기반기술개발(R&D)/(기후대응기금)	2,020	2,020	0	전년동
녹색해운항로구축을위한탄소중립선박연료공급기술개발및국제협력기반조성(R&D)/(기후대응기금)	-	4,150	4,150	순증
탄소저감형해양플랜트전환기술개발및실증(R&D)/(기후대응기금)	-	3,400	3,400	순증
내항선박연료전환및효율향상기술개발(R&D)/(기후대응기금)	6,025	8,751	2,726	45.2 * 기후기금 이관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R&D)/(기후대응기금)	1,000	4,230	3,230	323.0 * 기후기금 이관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해수부)(R&D)/(기후대응기금)	18,883	17,186	△1,697	△9.0 * 기후기금 이관
탄소중립실현을위한파력발전상용화기술개발(R&D)/(기후대응기금)	1,796	6,974	5,178	288.3 * 기후기금 이관
해양재생에너지연계해양그린수소생산기술개발(R&D)/(기후대응기금)	7,964	4,480	△3,484	△43.7 * 기후기금 이관
해양탄소재순환가치사슬실현을위한해상메탄올생산및운송기술개발(R&D)/(기후대응기금)	1,700	5,100	3,400	200.0 * 기후기금 이관
일반 R&D	113,121	104,945	△8,176	△7.2
해양수산과학기술국제협력고도화(R&D)	3,000	3,000	0	전년동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정보화,R&D)	4,079	3,551	△528	△12.9
(총액)국립수산과학원인건비(R&D)	49,486	50,858	1,372	2.8
(총액)국립수산과학원기본경비(R&D)	3,611	3,810	199	5.5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기본경비(R&D)	1,079	1,140	61	5.7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44	44	0	전년동
(총액)국립수산과학원공익요원경비(R&D)	13	14	1	7.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사업(R&D)	16,739	17,221	482	2.9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운영지원(R&D)	5,620	6,537	917	16.3
극지연구소시설지원(R&D)	3,069	3,612	543	17.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시설지원(R&D)	8,620	2,878	△5,742	△66.6
한국해양과학기술원시설지원(R&D)	17,761	12,280	△5,481	△30.9

※ 자료 : 해양수산부

□ 한편, 해양수산부가 13개 소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해양수산부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23 결산	2024 본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2,669	87,843	90,403	2,560	2.9
극지연구소	93,962	74,305	79,507	5,202	7.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5,013	46,096	43,157	△2,939	△6.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3,350	22,359	23,758	1,399	0.6
국립해양박물관	8,883	8,634	8,949	315	3.6
국립해양과학관	8,512	8,266	9,173	907	1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7,413	12,018	4,605	62.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3,001	31,546	30,820	△726	△4.4
한국수산자원공단	71,543	66,289	73,900	7,611	11.5
한국항로표지기술원	7,094	6,968	7,047	79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4,318	39,657	44,326	3,609	9.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2,502	43,263	46,044	2,781	6.4
해양환경공단	111,833	111,887	미정	-	-
계	572,680	554,526	469,102	-	-

※ 자료 : 해양수산부

□ 각 공공기관 전체 예산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경우 소요 예산 전액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공공기관별 해양수산부 지원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24년			2025년		
	전체 예산(A)	해수부 지원예산(a)	비중 (a/A)	전체 예산(B)	해수부 지원예산(b)	비중 (b/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9,032	87,843	52.0	171,592	90,403	52.7
극지연구소	110,516	74,305	67.2	115,718	79,507	68.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27,660	46,096	36.1	124,721	43,157	34.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2,359	21,659	96.9	23,758	23,758	100
국립해양박물관	8,634	8,634	100	8,949	8,949	100
국립해양과학관	8,266	8,266	100	9,173	9,173	100
국립인천해양박물관	7,413	7,413	100	12,018	12,018	10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8,396	31,546	82.1	38,241	30,820	80.6
한국수산자원공단	126,878	66,289	52.2	미정	73,900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372	6,968	67.2	10,670	7,047	66.0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1,815	39,657	64.2	60,536	43,266	71.5
해양환경공단	250,076	111,887	44.7	미정	109,269 (잠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9,333	43,263	87.7	53,244	46,044	86.5
계	990,750	553,826	55.9	628,620	577,311	-

* 공공기관 전체예산 미확정 기관의 경우 '24.11월 기관예산 편성, '24.12월 이사회 심의 후 확정 예정 (한국수산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 자료 : 해양수산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요약표(해수부)

연번	회계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백만원)	주제(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일반회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80,067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기관은 인력충원방안을 마련하고, 출연금이 인력 운용 상황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2		해양수산부 R&D 사업	823,319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해양수산부 R&D 사업에서 징수해야 하는 기술료의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국고여객선 건조	10,850	국고여객선 펀드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동 사업은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재정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증가 시 본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여 적용이자율이 4.82% 초과 시 펀드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	
4		관공선 건조 및 운영	23,122	지자체로의 업무 이양에 따른 지방관리항만 소속 관공선에 대한 예산조정 계획 수립 필요	지방관리무역항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자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공선 9척에 대해서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방관리항만 소속 관공선의 운영비 등을 향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양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5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관리 필요	동 내역사업은 지원대상 선정 시 연료공급선의 선령이 짧은 선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동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정부가 '질량유량계'에 대한 점검·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할 것	
6		해상안전 국제협력	8,448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철저 필요	내역사업인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며,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외국인만큼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7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9,201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고여객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기차 수송실적 및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국고여객선 외에 전기차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선에 대하여 화재 대응 장비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10,350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환율 제고 필요	동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참여 선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조율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농특회계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48,762	양식업분야 취업·창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 및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의 장기 운영계획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양식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취업·창업률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컨설팅사업을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취업·창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완공 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마련할 것	
10		어선거래제도 운영	509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등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동 세부사업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시정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할 것	
11		감척어선공공활용	3,045	사업추진형태 재검토 필요 등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상 정부 업무위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추진형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주제(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92,757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확대 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해양수산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3톤 미만 어선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3년간 79~81%인 점을 고려해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입대상으로 산출한 가입예정 어선원의 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할 것	
13		수산 공익직불제	111,806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의 집행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의 보급 및 사용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안에 편성된 2025년도 증액분(79억 9,000만원 증액)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14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7,213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	두 사업의 경우 타 부처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되고 있다는 점, 최근 3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해당 회계의 세입으로 세출예산 충당이 지속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고려시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검토할 것	
			44,958			
15		연안국과의 협력(ODA)	44,958	비목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비목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 없는 홍보물품 경비의 편성·집행은 지양할 것	
16	교특 회계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9,180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의 예산 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동 내역사업은 공사비 등을 연례적으로 전용·불용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하고, 동 내역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17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2,002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부지 확보 관련 법안심사 경과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과 부지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강원도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안위에 제출된 개정안의 심사경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사업관리 철저 필요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연내 함께 집행이 어려운 비목이므로 향후 사업경과에 따른 예산이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18	에너지 자원 특별 회계	글로벌 저탄소 정책 대응 지원	23,050	실제 신조 수요반영으로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중소·중견선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선종별 실제 선가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현실화된 선가와 실제 차등 지원비율을 반영하는 등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노후 선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선사의 소유 선박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보조율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9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7,961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 미흡,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전북·경북)에 대해 지자체의 사업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2025년 편성 예산을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지특 회계	친환경어구 보급	17,070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의 사업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해양수산부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하여 집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의 사업여건 및 수요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 및 재활용 촉진 목적 등을 고려해 육상처리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것	
21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200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대상인 특수목적선의 설계·건조 및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주제(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22	수발기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 복원사업	5,260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공고, 착공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3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131,286	연례적인 예산액 조정을 고려한 편성의 정확도 제고 및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해양수산부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내에서 산지유통활성화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수요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산물 실질 거래 상황과 타 사업의 예산편성 규모를 고려하여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정산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Ⅲ. 회계 · 기금별 검토

1. 일반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695.6%(3,698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여수박람회투자반환금[5]이 포함되어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531.6	4,229.6	3,698	695.6
○ 관유물대여료	31	34	3	9.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	41	25	156.3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	2	-	-
○ 변상금및위약금	2	3	1	50.0
○ 가산금	0.3	0.3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80	4,049	3,669	965.5
○ 면허료및수수료	0.2	0.2	-	-
○ 입학금및수업료	59	61	2	3.4
○ 실습수입	0.1	0.1	0	-
○ 잡수입	19	17	△2	△10.5
○ 고정자산매각대	9	9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	7	-	-
○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2	2	-	-
○ 융자원금 회수	4	4	-	-

* 자료: 해양수산부

5)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민간투자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조 4,225억원으로, 2024년(3조 4,471억원) 대비 14%(△1,424억원)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14.3%(△355억원) 감소하였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전출금은 0.01%(108억원)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표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34,471	34,224	△247	△14.2
○ 일반지출	18,778	18,424	△355	△14.3
○ 회계간거래	15,693	15,801	108	0.01

* 자료: 해양수산부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해양무인시스템실증시험·평가기술개발(R&D) 사업은 83억 1,400만원으로 2024년(39억 5,900만원) 대비 110%(43억 5,500만원),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사업은 164억 6,600만원으로 2024년(73억 8,400만원) 대비 123%(90억 8,200만원) 증가한 반면,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은 800억 6,700만원으로 2024년(1,051억 1,200만원) 대비 23.8%(△250억 4,500만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사업은 2024년 대비 10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해양무인시스템실증시험·평가기술개발(R&D)	2,000	3,959	8,314	4,335	110.0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4,123	7,384	16,466	9,082	123.0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74,768	105,112	80,067	△25,045	△23.8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42,190	18,103	7,861	△10,242	△56.6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의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못해 각 기관의 인건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국립해양박물관 이월액 8억 100만원('22), 8억 1,200만원('23), 국립해양과학관 이월액 10억 1,700만원('22), 15억 3,300만원('23))임을 고려하여, 각 기관은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하고, 출연금이 인력 운용 상황에 맞추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비와 BTL 정부지급금,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및 미래해양과학관의 건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0억 4,500만원(23.8%) 감액된 80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6].

【 2025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10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집행		(B-A)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74,768	105,112	80,196	80,067	△25,045	△23.8
-해양박물관 운영	8,883	8,634	5,815	8,949	315	3.6
-해양과학관 운영	8,512	8,266	5,348	9,173	907	11

* 자료: 해양수산부

6) 회계(기금)-세부사업-내역사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7]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8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8]에 따라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9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해양박물관 및 해양과학관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사업	2024년 예산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해양박물관 운영	기관운영 출연금 : 5,695백만원 (인건비 4,201백만원 + 기관운영 1,494백만원) 사업 출연금 : 2,939백만원	기관운영 출연금 : 6,206백만원 (인건비 4,201백만원 + 기관운영 2,005백만원) 사업 출연금 : 2,743백만원
해양과학관 운영	기관운영 출연금 : 5,990백만원 (인건비 3,838백만원 + 기관운영 2,152백만원) 사업 출연금 : 2,276백만원	기관운영 출연금 : 6,782백만원 (인건비 3,838백만원 + 기관운영 2,944백만원) 사업 출연금 : 2,391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7)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4. (생략)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8)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4. (생략)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비용인 기관운영 출연금(350-01)과 기관 고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 출연금(350-02)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기관운영 출연금을 구성하는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기관에 출연한 이후 실집행이 저조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립해양박물관 인건비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2021	3,933	508	4,441	3,564	80.3
2022	4,029	877	4,906	4,105	83.7
2023	4,098	801	4,899	4,087	83.4
2024. 10월	4,201	812	5,013	3,578	71.4

* 자료: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박물관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8억 7,700만원(인건비 예산액 대비 22.3%), 2022년도에 8억 100만원(19.9%), 2023년도에 8억 1,200만원(19.8%)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음.

□ 특히, 국립해양과학관의 경우 매년 약 10억원 내외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건비 집행액은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국립해양과학관 인건비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2021	2,767	446	3,213	2,425	75.5
2022	3,652	190*	3,842	2,825	73.5
2023	3,744	1,017	4,761	3,228	67.8
2024. 10월	3,838	1,533	5,371	2,558	47.6

* '22년 태풍 '힌남로'로 파손된 상설전시관 복구를 위해 인건비(598백만원)를 시설장비유지비(930백만원)로 전용('22.9.16.)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러나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을 고려하지 않고 2024년과 동일하게 각각 42억 100만원, 38억 3,800만원의 인건비를 반영하였는데, 향후에도 인건비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특히, 올해의 상황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말까지 인건비 예상 집행액을 감안하여 14억 3,100만원(국립해양과학관 11억 5,100만원, 국립해양박물관 2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배정하지 않고 불용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인건비 집행이 이같이 저조한 사유를 보면,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의 정원 대비 현원의 충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 3년 동안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관의 인력이 이직하고, 재차 충원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국립해양박물관 정현원 변동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2024.10월
정원	65	65	62	62
현원	62	58	58	61

* 자료: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과학관 정현원 변동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2024.10월
정원	44	45	43	43
현원	38	41	39	41

* 자료: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문화와 해양산업 유산을 발굴·보존·연구·전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립해양과학관의 경우 해양과학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각 기관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기관은 인력이 원활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연례적 인건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출연금의 편성이 적정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 R&D 사업 :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해양수산부 R&D 사업에서 징수해야 하는 기술료의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양수산부 R&D 사업은 크게 ①오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②위기대응 미래 R&D, ③해양강국 생태계 조성, ④공공연구기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15억원(9.5%) 증액된 8,233억원이 편성되었음.[9)]

【 2025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4 예산 (A)	'25 예산안 (B)	증 감	
			(B-A)	%
해양수산부 R&D	7,518	8,233	715	9.5

9) 회계(기금)-세부사업-내역사업: 일반회계-KIMST 운영지원/기획평가관리(4140-302,303)

(나) 검토의견

□ 2025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은 8,233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715억원(9.5%) 증액 편성되었음.

- 분야별로 보면 ①오션 디지털·친환경 대전환 관련 데이터 기반 수산 혁신, 디지털 교통 물류, 친환경 에너지 전주기 기술개발 등에 2,363억원이, ②위기 대응 미래 R&D 관련 기술 기반의 해양재난 대응 고도화, 어촌 현안해결형 기술개발, 극지·대양 개척 등에 1,865억원이, ③ 해양강국 생태계 조성 관련 현장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민간 성장지원을 위한 벤처생태계 구축, R&D 기획·관리 등에 415억원이, ④연구기관 운영지원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양수산부 산하 3개 출연연 연구비 및 시설비 3,58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 개요 】

(단위: 억원, 괄호는 기후대응기금 제외시)

구 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	증감률
해양수산 R&D	7,518 (7,307)	8,233 (7,488)	715	9.5%
1 오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2,126 (1,915)	2,363 (1,618)	237	11.1%
2 위기대응 미래 R&D	1,529	1,865	336	22.0%
3 해양강국 생태계 조성	374	415	41	11.0%
4 공공연구기관 지원	3,489	3,589	100	2.9%
가. 주요 R&D	6,387 (6,176)	7,184 (6,439)	797	12.5%
나. 일반 R&D*	1,131	1,049	△82	△7.2%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Technology Promotion (KIMST)”라 한다)이 2005년 설립되었는데, KIMST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R&D사업 예산의 상당수(약 53%)를 관리하고 있음.

- 2025년도의 경우에 해양수산부 R&D 예산안은 8,233억원인데 이 중 KIMST R&D 관리 예산은 4,381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96억원(15.7%) 증액 편성되었음.

□ KIMST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수립(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을 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술료”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10]

---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함.

- 영리기관(예컨대 기업)의 경우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로 직접실시 또는 제3자 실시[11]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고, 비영리기관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는 면제되며 제3자 실시의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징수 실적을 제출하게 됨.

□ 그런데, 2024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KIMST 정기종합 감사결과[12]에 따르면, KIMST는 기술료 납부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으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해 연구기관에서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26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기관이 38개 기관으로 확인됨.

기술료 징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항목이고, 징수된 기술료는 KIMST에서 이를 납부받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기술료:

11) 기술이전 방법

기술이전 방법		내 용
기술매매 (권리이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 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이 완료
직접실시		○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기관이 성과물을 직접 사용
제3자 실시 (라이센스)	전용실시권	○ 기술 공급자와 기술 도입자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 기술 공급자와 기술 도입자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

12)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기종합 감사결과('24.7.8.~7.19.)

기타경상이전수입, 기술료로 발생한 이자: 기타재산이자수입)하는 항목인 만큼 그 업무가 철저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 및 KIMST는 기술료 관리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점검하고, 기술료 미납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13] 통하여 기술료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9조(제재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직접실시자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에 따라 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 : 국고여객선 펀드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해양수산부는 노후 국고여객선을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를 통해 조성된 펀드를 활용하여 건조할 계획인데, 동 사업은 현재 민간부문 출자 70%, 적용이자율 4.5%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향후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재정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펀드를 조성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여 적용이자율 4.82% 초과 시 펀드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일정시점에 대규모 수리비 발생, 노후화율 진행, 퇴역선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은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7,000만원(8.7%) 증액된 10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 2025년도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	3,945	9,980	6,913	10,850	870	8.7
국고 여객선 펀드 (내역사업)	-	-	-	8,400	8,400	순증

* 자료: 해양수산부

14)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국고여객선 건조(6134-30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고여객선 펀드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국고여객선 펀드를 조성하고, 동 펀드를 통해 「해운법」 상 기준선령 20년이 도달한 노후 국고여객선의 대체건조를 하기 위해 정부부담액을 출자하는 것임.

- 국고여객선 펀드는 해양수산부(국비)가 펀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건조선가의 30%를 출자하고, 공모주, 사모펀드, 금융기관 대출 등 민간자본으로 나머지 70%를 조달하여 선박의 건조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개요 】

ㅇ 사업내용 : 선령 20년이 도달한 노후 국고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ㅇ 2025년도 사업규모 : 총 7척의 국고여객선 건조 ㅇ 사업기간 : 2025~2037년 ㅇ 출자비율 : 국비 30%, 민간자본(공모주, 사모펀드, 선순위 대출 등) 유치 70% ㅇ 총 국비부담액 : 1,257억원(출자 432억원, 용선료 825억원) ㅇ 사업수행(지원조건) : 해양수산부(국비 30%)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여객선 척당 건조비에 7척, 정부출자비(30%) 및 1차년도(선박건조기간 2년 예정) 착공비율(50%)을 적용하여 1차년도 사업비 일반출자금 84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 산출내역	금액
국고여객선펀드	○ 일반출자금(460-01) - 8,000,000천원 x 7척 x 30%(정부출자비) x 50%(1차년도 착공비)	8,400

자료: 해양수산부

- 동 펀드를 통해 2025년에는 기준선령 20년을 넘어 노후선을 대체하기 위한 선박 4척(섬사랑3호, 해랑3호, 강화페리호, 섬사랑 7호)과 소음 및 진동이 심한 선박 1척(한려카페리), 항로 단절 대응에 필요한 예비선 2척의 신조 건조 등 총 7척의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임.

□ 국고여객선 펀드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부가 선가의 30%를, 민간자본으로 70%를 조달하여 선박투자회사(SIC: Ship Investment Company)에 출자하고,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인 선박대여회사(SPC, 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선박을 설계·건조하게 됨.

- 선박건조가 완료되면 선박사용자(해양수산부)가 선박을 인도받은 후 선박대여회사와 용선계약(BBCHP[15])을 통해 20년간 용선료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20년간 운영한 뒤 용선료 납부가 완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은 해양수산부가 취득하게 됨.

【 국고여객선 펀드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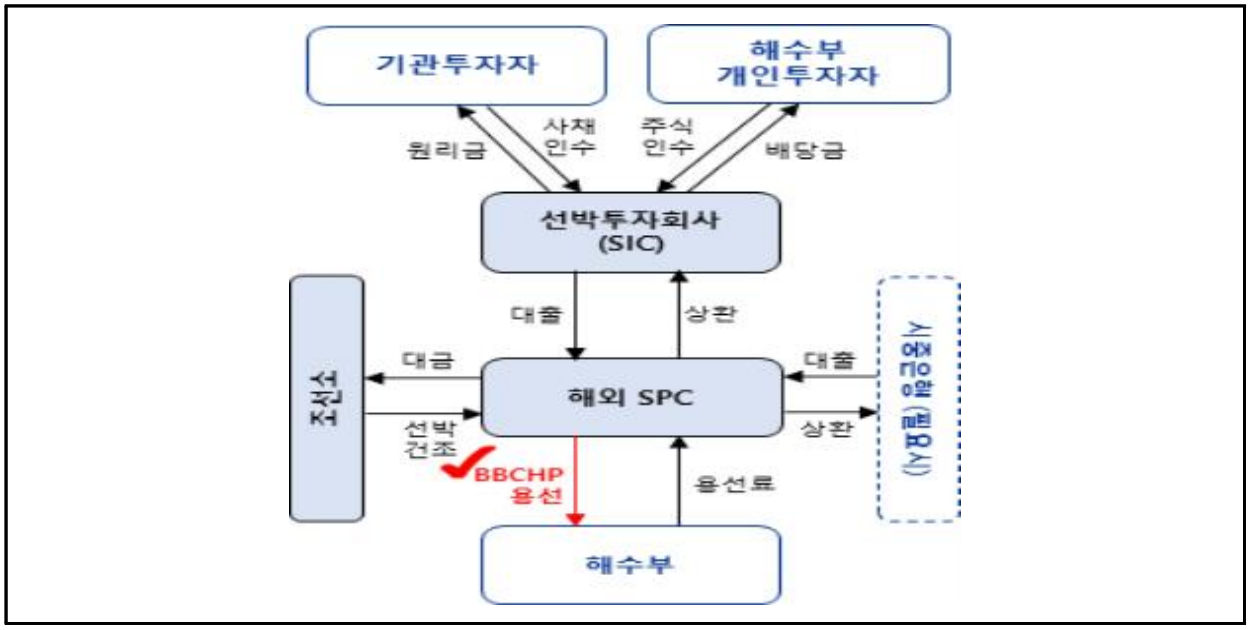

□ 동 사업의 장기계획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선령 20년에 도달하는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37년까지 총 24척을 건조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동 계획의 소요예산을 보면 2025년 및 2026년에는 84억원, 120억원이 각각 출자되고, 7척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7년도부터는 용선료 35억 6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됨.

15)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 외형상 나용선 구조를 가지며(선원 및 해상 공급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 지급을 통해 용선하는 구조) 리스 기간 종료 시 선박을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 일종의 금융리스 형태로 리스계약과 대출계약은 Event of Default, 만기, 상환일정이 정확히 일치. 용선기간 만료 시 용선사가 선박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선박을 소유하게 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7년까지 국고여객선 24척을 건조하기 위해 정부출자 및 용선료 등 정부재정이 부담하는 예산의 총액은 1,257억 5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설명임.

【 연도별 국고여객선 펀드 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계
선령 20년 도달척수		4	1 1	1	1	-	1	1 1	-	1	2	2	4	1	21
건조 척수		7	3	-	-	-	2	1	-	5	-	-	4	2	24
국비 부담분		8,400	12,000	3,600	-	-	2,400	3,600	1,200	6,000	6,000	-	4,800	8,400	56,400
전기이월		-	-	-	450	1,305	2,258	2,021	582	433	436	473	2,084	2,650	-
예산	출자	8,400	12,000	3,600	-	-	1,200	1,200	-	4,800	4,800	-	3,600	3,600	43,200
	용선료	-	-	3,506	6,098	6,473	6,343	6,212	7,088	7,767	7,764	10,092	10,698	10,463	82,505
	- 펀드	-	-	630	1,110	1,200	1,200	1,200	1,380	1,530	1,560	2,010	2,160	2,160	16,140
	- 민간	-	-	2,876	4,988	5,273	5,143	5,012	5,708	6,237	6,204	8,082	8,538	8,303	66,365
	합계	8,400	12,000	7,106	6,098	6,473	7,543	7,412	7,088	12,567	12,564	10,092	14,298	14,063	125,705
예치이자		-	-	-	5	13	23	21	11	14	17	20	27	34	184
재투자		-	-	-	-	-	1,200	2,400	1,200	1,200	1,200	-	1,200	3,600	12,000
기말잔액		-	-	450	1,305	2,258	2,021	582	433	436	473	2,084	2,650	824	-

* 선령 20년 도달 척수 : 대체선 건조 기간 2년을 고려한 선령 20년 도달 척수
** 신조선 척수 : 최소 공모 적정금액이 US$ 15million(약 200억원)으로 최소 3척(240억원) 단위로 묶어 발주 단, 펀드잔액 소진을 위해 1~2척 개별 발주 시 공모 대신 기관투자자(선순위 은행) 활용
*** 출자 = 국비 부담분(척당 선가 30%의 50%×척수) - 전기이월 – 예치이자 – 재투자(펀드 용선료)
**** 용선료(민간투자 수익률)는 거북선 펀드와 동일한 4.5%로 설정

□ 그런데 상기 운용계획은 정부출자 30%에 대응하여 민간부문 출자가 70%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와 해경청의 거북선 펀드, 민간투자 사업 협약 수익률 사례 등을 참고하여 4.5%[16]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비 전액 투자 시의 순지출의 현재가치와 펀드활용 시 지출의 현재가치를 비교[17]해 보면 현재 사업계획으로 설정한 4.5%의 경우는 약 30억원(29억 9,9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4.82%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국비 지출 대비 펀드 방식이 불리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운영과정에서는 이를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자율별 순지출 현재가치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백만원)

적용 이자율	펀드 활용 시 순지출 현재가치(B)	국비 전액 시 순지출 현재가치(A)	증감액 (B-A)	증감률 [(B-A)/A]
4.50%	175,389	178,388	2,999	1.7
4.60%	176,329		2,059	1.2
4.70%	177,269		1,119	0.6
4.82%	**178,388**		**0**	**0.0**
4.90%	179,148		-760	-0.4

16) 국고채 10년물 3.5%+100bp(1%)
17) 국고여객선 31척의 대체건조 1주기 기간('25~'66년)의 이자율별 순지출의 현재가치로서, 민간자본에 대해서 지급하는 용선료 산정에 필요한 수익률을 말함.

□ 또한, 동 사업은 대형 투자가 필요한 선박 건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국가재정 여건상 단기 재정 부담률을 낮추면서 7척의 대규모 선박을 건조하여 적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선박펀드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과거 선박투자펀드의 경우 과세특례 혜택으로 배당 수익률은 시장평균 수익률 보다 높으나 투자위험이 낮아 민간자금의 유치가 원활하였지만 2016년 해당 세제혜택이 폐지[18]됨에 따라 투자매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의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재정의 투입을 늘리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해양경찰청이 2006~2010년 운용한 거북선 펀드(1~7호)의 경우 총 선박건조금액 8,418.4억원 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5,331.2억원으로 63.3%를 차지하였고, 정부분담액은 2,372.9억원(28.2%)이었으며, 민간 투자자 공모금액은 714.3억원으로 8.5%에 불과하였음.

18) [선박펀드 세제 혜택 변경 경과]

연도	세제 혜택 내용
2004 ~ 2008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 3억원 초과 보유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미합산
2009 ~ 2010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소득 5% 과세 · 전체 보유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미합산
2011 ~ 2013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배당소득 5% 과세 · 전체 보유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미합산
2014 ~ 2015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9% 과세 · 2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미합산
2016~	· 세제혜택 폐지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이처럼 민간투자 비율이 낮아 오히려 정부재정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 등이 증가하게 되면, 민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재정사업에 활용하려는 당초 동 사업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박펀드 조성금액의 70%는 민간투자 자본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 선박펀드 조성 현황(2006~2010년)]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거북선1호 (7척)	거북선2호 (8척)	거북선3호 (1척)	거북선4호 (9척)	거북선5호 (4척)	거북선6호 (1척)	거북선7호 (4척)
건조금액	**8,418.4**	**1,440.5**	**1,650.0**	**604.5**	**2,328.4**	**932.7**	**566.3**	**896.0**
금융기관 차입금	5,331.2 (63.3%)	1,012.4 (70.3%)	1,263.9 (76.6%)	543.1 (89.8%)	1,385.1 (59.5%)	355.3 (38.1%)	400.0 (70.6%)	371.4 (41.4%)
공모금액	714.3 (8.5%)	118.1 (8.2%)	138.6 (8.4%)	61.4 (10.2%)	151.6 (6.5%)	81.7 (8.8%)	60.3 (10.7%)	102.6 (11.5%)
정부 분담액	2,372.9 (28.2%)	310.0 (21.5%)	247.5 (15.0%)	- (0%)	791.7 (34.0%)	495.7 (53.1%)	106 (18.7%)	422.0 (47.1%)

* 자료: 해양경찰청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고여객선 펀드는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국가가 상환 주체가 되는 선박 금융방식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자 수익률[19]이 설정된다면,

19) 민간투자수익률은 4.5%(국고채 10년물 3.3~3.5 + 100bp(1%))로 설정

민간 금융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 변동으로 민간자본 공모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사를 통한 사모펀드 방식과 선순위 대출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또한 동 내역사업은 '25년, '33년, '36년 각각 7척, 5척, 4척이 동시 건조되고, 해양수산부가 20년간 용선료를 납부 완료하면 선박의 소유권은 해양수산부가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 당시 이미 노후화된 선박이므로 많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시기에 대규모 퇴역 선박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 : 지자체로의 업무 이양에 따른 지방관리항만 소속 관공선에 대한 예산조정 계획 수립 필요

○ 해양수산부는 지방관리무역항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자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공선 9척에 대해서는 지자체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의 취지와 항만시설사용료의 귀속 변경 등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방관리항만 소속 관공선의 운영비 등을 향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양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은 지방관리항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공선 건조비, 유류비 및 법정 선박검사에 따른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3,900만원(4.2%)을 증액한 23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20].

【 2025년도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	32,793	22,183	18,915	23,122	939	4.2

자료: 해양수산부

20) 회계(기금)-세부사업-세사업: 일반회계-관공선 건조 및 운영(6133-300)

(나) 검토의견

□ 2020년 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었음.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9개 연안항[21]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자료: 해양수산부

21) 「항만법 시행령」[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2호] 제3조제3항 [별표 3],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1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8개)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그 결과, 2021년 지방관리항만 이양과 함께 기존 해양수산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총 51척[22]의 관공선 중 순찰선 9척이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운영대상으로 변경되었음.

【 지방관리무역항 관공선(순찰선) 현황 : 9척 】

연번	소속	선명	진수일	총톤수	주기관 출력(KW)	재질, 내구연한
1	강원도	속초해양호	2021-11-15	38톤	484×2	FRP[23], 20년
2		호산해양호	2017-08-08	40톤	1,080	FRP, 20년
3	충남도	충남901	2015-09-03	40톤	1,220×2	강, 25년
4	전남도	해양3호	2023-02-24	49톤	1600×2	알루미늄
5	경남도	경남912호	2009-12-17	22톤	1,300	FRP, 20년
6		경남915호	2024-05-29	46톤	1193×2	FRP, 20년
7		경남916호	2017-08-21	33톤	2,132	알루미늄, 25년
8	제주도	만덕호	2012-12-30	35톤	1,200	강, 25년
9		이어도호	2018-10-15	40톤	1600×2	강, 25년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 예산편성 산출내역의 지원대상 산출 척수를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관공선 운영사업 중 2024년부터 실시된 내내역사업인 선박보험료 사업의 경우 42척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는 반면, 선박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과 내역사업인 관공선 수리사업 중 관공선 수리비는 총 51척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22) 관공선 현황(51척) : 순찰선 30척, 측량선 1척, 항로표지선 20척
※ 청항선(쓰레기 청소) 22척의 경우 국가가 관공선으로 건조하고 있으나, 청항선의 관리·운영은 한국해양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음.

23) FRP란 유리섬유(FIBER GLASS)를 주 보강재료로하여 불포화 포리에스텔 수지를 함침 가공하여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내식, 내열, 내후성이 보다 강화된 반영구적인 소재로 전 산업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있는 신 소재임.

【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의 선박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산출내역 】

2024년도 산출내역	2025년도 산출내역
ㅇ 선박보험료(210-02) : 735백만원 가. 선박보험료 600백만원 - (순찰선**22척**×12백만원)+(표지선**19척**×17.7백만원) 나. P&I보험료 135백만원 - (순찰선**22척**×2.5백만원)+(표지선**19척**×4.2백만원)	**ㅇ 선박보험료(210-02) : 767백만원** 가. 선박보험료 603백만원 -(순찰선**22척**×11백만원)+(표지선**20척**×18백만원) 나. P&I보험료 164백만원 -(순찰선**22척**×3백만원)+(표지선**20척**×5백만원) *** 순찰선 21척, 측량선 1척, 표지선 20척**
ㅇ 유류비(210-08) : 4,189백만원 가. 연료유 4,094백만원 - **51척** × 53.4kℓ × 1.5034원/kℓ = 4,094백만원 나, 윤활유 95백만원 - **51척** × 1.87백만원 = 95백만원	**ㅇ 유류비(210-08) : 4,304백만원** 가. 연료유 4,208백만원 - **51척** × 54.87kℓ × 1.5039원/kℓ = 4,208백만원 나, 윤활유 95백만원 - **51척** × 1.87백만원 = 95백만원 *** 순찰선 30척, 측량선 1척, 표지선 20척**
ㅇ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21백만원 가. 시설장비유지비 321백만원 - **51척** × 6.3백만원 = 321백만원 나. 안전장비 400백만원 - (선박수신기 22개 × 15백만원) + (위치발신기 176개 × 0.4백만원) = 400백만원	**ㅇ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8백만원** - **51척** × 8백만원 × 100% = 408벡만원 *** 순찰선 30척, 측량선 1척, 표지선 20척**
ㅇ 관공선 수리비 2,118백만원 - (법정수리비) 30척×34.3백만원=1,029백만원 - (도장・공사비) **51척**×4.4백만원=224백만원 - (개방・정기검사비) (1척×200백만원)+(5척×133백만원)=865백만원	**ㅇ 관공선 수리비 3,154백만원** - (법정수리비) 31척×34.3백만원=1,064백만원 - (도장・공사비) **51척**×4.4백만원=224백만원 - (개방・정기검사비) (8척×200백만원)+(2척×133백만원)=1,866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 2024년에 최초 편성된 '선박보험료'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2023년 이전까지 예산 미확보로 각 지역해양수산청의 기본운영경비로 지원한 선박보험료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24년의 경우 관공선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선박보험[24] 및 선주상호보험(P&I)료[25]를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음.

24) 선박보험 :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몰·좌초·화재·충돌 등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해상보험임

- 그러나, 2024년부터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된 선박보험료의 선박지원 척수는 지방이양계획에 따라[26] 지자체의 지방관리무역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9척을 제외한 국가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한정하여 2024년에는 41척, 2025년에는 42척으로 편성하고 있는 반면에,

선박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관공선 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9척을 포함하여 2024년·2025년에 각각 51척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업무이양에 따른 예산 조정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세입[27]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였음.

- 이에 따라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음.

---

25) **P&I보험(선주상호보험)** :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인명, 재산, 오염)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26)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순찰선의 경우 해당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함.

27) **「항만법」 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년도 사용료는 통상 차년도 3/4분기에 집계하고 있으며, '23년 사용료는 현재 집계 중에 있고, '22년 기준 지방관리 무역항의 사용료(징수결정액)는 총 429억원이라고 함.

□ 따라서, 지방관리무역항의 지자체 이양으로 관리·운영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관공선 9척의 경우 2024년 신규 내역사업(선박보험료)에서도 국가관리인 41척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28]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향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공선의 운영비(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관공선 수리) 등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따라서 이를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지방관리항만 소속의 관공선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고,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등을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이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관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이 없는 상황으로, 우선 협의 후 세부적인 이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28) 「항만법」 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관리 필요

○ 민간에 자본을 보조하는 동 내역사업은 지원대상 선정 시 연료공급선의 선령이 짧은 선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동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정부가 '질량유량계'에 대한 점검·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29]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 2025년도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	-	-	1,470	1,470	순증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내역사업)	-	-	-	1,100	1,100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29)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 항만종합서비스업 :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

3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6133-355)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은 국내에는 외항선에 선박연료공급 시 해외 선진항만(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과 달리 정량공급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국내 선박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만연[31]함에 따라,

유통망 정상화 등을 위한 선박 연료 정량공급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4대 정유사별 운송·위탁한 급유선 각 1척에 질량유량계를 설치·운영하고 운송료 현실화 및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1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내역사업)」 사업개요 】

▪ **(예산)** 4척×질량유량계 개당 250백만원×100% + 100백만(효과검증) = 11억원 - 세부산출내역 : (민간자본보조) 총 4척*250백만원*보조율 100% = 10억원 (민간위탁사업비)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질량유량계 운영 효과검증: 1억원 ▪ **(설치대상)** 4대 정유사별 연료공급선 각 1척(총4척) ▪ **(수행/기간)** 주관: 해양수산부, 사업수행: 석유관리원 / ‘25년 단년도 사업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동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질량유량계 구입비 2억 5,000만원에 총 4척, 시범사업에 한하여 정부보조율(100%)를 적용

31)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360~540억원 탈세 추정된다고 함

하여 10억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한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질량유량계 운영 효과검증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시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먼저 11월 중순경 '25년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32] 추진 전 업계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25년 시범사업 내용설명 및 4대 정유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25년 1월에는 질량유량계 구매·설치, 집행·점검·관리·정산 등을 할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25년 2월~3월경에는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별도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각 정유사별 연료공급선 4척)를 선정할 계획에 있음.[33]

이후 각 급유선에 적합한 질량유량계를 입찰·주문하여 부착한 후 효과검증 사업을 통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의 효과검증 및 세부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질량유량계는 각 연료공급선 업체에 맞춰 설계·설치되는 특성을 가진 장치로서 통상 2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한번 설치하면 다른 곳에 이동하여 부착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32) 해양수산부는 동 시범사업을 통해 정량공급제도 도입 전, 질량유량계 설치 기준, 관리 기준, 잔량처리 기준 등 필수적인 세부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33)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설명임.

질량유량계 설치 시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령에 부착하는 경우 선박 수명 종료 시 정부가 지원한 2억 5,000만원의 질량유량계도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역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연료공급선의 선령이 짧은 선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동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로 140척씩 총 280척의 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 설치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는 국내 급유선업계는 업체당 보유선박이 평균 1척(평균선령은 약 20년 이상)이며 선박 규모는 소형선으로 대부분 총톤수 5백톤 미만으로서 업계 영세성이 심각하여 자비로 질량유량계(1척당 최소 2억 5,000만원 이상 예상)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임.

- 본 사업의 보조율은 2025년 100%, 2026년~2027년 50%로 설정되었는데, 2025년의 경우 효과 검증 시범사업을 위해 법률 시행 전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성격을 고려하여 보조율 100%로, 이후에는 해외사례(싱가포르)를 반영하여 50%로 설정하였음.

【 2026년~2027년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지원규모 】

연도	지원척수	보조율	예산액	비고
2025	4척	100%	10억 (4척*250백만원*100%)	'25년 시범사업
2026	140척(목표)	50%	175억 (140척*250백만원*50%)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적 격**
2027	140척(목표)	50%	175억 (140척*250백만원*50%)	
합계			360억	

* 자료: 해양수산부

- 참고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정량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량공급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1684, 정부 제출)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음.

□ 따라서, 2025년 시범사업 운영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해당 내역사업은 해양수산부가 3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총 사업비 360억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국가가 급유선업체별로 약 1억 2,500만원(보조율 50% 가정시)의 질량유량계(자산) 취득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동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질량유량계'의 취득 절차와 이후 이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해상안전 국제협력 사업 :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철저 필요

○ 내역사업인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며,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외국인만큼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상안전 국제협력」 사업은 국제해사기구 전략적 대응을 통한 해운·조선사업 경쟁력 강화, 국제해사분야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국제협약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1,200만원(20.1%) 증액된 8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 2025년도 해상안전 국제협력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10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해상안전 국제협력	6,961	7,036		8,448	1,412	20.1
-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	-	-	1,451	-	-

* 자료: 해양수산부

34)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상안전 국제협력(6332-30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은 캄보디아 내륙수로 교통안전 기반 마련과 선박 사고 예방 등을 통한 물류 운송의 효율성 증진 및 수로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8,200만원이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1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개요 】

□ 목적
○ 국제협력을 통한 내륙수로 교통안전 확보, 선박사고 예방, 수로환경 보호 등

□ 범위(첨부1 참고)
○ 캄보디아 메콩강, 톤레삽강 등 캄보디아 내륙수로 전역

□ 총사업비

구 분	계	'25년	'26년	'27년	'28년
총사업비(억원)	60.82	14.51	13.62	14.47	18.22

□ 사업기간 및 수행기관
○ '25~'28/한국항로표지기술원

□ 내용
○ 항로표지시설 개선, 역량강화 교육, 개발 컨설팅, 기자재 구입 등

□ 대상국 및 대상기관
○ 캄보디아 / 공공사업교통부

*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사업의 경과를 보면, ODA사업을 통해 수립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3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36]받아 2025년 내역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그리고, 실시할 주요사업을 보면, ①항로표지 개선 및 테스트베드 운영, ②항로표지 역량강화 교육, ③개발컨설팅, ④기자재 구매 등이 있음.

【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주요내용 】

구 분	기간별 사업내용
항로표지 개선 및 테스트베드 운영	○ **(2025년/1구간)** 부표 신설 4기 및 운영, 교량등·교량표 설치 (각 3종*4개소*2면), 등주 주변 수목제거 7기 추진 ○ **(2026년/2구간)** 기설치 부표 교체 1기·신설 4기 및 운영, 교량등(3종*2개소*2면) 교량표(3종*1개소*2면) 설치 ○ **(2027~2028년/3구간)** 도등 신설 4기, 등부표 신설 13기, 교량등(3종*1개소*2면) 설치
항로표지 역량강화 교육	○ **(2025~2026년)** 정책과정 1회, 현지 세미나 2회 추진
개발컨설팅	○ **(2026년/4구간)** 캄보디아 내륙수로 바삭강 항로표지 개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기자재 구매	○ **(2025~26년)** 초음파 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1대, 싱글빔 음향측심기(Single Beam Echo Sounder) 1대, 수로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Hydrographic Data Processing Software) 1식, 전자해도 제작 소프트웨어(Chart(ENC) Production Software) 1식

35) 캄보디아 내륙수로 선박사고 예방 및 물류 운송효율 향상을 위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21~'23, 총사업비 23.8억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수행)
36) '23.8.16.

구 분	기간별 사업내용
현지 파견	○ (2025~2028년) 수행기관 직원 1명 현지 파견 - 수원국 업무협의, 현지 세미나 운영, 용역수행 자료 수집, 시설사업 및 물품 조달·구매 발주, 시설사업 관리, 후속 사업 발굴 및 기획, 홍보 등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항로표지 기술을 보급하고, 국제해사분야 우호세력을 확보하며, 캄보디아 연계 사업 발굴(항만건설, 수로개발 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제작한 항로표지(등부표 21기 신설 및 1기 교체, 교량등 및 교량표 8개소 신설, 도등 4기 신설 등)를 캄보디아에 직접 설치하는 점과 향후 동남아 국가에서의 수출 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항로표지 설치사업이 향후 캄보디아 연계 사업 발굴(항만개발에 관한 우선권 확보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점이 있다고 보여짐.

특히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외국인만큼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예산의 각 항목별

편성 및 집행액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등의 관리방안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025년도의 경우 편성된 14억 5,100만원의 예산[37] 중 6억원 가량의 예산이 인건비 및 운영비에 투입되고, 시설비에 7억 8,6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임.

37)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계	6,082	1,451	1,362	1,447	1,822
인건비	1,871	451	462	473	485
운영비	816	140	288	278	110
여비	214	67	49	49	49
업무추진비	28	7	7	7	7
자산취득비	10	-	10	-	-
시설비	3,143	786	546	640	1,171

* 자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첨부 1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대상 지역

□ 사업 대상

ㅇ **(유관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

ㅇ **(대상지역) 캄보디아 내륙수로**

- **1구간**: 프놈펜(Phnom Penh)→ 캄퐁치낭(Kampong Chhnang)→ 씨엠립(Siem Reap)
- **2구간**: 프놈펜(Phnom Penh)→ 캄퐁참(Kampong Cham)→ 크라체(Kratie)
- **3구간**: 프놈펜(Phnom Penh)→ 메콩강 베트남 국경(Vietnam Border)
- **4구간**: 프놈펜(Phnom Penh)→ 바삭강 베트남 국경(Vietnam Border)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사업대상 구역>

* 자료: 해양수산부

7)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고여객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기차 수송실적 및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국고여객선 외에 전기차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선에 대하여 화재 대응 장비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은 선사의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여객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강화 및 연안해역·위험물 취급항만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5,000만원(10.2%) 감액된 9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38].

【 2025년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10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8,191	10,251		9,201	△1,050	△10.2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	-	-	450	-	-

* 자료: 해양수산부

3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사업은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과 배터리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객선에 전기차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장비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경우 2025년도 내역신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하여 AI 열화상 카메라, 소방원 장구, 상방향 물분사장치, 질식소화포를 국고여객선 29척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 AI 감시카메라 800, 소방원장구 250, 상방향 물분사장치 300, 질식소화포 250, 척당 약 16백만원 소요 - (산출) 국고여객선 29척×15.5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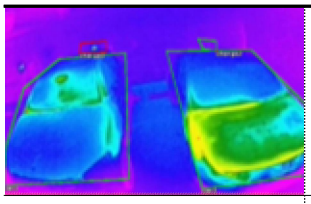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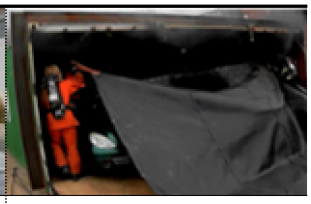
(AI 열화상 카메라) 화재 조기탐지	(소방원 장구) 화재진압 선원 보호	(상방향 물 분사장치) 차량 하부 배터리 냉각	(질식소화포) 화재차량 연기확산 방지
약 8백만원	약 2백만원	약 3백만원	약 2.5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 최근 국내외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불길의 전이가 빠르며 화재 지속시간이 길고[39] 수평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이 밀집된 선박 등은 대규모 화재 확산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선박의 경우에는 구조기관의 신속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하여 전기차 화재 확산 지연에 필요한 화재 진압 장비 및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한편, 2023년도 국회 상임위 결산 심사 단계에서도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선박 내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등을 조속히 보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관심도가 높은 상황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29척의 국고여객선이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우선 보급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국고여객선의 경우 민간여객선에 비하여 국가의 책임이 보다 직접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고여객선이란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건조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일반 선사들이 수익 악화 등의 이유로

39) 배터리에서 약 1,000℃ 열폭주 및 가연성가스 발생, 충전율(SOC)에 따라 5~10시간 가량 화재 지속

운항하지 않는 항로를 담당하고 있고,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됨.

□ 하지만, 여객선의 전기차 수송 현황을 살펴보면[40] 국고여객선(27척)이 수송한 차량 1,288대 중 전기차는 24대로 그 비율이 1.8%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에, 그 외의 노선에서 상대적으로 전기차 수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가 '24년 5.13.~19. 기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권역별로 전기차 수송 상위 항로 20개가 있는데 전기차의 수송비중이 높은 항로는 16%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전기차 수송 상위 20개 항로('24.5.13~5.19)】

권역	항로명	선박명	소요시간(편도)	주간차량 수송대수	전기차	
					수송대수	비중
제주	제주-완도	실버클라우드	2:40	2,721	424	16%
제주	여수-제주	한일골드스텔라	5:10	996	144	14%
목포	남강-가산	대흥고속카페리	0:40	1,253	105	8%
목포	목포-제주	퀸제누비아	4:30	1,124	61	5%
목포	목포-제주	퀸메리2	4:00	1,157	55	5%
목포	목포-상태	남신안농협1	1:00	636	54	8%
목포	목포-가산	섬드리비금농협 고속페리	1:40	2,650	41	2%
목포	목포-상태	남신안농협3	1:55	1,009	37	4%
목포	녹동-제주	아리온제주	3:40	397	22	6%

40) '24.5.13.~5.19. 기준

권역	항로명	선박명	소요시간(편도)	주간차량 수송대수	전기차	
					수송대수	비중
목포	송도-병풍	슬로시티2	1:30	499	22	4%
목포	송도-병풍	천사카훼리	1:30	499	22	4%
충남	도비도-소난지도	대형카훼리2	0:30	525	76	14%
인천	장봉-삼목	세종9	0:30	3,075	58	2%
인천	인천-이작	대부고속페리	2:10	423	22	5%
인천	인천-덕적	코리아익스프레스카훼리	1:50	284	19	7%
여수	신기-여천	한림페리9	0:25	1,407	28	2%
포항	후포-울릉	울릉썬플라워크루즈	4:30	712	25	4%
완도	일정-당목	신양메이슨	0:15	1,339	23	2%
완도	땅끝-산양	노화카훼리5	0:30	1,145	16	1%
경남	삼덕-욕지	욕지영동골드고속	0:50	529	16	3%

* 자료: 해양수산부

□ 따라서 국고여객선 외에 전기차를 운송하는 다른 여객선의 경우에도 화재 대응 장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전기차 수송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 내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환율 제고 필요

○ 내역사업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23년 54.7%, '24년 10월 1.1%)임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선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보조율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은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선박 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억원(27.4%) 감액된 10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41].

【 2025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10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17,514	14,250	14,250	10,350	△3,900	△27.4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14,250	14,250	14,250	10,050	△4,200	△29.5

4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친환경선박 보급 촉진(6332-315)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은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 및 예비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10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친환경선박법」 제10조)

□ 지원기준
○ 선박 건조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척당 50억원 이내)
* 선가 200억 이하 : 선가 최대 30%, 200억 초과~300억 이하 : 최대 20%, 300억 초과 : 최대 10%

□ 지급방법
○ 선박 건조일정에 따라 보조금 분할 지급

□ 업무위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위탁·운영* 중('20.12~)
* 전문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또는 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친환경선박법」 제16조)

□ 사업 계획 및 실적
○ (계획) '30년까지 총 58척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 (실적) '21년 총 3척, '22년 총 5척, '23년 총 6척 지원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해양수산부가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 공단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의 집행 절차는 ①사업기획 → ②국고보조금 교부 → ③사업 공모 → ④국가 예비인증 신청·발급 → ⑤지원대상자 선정 및 1차 보조금 지급 → ⑥국가 정식인증 발급 → ⑦2차 보조금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음.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집행절차 】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교부	○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
↓	
사업 공모	○ 해양수산부 : 진행절차,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공고 - 예비인증서 등
↓	
국가 예비인증 신청·발급	○ 사업 신청자 : 건조계획 및 설계도 등 자료제출 ○ 인증기관 : 적용기술, 국산화율 검증 후 예비인증서 발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1차 보조금 지급	○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1차 보조금 확정 ○ 법정 보조사업자 : 1차 보조금 지급
↓	
국가 정식인증 발급	○ 인증기관 : 선박건조 확인 및 검증, 정식인증서 발급
↓	
2차 보조금 지급	○ 해양수산부 : 건조일정에 따라 2차 보조금 확정 ○ 법정 보조사업자 : 2차 보조금 지급

* 자료: 해양수산부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도의 경우 친환경선박 보급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약 8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의 36%인 50억원 이상이 불용되었고, 2024년도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실집행률이 1.1%로 저조한 상황임.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 도	해수부			사업시행주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4,000	4,000	4,000	4,000	-	4,000	3,656	4,000	3,656	344	-	91.4
2022	6,000	6,000	6,000	6,000	344	6,344	5,196	6,000	4,852	1,148	-	80.9
2023	14,250	14,250	14,250	14,250	1,148	15,398	8,937	14,250	7,789	1,317	5,144	54.7
2024.10	14,250	14,250	14,250	14,250	1,317	15,567	1,469	14,250	152			1.1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선사에 최대 3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사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최근까지 고금리로 인해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려는 선사의 수요가 적었다는 점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이 소규모 선박인 경우가 많아 보조금 집행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실집행 부진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환경규제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친환경선박 보급의 확대로 노후화된 선박이 대체되고,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중요한 측면이 있는 바 해양수산부는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현재의 친환경선박 전환율('24.4. 기준 2.7%, 친환경 동력원 선박 한정)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내 친환경선박 전환율('24.4. 기준) 】

분류	전환대상(척)	친환경선박(척)	전환율(%)
민간선박 합계	3,075	83	2.70
여객선	189	0	0
화물선	2,609	77	2.95
유·도선 등	277	6	2.16

* 자료: 해양수산부

- 특히, 2023·2024년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지원대상 선정이후 자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신청현황 】

구분	신청사	선정여부	선정일자	보조금(백만원)			건조현황
				총액	교부	집행	
1차공고 ('23.1.13.~'23.3.31.)	A	O	'23.6.8.	835	835	835	완료
	B	O		455	455	455	진행중
2차공고 ('23.7.21.~'23.10.18.)	C	X(철회)	-	-			-
	D	O	'23.11.21.	1,040	520	0	진행중
	D	O		1,040	520	0	진행중
3차공고 ('23.10.30.~'23.11.29.)	D	O	'23.12.13	1,040	520	0	진행중
	D	O		1,040	520	0	진행중
	E	O		-			중도포기 (자기자금 미확보)
1차공고 ('24.1.19.~'24.3.29.)	F	O	'24.5.10.	-			중도포기 (건조일정 미준수)
2차공고 ('24.5.16.~'24.7.31.)	G	O	'24.9.20.	1,820	0	0	진행중
	H	-	-	-			추가검토중
	H	-	-	-			추가검토중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또한, 사업의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예컨대 친환경 인증등급별로 보조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등급이 높을수록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기여가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현재 적용기술이 1등급인 선박은 1건뿐이고 적용기술이 2등급 또는 3등급이 다수(2등급 인증 : 4건, 3등급 인증 : 9건)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 대부분에 대하여 30%의 보조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 수요자의 참여 제고 측면에서 등급별 보조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

신조선 선가	등급	보조율(최대)	최대 지원 금액 한도
20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30%	50억원/척
	2등급	선가의 28%	50억원/척
	3등급	선가의 26%	50억원/척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20%	50억원/척
	2등급	선가의 18%	50억원/척
	3등급	선가의 16%	48억원/척
300억원 초과	1등급	선가의 10%	50억원/척
	2등급	선가의 8%	50억원/척
	3등급	선가의 6%	50억원/척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지원실적 】

지원대상	선종	적용기술	총톤수	인증 등급	선가 (백만원)	보조금(백만원)			건조 일정
						전체(100%)	1차(70%)	2차(30%)	
2021년									
A1	유선	전기추진	55	2	1,500	292	204	88	건조완료
B1	도선	전기추진	440	1	9,000	1,800	1,260	540	건조완료
C1	예선	하이브리드	396	3	8,226	1,563	1,094	469	건조완료
2022년									
A2	차도선	전기추진	300	2	6,700	1,876	1,244	632	’21.12. ~’25.2.
B2	예선	LNG추진	300	2	10,000	2,800	1,400	1,400	건조완료
C2	예선	하이브리드	396	3	9,500	2,470	1,235	1,235	건조완료
D2	유선	전기추진	150	2	8,200	2,296	1,148	1,148	’22.4.~ ’24.11.
E2	예선	하이브리드	396	3	10,128	2,633	1,316	1,317	’22.11.~ ’24.11.
2023년									
A3	기타선	하이브리드	24	3	1,840	455	227	228	건조완료
B3	유선	전기추진	13	1	5,600	840	420	420	건조완료
C3	도선	하이브리드	150	3	4,000	1,040	520	520	’23.11.~ ’24.10.
C3	도선	하이브리드	150	3	4,000	1,040	520	520	’23.11.~ ’24.10.
C3	도선	하이브리드	150	3	4,000	1,040	520	520	’23.11.~ ’24.10.
C3	도선	하이브리드	150	3	4,000	1,040	520	520	’23.11.~ ’24.10.
2024년									
A4	기타선	하이브리드	200	3	7,000	1,820	910	910	’24.9.~ ’26.2.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대비 4억원(1.3%) 증가한 321억 7,100만원이며, 계정별로는 구조개선사업계정은 2024년 대비 1억 8,100만원(0.8%) 증가한 251억 4,200만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2024년 대비 1억 7,000만원(1.4%) 증가한 70억 2,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주된 증가 사유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318	322	4	1.3
구조개선사업계정	249	251	2	0.8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5	18	△7	△28.0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7	2.6	1.9	271.4
○ 변상금및위약금	0.1	0.1	0	-
○ 기타경상이전수입	220	227	7	3.2
○ 면허료및수수료	3	3	-	-
○ 실습수입	0.2	0.2	-	-
○ 잡수입	1	1	-	-
○ 고정자산매각대	0.1	0.1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69	70	1	1.4
○ 관유물대여료	0.1	0.1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	3	△1	△25.0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	0.1	△1.9	△95.0
○ 변상금및위약금	0.6	0.6	-	-
○ 기타경상이전수입	61	63	2	3.3
○ 잡수입	0.6	0.6	-	-
○ 고정자산매각대	2	2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0.2	0.2	-	-

* 자료: 해양수산부

□ 각 계정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구조개선계정은 자체수입 25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사업비로 1조 897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농특세계정은 자체수입 70.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사업비로 7,59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구분	'23년	'24년 (A)	'25년안 (B)	증감 (B-A)	구분	'23년	'24년 (A)	'25년안 (B)	증감 (B-A)
계(구조+농특세)	320	319	322	△3	계(구조+농특세)	14,553	16,799	16,711	△89
[구조개선계정]	251	250	251	1	[구조개선계정]	8,553	10,115	9,121	994
○ 자체수입	251	250	251	1	○ 일반지출 ○ 내부거래지출	8,553 -	10,115 -	9,121 -	994 -
[농어촌특별세계정]	68.9	68.5	70.3	1.8	[농어촌특별세계정]	6,019	6,685	7,590	905
○ 자체수입	68.9	68.5	70.3	1.8	○ 일반지출	6,019	6,685	7,590	905

* 자료: 해양수산부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사업은 2,205억 67백만원으로 2024년(1,626억 700만원) 대비 35.6%(579억 6,000만원), 국가어항 사업은 3,377억 8,600만원으로 2024년(3,063억 2,800만원) 대비 10.3%(314억 5,800만원) 증가한 반면,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사업은 1,017억 4,800만원으로 2024년(1,363억 2,100만원) 대비 25.4%(△345억 7,300만원), 양식등 재해대책비 사업은 2024년 대비 250억이 감소되었음.

【 2025년도 농특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118,410	162,607	220,567	57,960	35.6
- 국가어항	268,872	306,328	337,786	31,458	10.3
-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161,882	136,321	101,748	△34,573	△25.4
- 양식등 재해대책비	16,909	50,000	25,000	△25,000	△50.0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양식업분야 취업·창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 및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의 장기 운영계획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양식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취업·창업률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컨설팅사업을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취업·창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완공 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스마트양식빅테이터 센터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8억 5,500만원(32.1%)이 증액된 48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42]

【 2025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54,678	36,907	32,275	48,762	11,855	32.1

자료: 해양수산부

4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친환경양식어업육성(3140-301)

(나) 검토의견

(1)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사업'을 통해 양식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교육, 창업컨설팅 실시 및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 중 ① 기술이전 교육은 친환경양식 예비창업자,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스마트양식 단계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② 창업컨설팅은 친환경양식 예비창업자, 기술이전 교육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경영, 행정, 수산물유통(마케팅), 양식기술의 4개 분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매칭해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1,540	1,386	1,386	1,399	1,639
	창업지원	1,090	981	981	990	1,130
	사업관리	450	405	405	409	509

주 *: 기술이전 교육, 창업 사전·후 전문가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사항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 창업컨설팅 유형별 주요 실시 내용】

기술소개 (2일/2회)	초급과정 (1주/5회)		중급과정 (2-4주/4회)		고급과정 (5개월/1회)
(창업관심자) 친환경양식 기술 온라인 소개	(창업희망자) 이론 위주의 맞춤형 교육	⇨	(창업준비자) 이론·실습 병행하는 전문 교육	⇨	(예비창업자) 양식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체험 교육
′24. 2. ~ 7.	′24. 4. ~ 10.		′24. 3. ~ 11.		′24. 4. ~ 8.

【 창업컨설팅 유형별 주요 실시 내용】

분야	주요 실시 내용
경 영	ㅇ경영진단, 사업 타당성 분석, 자본관리 등 양식장 창업 경영 관련 전반에 대한 조언
행 정	ㅇ양식장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ㅇ친환경 양식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안내 등 ㅇ양식장 HACCP 인증 행정 안내 및 대행
수산물유통	ㅇ수산물 판로개척, 시장 확대 방안 등 제시 ㅇ수산물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등 제언
양식기술	ㅇ품종별 양식기술 전반 조언 ㅇ최신 양식장 시설 동향 등 조언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최근 5년간 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실시 실적을 보면, 기술이전 교육은 2019년 129명에서 2023년 20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창업컨설팅 실시 실적(대상 인원수)은 2019년 95명,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73명, 2023년 61명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교육 및 창업컨설팅을 받은 후 양식분야에 창업한 사람의 수도 2019년 29명, 2020년 34명, 2021년 32명, 2022·2023년 30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창업컨설팅 유형별 주요 실시 내용】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술교육(A)	129	201	183	215	201
창업컨설팅	95	101	85	73	61
교육 후 취·창업자(B)	29	34	32	30	30
비율 (B/A)	22.5	16.9	17.5	14.0	14.0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창업컨설팅 참여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양식창업 희망자들이 느끼는 창업컨설팅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고,

창업컨설팅 및 기술교육 후 실제 창업한 사람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을 포함하는 지원 사업 전반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창업컨설팅의 횟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양식품종 중심의 교육이 추진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양식기술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 창업컨설팅보다 기술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고, 친환경·스마트양식 창업은 재래식 양식에 비해 고난도의 기술과 높은 투자비용이 발생하여 컨설팅보다 기술교육 이수가 보다 효과적이며 창업 관련 고충은 체계적 기술교육을 통해 충분히 해소되어 창업컨설팅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취업·창업률 정체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양식은 대부분 육상에 건립되어 최근 물가·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구축비용이 증가하여 창업 포기 또는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창업부담이 증가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창업컨설팅 사업에서 양식기술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경영, 행정, 수산물유통)의 경우 그 효과성 및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교육이나 현장체험 등 창업희망자들의 고충을 보다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운영계획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산양식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양식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중앙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70%, 지방비 30%)으로 건립이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전체 사업비 130억원 중 3년차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22억원이 반영되었음.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부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부산)</th></tr>
<tr><td>사업주체</td><td colspan="6">부산광역시</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23년~2026년(4년간)</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위　　치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내(부산시 남구)
◦규　　모 : 994㎡
◦사업내용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스마트양식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td></tr>
<tr><td rowspan="3">총사업비</td><td colspan="6">130억원(국비 91 억원, 지방비 39 억원)</td></tr>
<tr><td>연도</td><td>2023년</td><td>2024년</td><td>2025년</td><td>2026년</td><td>총 계</td></tr>
<tr><td>국비</td><td>5</td><td>20</td><td>22</td><td>44</td><td>91</td></tr>
<tr><td rowspan="4">예산집행
(단위: 백만원)
*국비</td><td colspan="2">연도</td><td colspan="2">예산액(예산현액)</td><td colspan="2">집행액(실집행액)</td></tr>
<tr><td colspan="2">계</td><td colspan="2">2,500</td><td colspan="2">0</td></tr>
<tr><td colspan="2">2023</td><td colspan="2">500</td><td colspan="2">0
('23년 기본계획 수립에 3.5억원 사용될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가 검토로 인해 사업지연)</td></tr>
<tr><td colspan="2">2024.9월</td><td colspan="2">2,000</td><td colspan="2">0</td></tr>
</table>

	당초계획		실제(공사 완료 기준)	
건립일정	‘23.8.~12.	투자심사·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이행	‘23.8.~12.	투자심사·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이행
			‘24.1~5	ISP 사전 전문가 자문
	‘24.	ISP 용역+실시설계 용역	‘24.6~7.	ISP 과업제안서 작성
			‘24.8~10.	발주계획 수립 및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협상적격자 선정
	‘25.	빅데이터센터 구축	‘24.11.~’25.6	ISP 용역(실시설계 포함)
			‘25.하~’26.12.	빅데이터센터 구축

자료: 해양수산부

□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동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집가능한 수산양식 데이터들의 경우 특정 어종에 치우쳐 있고 표준 규격이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는 점, 2024년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이 연차적으로 완료되어 테스트베드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 각지의 수산양식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중심지적 위치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임.

그런데 동 사업은 지자체(부산광역시)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구축된 빅데이터 및 센터의 소유·운영권도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속하고, 운영상의 책임 및 비용 역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전국 단위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센터라는 사업성격을 고려할 때 구축된

빅데이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유·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진 상황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거쳐 사업수행방식을 명확히 할 예정인바, 향후 빅데이터 센터 구축 후 데이터의 활용·관리 등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지고 활용할 부분과 지자체가 운영할 부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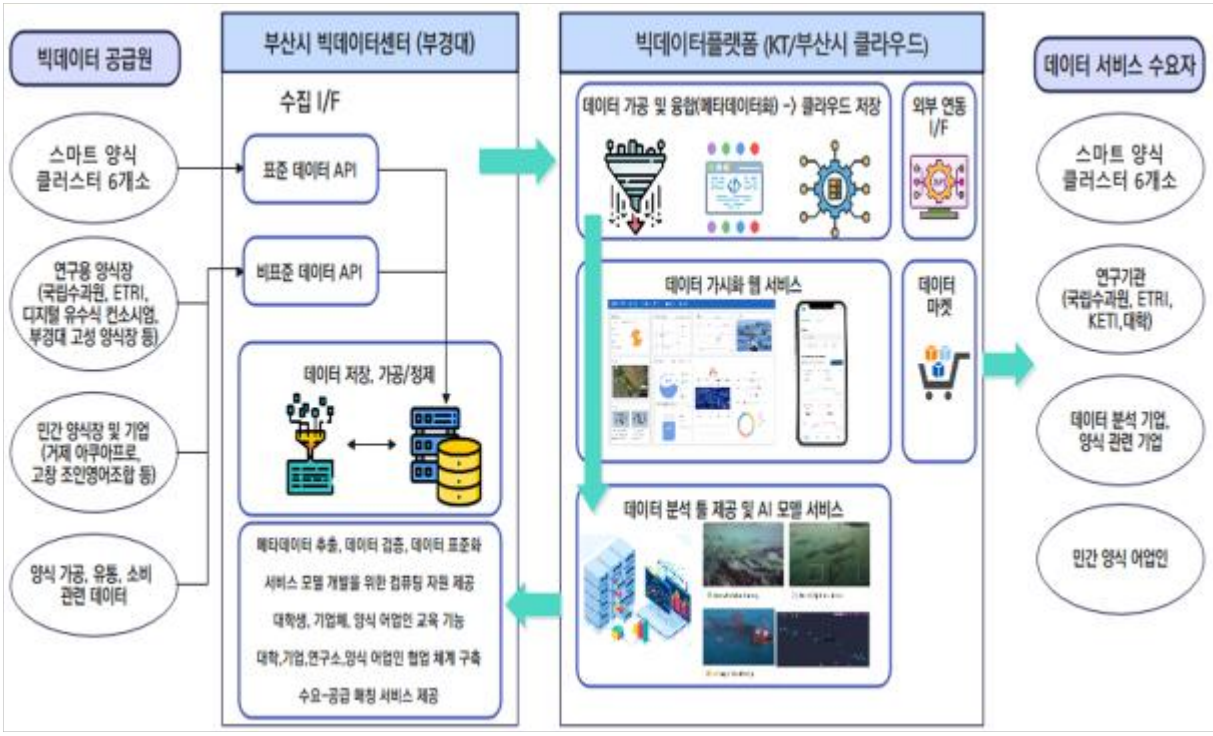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 다음으로,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8월 말까지 예산현액 21억 5,0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여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3	500	500	500	-	500	350	150	-	70
2024.8	2,000	2,000	2,000	150	2,150	-	-	-	-
2025	6,600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3년 당초 보조사업자로 예정되었던 부산시가 사업수행여건 미흡을 이유로 사업을 일시 포기하였다가 이후 재차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이 지연되었고,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2023.11월), 지방비 예산 편성(2023.12월) 등 매칭 지방비 편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2024년에는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차별화 및 목적성이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진행(2024.1월~5월)하게 되어 일정이 일부 지연되었고, 현재 ISP 용역 입찰 공고(2024.10월)를 거쳐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2025년까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센터 건립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2024년 10월 현재 ISP 용역 수행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11월 이후에 비로소 ISP 용역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ISP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사업종료연도인 2025년 내에 예산(국비 66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집행상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은 전국 각지에 조성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스마트 양식시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분석·체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적시에 완료되어 충분한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매년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낮고, 2024년의 경우에도 8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11%로 높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0	14,500	14,500	14,500	-	20,586	20,586	-	-	100
2021	17,300	17,300	17,300	-	17,300	14,910	2,390	-	86
2022	22,050	18,000	18,000	2,390	20,390	16,512	3,878	-	81
2023	25,300	25,300	25,300	3,878	29,178	22,150	7,028	-	76
2024.8	15,300	15,300	15,300	7,028	22,328	2,472	-	-	11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데이터 수집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2)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등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동 세부사업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시정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은 어선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선중개업자와 국민(어업인 등)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는 어선거래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 2025년도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어선거래제도 운영	509	509	353	509	-	-

4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어선거래제도 운영(3145-302)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선거래가 공개시장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기나 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등 불법·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불성실 중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어선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편의 제공, 원활한 어선 매매를 통한 어업의 진입·퇴출의 유연성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6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44]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에는 어선거래시스템 유지·보수, 어선중개업 교육에 필요한 5억 900만원이 편성됨.

[어선거래제도 실시 연혁]

○ '12년~'14년: 어선거래제도 타당성 검토(해양수산연수원)
○ '14년~'17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해양수산연수원)
○ '16년 : 어선법 개정(어선거래시스템 운영 및 어선중개업 등록 등 근거 마련)
○ '17년~'18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해양수산연수원)
○ '18년~현재 : 어선거래시스템 운영(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관 운영)
○ '19년~현재 : 어선중개업 신규·보수 교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관 운영)

44) ①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 ②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③ 어선 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자료의 제공 요청 ⑤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⑥ 어선중개업 교육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업무 ⑦ 어선중개업 교육이력 등 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⑧ 기타 어선거래제도 운영 관련 업무 위탁

□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 절차를 살펴보면, 어선거래를 희망하는 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온라인 어선거래시스템에 매도·매수신청을 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어선중개업자가 중개의사를 표명하고, 어선거래를 희망하는 의뢰인이 어선중개업자를 선정하면 중개업자가 매물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됨.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해당 시스템에는 어선거래 중개업자만이 어선정보(어선명, 어선번호, 어업종류, 희망가격 등)를 포함한 매물을 등록하고 전자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어선거래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선법」에 따라 어선거래 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어선

거래 시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님.

□ 그런데 동 사업이 개시된 2018년 이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매물등록 및 거래실적이 높지 않고, 2023년에도 전체 어선거래(7,109건) 대비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건수는 35건으로 전체 거래건수 대비 시스템 활용 거래의 비율이 0.49%임. 2024년의 경우에도 어선거래시스템의 매물등록 건수가 275건, 거래완료 건수는 14건으로, 각각 전년도의 51.4%, 40%에 해당하여 사업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어선거래시스템의 연도별 활용실적]

(단위: 건, %)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9월말[3]
매물등록합계(A)	2,078	40	254	300	317	357	535	275
매 도	1,889	26	223	280	279	316	508	257
매 수	189	14	31	20	38	41	27	18
거래완료건수(B)	101	6	1	12	19	14	35	14
전체 어선거래 건수(C)	49,384	6,293	8,397	9,766	9,415	8,404	7,109	-
어선거래시스템 매물등록비율(A/C)	4.2	0.63	3.02	3.07	3.37	4.25	7.53	-
어선거래시스템 사용거래비율(B/C)	2.0	0.09	0.01	0.12	0.20	0.17	0.49	-

주: 1) 2018.5.1.부터 지자체 어선 소유자 변경 등록건을 취합 작성함
2) 직거래 및 중개거래 모두 포함
3) 2024년 전체 어선거래건수(C)는 2025년 초 집계됨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의 사용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중개업자를 통한 매매만 가능해

거래방식 선택이 제한적이고, 실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이나 사고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실제 운영과정에서 개인이 어선중개업자가 등록한 정보만 확인한 후 실제 거래는 직거래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매물등록주체인 어선중개업자가 매물을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실거래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매 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시정요구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를 시정요구사항에 포함한 바 있음.

【2020~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어선거래제도 관련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상황
2020	(21)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21	(14) 어선거래시스템 홍보강화 및 선박 하자 보증 담보 제도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22	(27)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선거래시스템을 어선관련 데이터(보험, 사고이력, 유사 어선 감척가격 등)를 제공하는 국가 어선정보포털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45][46],

2024년 10월 현재 이를 위한 「어선법」 개정안[47]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2025년도 예산안에 어선거래시스템 부분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률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등록되지 않는 등 어선거래 참여자들이 동 시스템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한 점이 사업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어선거래시스템의 개편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5)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4.2.)에서 해당 조치결과를 2023년 10월에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46) 해수부는 그 밖에 현재 어선중개업자에게 한정되던 매물 등록주체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47) 「어선법」 제31조에 '어선거래시스템'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다른 종류의 정보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임.

「어선법」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

3)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 사업추진형태 재검토 필요 등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상 정부 업무위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추진형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해양에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어구 등을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으로 30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8]

【 2025년도 감척어선공공활용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감척어선공공활용	-	-	-	3,045	신규	신규

48) 회계(기금)-세부사업-내역사업: 농특회계-감척어선공공활용(3145-308)

(나) 검토의견

□ 최근 불법적으로 설치된 어구나 해양에 방치되어 침적된 폐어구가 증가하여 수산자원 감소, 해양동식물 폐사 및 선박추진체에 어구가 얽혀들어 발생하는 선박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전체 해양쓰레기 중 폐어구 방치량 추정치(2019년)]

구분		톤	%
해안쓰레기	육지부 자연해안	4,168	2.8
	육지부 인공해안	1,147	0.8
	도서부	22,680	15.3
	소계	27,995	18.8
침적쓰레기	해역(폐어구)	25,206*	16.9
	양식장	89,771	60.4
	소계	114,977	77.3
부유쓰레기	부유	5,749	3.9
합 계		148,721	100.0

주*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 작성 당시 기준으로, 이후 5년간 연간 약 5천톤씩 방치되어 2024년 현존량은 5만톤으로 추정됨(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선과 전문수거선 등을 활용하여 중국 범장망 등 불법설치 어구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수행(4년간 총 80틀, 662톤 수거)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안강망 어선 등 중국 범장망과 유사한 어업을 수행하는 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철거 실적이 높은 점에 주목하여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등 철거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2024년 시범사업을 개시하여 2척의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강선)을 확보, 불법어구 철거에 투입한바 있음.

【 2020~2023년 불법어구 철거실적*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기간	4.18~28 (11일간)	9.8~12.28 (약 3개월간)	4.19~28 (10일간)	9.27~12.10 (약 75일간)
예산	3.4억	5억	4.5억	4.5억
참여	목포 근해안강망 어선 3척	전문수거선 청경호	군산 근해안강망 어선 4척	전문수거선 청경호
수역	218·228·229해구	218해구	218·228·239해구	229·239해구
실적	349,550kg(34틀)	5,950kg(1.5틀)	291,350kg(43틀)	15,760kg(1.5틀)

주 * '20~'23년 평균 수거실적 : 20틀/46.5일간 ☞ 1일간 범장망 약 0.43틀 수거
자료: 해양수산부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은 이처럼 연근해어선감척[49] 사업을 통해 확보된 감척어선 중 상태가 적합한 어선을 선정하여 중국 범장망 등 불법어구와 국내 침적·폐어구를 수거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척의 근해안강망어선과 1척의 대형트롤어선 확보에 필요한 30억 4,500만원(민간경상보조)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감척어선공공활용 예산안 산출내역 】

예산(백만원)	산출내역
3,045	○ 민간경상보조(320-01) : 3,045,000천원 가. 불법어구 수거 (3,045,000천원) · 감척어선 수리·정비·검사 등 : 349,200천원×3척=1,047,600천원 · 불법어구 수거·처리 : 644,400천원×3척=1,933,200천원 · 운영비 : 64,200천원×1식=64,200천원

49) 농특회계-연근해어선감척(3145-500): 연근해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5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감척대상어선 선정, 감정평가, 양여계약 체결 등을 진행하는 데 약 6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트롤어선 1척의 경우 7월부터, 안강망어선 2척의 경우 10월 이후부터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5년 감척어선 공공활용 선박 선정 절차도】

구분	감척어선 공공활용 선박 선정 프로세스						
주 체	해양수산부·지자체	▶	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수산자원공단
내 용	감척 결과 통보		KOMSA 감척어선 간이(육안)검사		KOMSA 감척어선 안정등급 평가		정책목적에 맞는 감척어선 선별
소요기간	6개월		1개월 소요		1개월 소요		1개월 소요
예상일시	1월 / 7월		2월 / 8월		3월 / 9월		4월 / 10월

【2025년 감척어선공공활용 도입·운영계획】

시기	2025년					
	1·2월	3·4월	5·6월	7월	8·9월	10~12월
근해안강망 2척(기존)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전담 (1~4월)		국내 불법어구(각망 등) 폐어구 수거 지원 (5~8월)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전담 (9~12월)
대형트롤 1척(신규)	감척어선 확보 ('24년 감척)	어선검사 및 정비	선원고용 선박출항 준비	침적 폐어구 수거 전담 (7~12월)		
근해안강망 2척(신규)			감척어선 확보 ('25년 감척)	어선검사 및 정비	선원고용 선박출항 준비	불법·침적 폐어구수거 (3개월)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①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사업구조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감척어선은 「연근해어선 구조개선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소유에 속하나 이후 무상양여계약을 통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유로 이전시킬 계획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의 소유권자로서 선박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선박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최종적인 책임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를 독려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관리법」[50]상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

50)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조성사업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수산자원관리 촉진을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대행하게 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공단의 정관에 따르더라도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대행받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불법어구 등의 철거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보기 어려운 점,

바다에 방치된 어구·시설물 등은 「수산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구 등을 설치한 자가 철거의무자로서 철거해야 하고, 필요시 국가·지자체 등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으므로 어구·시설물 등의 철거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이나 법정민간대행 등의 사업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감척어선을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1]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의 양여를 제한적으로

---

5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법」[52]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53]」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사업자 간 양여 계약을 승인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③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업협정이행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 사업을 통해 매년 중국어선에 의해 설치되는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5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의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여 두 사업이 서로 중복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기존 불법어구 철거사업과 감척어선공공활용사업 비교】

구 분	(계속)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	(신규) 감척어선 공공활용
예산액	450백만원	3,045백만원
수거대상	불법 범장망	불법 범장망 등
대상 해역	서·남해 EEZ 인근	서·남해 EEZ 인근
수거실적	166톤 ('20~'23년 평균)	2,150톤 ('25년 목표)
수거효율	2.71백만원/톤	1.84백만원/톤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강망어선을 임차해 불법어구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성어기(4월 및 9~11월)에는 수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감척어선을 통해 불법·폐어구를 연중 상시 철거할 수 있는 동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두 사업간 운영주체 및 방식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 및 대상이 상호 유사한 측면은 있으므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이 안정화된 후 2026년부터 사업의 통·폐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확대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해양수산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3톤 미만 어선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3년간 79~81%인 점을 고려해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입대상으로 산출한 가입예정 어선원의 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며,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해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6억 8,000만원(16.1%) 증액된 1,92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54].

【 2025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집행		(B-A)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33,843	166,077	166,077	192,757	26,680	16.1

54) 회계(기금)-세부사업-내역사업: 농특회계-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3443-301)

(나) 검토의견

□ 어업은 협소한 공간과 복잡한 장비사용, 거친 해양환경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 대비 재해율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2년 기준 어업 분야의 산업재해율[55]은 3.52%로 같은 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인 0.65%의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조업하는 어선원 및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①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56]이고, ② 어선 보험은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

구분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가입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 임의가입: 3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 승선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어장 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선 등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 사유재산인 어선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톤급 어선을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
재해보상	**어선원이 조업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이행 * 보험급여: 요양·상병·장해·일시보상·유족·장례비·행방불명·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 담보범위 : 전손 및 분손 보험금, 충돌손해배상, 임의구조비 등 ○ 특약담보 : 자기부담금보상특약, 기관내적단독사고보상특약 등

55) 산업재해율 = (재해근로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56) 어선원보험 적용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 제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분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국고보조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순보험료 :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순보험료 보조 : 10톤 미만 70%, 10~20톤 미만 60%
가입현황	2023년: 53.6% *3톤 미만 12.4%, 3톤 이상 80.3%	2023년: 39.6% *10톤 미만 37.1%, 20톤 미만 65.0%, 20톤 이상 83.5%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04년 제정·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57]을 사업 근거로 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는 어선원 79,265명(3톤 이상 어선 51,223명, 3톤 미만 어선 28,042명)을 대상으로 한 어선원 보험료 보조, 어선 22,283척을 대상으로 한 어선 보험료 보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 1,92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57)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산출내역
192,757	가. 어선원 순보험료 지원 (69,570백만원) · 3톤 이상 [**가입선원 51,223명** × 평균가입금액 266백만원 × 보험요율 0.86% × 평균국고지원율 47% x 총보험료 대비 순보험료 비중 80%] + 3톤 미만 [**가입선원 28,042명** × 평균가입금액 266백만원 × 보험요율 0.61% × 평균국고지원율 70% x 총보험료 대비 순보험료 비중 80%] 나. 어선 순보험료 지원 (50,147백만원) · 가입선박 22,283척 × 평균가입금액 287백만원 × 2.33% 보험요율 × 평균국고지원율 42% x 총보험료 대비 순보험료 비중 80% = 50,147백만원 다. 부가보험료 지원 (46,844백만원) · 총보험료 312,296백만원 × 총보험료 대비 순보험료 비중 20% × 국고지원율 75% * (어선원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어선원·어선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80%) + 부가보험료율(20%) 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474백만원) · '14년부터 지원한 점, 유사보험인 산재보험(산재보험법 제77조)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점과 '23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474백만원 요구 *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료재활급여 지급 근거 마련('21.6.15. 공포, '21.12.16. 시행) 마. 국고보조 미지원액 (25,722백만원) · '23년 국고보조 미지원액 25,722백만원 전액 요구

자료: 해양수산부

□ 현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3톤 이상 어선은 당연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3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규모의 영세함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왔음[58]. 이와 같이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나, 3톤 미만 어선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평균 1.5명 승선),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59]

58) 당연가입 대상 확대 경과: 5톤 이상('04~'15) → 4톤 이상('16~'17) → 3톤 이상('18~)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 사실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추진[60]하는 한편,

보험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3톤 미만 어선에 근무하는 어선원 40,641명(추계)을 보험대상자로 하고 이 중 28,042명을 예상 가입자로 산출하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266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60)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삭제를 추진 중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3톤 미만의 어선. 다만,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 이와 관련,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시행령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법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법제심사에 필요한 기간 및 향후 일정(차관회의, 국무회의 등)[61]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10.14. 예정)를 조속히 실시하고,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12월 목표)를 거쳐 2025년 1월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현재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 당연가입 대상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어선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인 3톤 미만 어선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가입률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에 대한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1)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10.14예정) → 법제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11월) → 공포(12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 최근 3년간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체 가입률은 51.4%('21년)~ 53.6%('23년), 3톤 이상 어선의 가입률은 79.3%('21년)~ 80.3%('23년)이고, 당연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경우 소형 어선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낮아져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입률이 53.3%, 4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59.8%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2021~2023년)간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 신계약 기준)

톤급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105,279	54,149	51.4	105,279	54,649	51.9	103,148	55,263	53.6
3톤 미만	42,616	4,443	10.4	42,616	4,715	11.1	40,641	5,039	12.4
1톤 미만	10,130	158	1.6	10,130	168	1.7	8,320	185	2.2
2톤 미만	20,843	1,672	8.0	20,843	1,780	8.5	20,640	1,855	9.0
3톤 미만	11,643	2,613	22.4	11,643	2,767	23.8	11,681	2,999	25.7
3톤 이상	62,663	49,706	79.3	62,663	49,934	79.7	62,507	50,224	80.3
4톤 미만	7,382	3,676	49.8	7,382	3,969	53.8	7,532	4,012	53.3
5톤 미만	9,865	5,385	54,6	9,865	5,559	56.4	9,453	5,649	59.8
10톤미만	21,878	15,761	72.0	21,878	16,393	74.9	21,307	16,644	78.1
20톤 미만	2,673	1,944	72.7	2,673	1,921	71.9	2,558	1,883	73.6
30톤 미만	7,210	8,692	120.6	7,210	8,226	114.1	7,651	8,335	108.9
50톤 미만	4,362	5,158	118.2	4,362	5,094	116.8	4,969	5,128	103.2
100톤 미만	6,164	6,140	99.6	6,164	5,974	96.9	6,030	5,838	96.8
100톤 이상	3,129	2,950	94.3	3,129	2,798	89.4	3,007	2,735	91.0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소형 어선의 어선원보험의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원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원 보험 특성상

고용 어선원 1인당 보험료가 연간 248만원으로 산재보험(연간 38.6만원) 대비 6.4배 높고, 국고보조(평균 45.7% 보조) 후에도 어선주 1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18만원 수준으로 보험료의 절대 가액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당연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이라도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가족어선원만 승선한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등은 선주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 미가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3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족어선원 승선 어선, 내수면 어선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선이 기존 4톤 미만 어선, 5톤 미만 어선 대비 유사하거나 더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62],

해양수산부는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대상자를 총 40,641명으로 산출하고 그 중 68.9%인 28,042명(4톤 미만 어선, 5톤 미만 어선의 가입률은 각각 53.3%, 59.8%임)이 실제 가입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산출내역의 정확도를 높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62) 4톤 미만 어선 및 5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은 각각 53.3%, 59.8%로, 가입대상 선원 중 약 46%, 4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족어선원 승선어선, 내수면 어선 등이 많은 점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어선주가 가입을 회피할 경우 이를 점검·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아니한 상황으로, 현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확대 시행 시 어선주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가입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이므로, 가입을 유도하고 미가입 시 이를 점검·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어선원보험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3톤 미만 어선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6월~7월)를 실시한 결과 어선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유로 보험료 부담을 선택한 경우가 37.7%로 가장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어선원보험 제도 확대 적용에 앞서 보험료 할인 확대, 제도 개선 등 어선주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톤 미만 어선업자·양식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22년)*】

구분	일반어선(3톤 미만)		양식장관리선(전체 톤급)	
설문응답수	2,524명		541명	
주업종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기타		해조류, 패류, 해상가두리, 기타	
어선원고용	- 선원고용어선 기준 : 평균 1.58명 - 설문응답어선 기준 : 평균 0.46명		- 선원고용어선 기준 : 평균 2.12명 - 설문응답어선 기준 : 평균 1.01명	
고용 어선원임금	- 내국인 : 평균 271만원 - 외국인 : 평균 246만원		- 내국인 : 평균 302만원 - 외국인 : 평균 259만원	
어선원보험 제도 인지여부	알고있음	63.1%	알고있음	65.0%
	모름	16.7%	모름	16.9%
	들어본 것 같음	20.2%	들어본 것 같음	18.1%

구분	일반어선(3톤 미만)			양식장관리선(전체 톤급)		
어선원보험 가입여부	가입		42.6%	가입		36.8%
	미가입		57.4%	미가입		63.2%
	※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중 36.4%는 고용 어선원이 있음			※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중 45.2%는 고용 어선원이 있음		
미가입사유	보험료 부담		37.7%	보험료 부담		43.8%
	가족어선원만 승선		31.2%	가족어선원만 승선		30.4%
	가입필요성 無, 기타		31.1%	가입필요성 無, 기타		25.8%
당연가입확대 의견	3톤미만으로 확대	필요	42.2%	양식장관리선으로 확대	필요	42.5%
		불필요	30.2%		불필요	31.3%
		모르겠음.기타	27.6%		모르겠음. 기타	26.2%
당연가입확대 불필요 사유	보험료 부담		40.6%	보험료 부담		45.2%
	사고가 없어서		29.5%	사고가 없어서		30.9%
	현재도 임의가입 가능, 기타		29.9%	현재도 임의가입 가능, 기타		23.9%
당연가입확대 범위	1톤이상 어선부터		44.3%	전톤급		55.0%
	전톤급		33.9%	3톤이상 관리선부터		31.7%
	2톤이상 어선부터		21.8%	2톤이상 관리선부터		13.3%
가족어선원의 당연가입확대	찬성		38.1%	-		-
	반대		34.5%			
	모르겠음		27.4%			
당연가입확대 필요사항	국고·지방비 보조 확대		71.1%	국고·지방비 보조 확대		69.3%
	재해보상금액 확대		17.1%	재해보상금액 확대		20.0%
	보험가입편리, 기타		11.8%	보험가입편리, 기타		10.7%
기타 개선 필요사항	보험료 인하, 재해보상확대, 가입편의, 신속한 보상, 홍보강화, 무사고환급확대			보험료 인하, 재해보상확대, 가입편의, 홍보강화, 재해사고 심사철저, 보상업무 간소화 및 신속처리		

주 *설문대상: 3톤 미만 어선업자(2,600명), 양식업자(400명) / 설문기간: 2022.6.20.~7.31. / 설문기관: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자료: 해양수산부

5)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의 집행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의 보급 및 사용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안에 편성된 2025년도 증액분(79억 9,000만원 증액)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63]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억 7,300만원(5.2%) 증액된 1,11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64].

【 2025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수산 공익직불제	86,762	106,233	32,752	111,806	5,573	5.2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27,720	34,474	29,980	41,015	6,541	18.9

63) 수산공익직불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의무의 범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해양생태계 보전이 있음.
6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수산 공익직불제(3460-310)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소득안정, 어업인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촉진,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보조사업의 형태로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총 4종으로, ①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②경영이양 직불제, ③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④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시행 중이며, 그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은 각 직불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 2025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의 구성 및 지원내용 】

구 성	지원 내용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 어업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내 비(非) 소규모어가 지원 * 조건불리지역(2014년~)의 경우 동 사업 내 포함
경영이양 직불	▪ 신규 어업인 유입을 위해 어업경영을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	▪ 총허용어획량(TAC), 감척 등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 지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100%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하는 양식어가 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 202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직불제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과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65].

동 직불제는 크게 ①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직불제와 ②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직불제로 구분됨.

이 중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한의 품질기준[66]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2024년 기준)은 어가(경영체) 당 최대 2억 3,000만원을 한도로, 1포(20kg)당 10,360원(곤충분 사료의 경우 15,870원)을 지급하며, 현재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

65) **「수산직불제법」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

66)

구분	최소품질기준	
	단백질(%)	지방(%)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 2025년도 배합사료 직불제 주요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ㅇ배합사료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근거법령	ㅇ수산공익직불제법 제18조
지원대상	ㅇ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법인 등
지급액	ㅇ어가(법인) 당 2.3억원을 한도로 매월 배합사료 구입비용의 일부(사용량×지급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지급요건	ㅇ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 사용 ㅇ기타 교육이수, 관계법령 준수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
사업절차	ㅇ(전년 12~1월)사업계획수립 →(~1월)사업신청 →(~2월)사업자선정 →(~2월)사업물량 배정 →(~12월)이행점검→(12월~)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자료: 해양수산부(2024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최근 3년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4년(9월 말)까지의 실집행률이 각각 50.4%, 76.9%, 82.0%, 21.0%로 높지 않고, 이 중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의 실집행률도 2021년부터 2024년(9월 말)까지 각각 50.7%, 64.7%, 73.8%, 36.3%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A+B)										
2021	25,597	25,597	19,273	19,273	0	19,273	12,903	0	6,370	50.4
2022	25,597	25,597	24,254	24,254	0	24,254	19,677	0	4,577	76.9
2023	27,865	27,865	27,720	27,720	0	27,720	22,837	0	4,883	82.0
2024.9	34,474	34,474	29,980	29,980	0	29,980	7,247	0	-	21.0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A)										
2021	16,218	16,218	14,395	14,395	0	14,395	8,227	0	6,168	50.7
2022	16,218	16,218	14,875	14,875	0	14,875	10,490	0	4,385	64.7
2023	18,486	18,486	18,341	18,341	0	18,341	13,635	0	4,706	73.8
2024.9	19,980	19,980	19,980	19,980	0	19,980	7,247	0	-	36.3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B)										
2021	9,379	9,379	4,878	4,878	0	4,878	4,676	0	202	49.9
2022	9,379	9,379	9,379	9,379	0	9,379	9,187	0	192	98.0
2023	9,379	9,379	9,379	9,379	0	9,379	9,202	0	177	98.1
2024.9	14,494	14,494	10,000	10,000	0	10,000	0	0	-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경우, 배합사료의 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기본적으로 배합사료의 사용량이 증대될수록 동 직불금의 집행실적도 제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배합사료의 사용량을 살펴보면, 2021년 23,596톤, 2022년 25,327톤, 2023년

25,813톤으로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전체 배합사료 사용량을 살펴보아도 2021년 190,032톤, 2022년 185,081톤, 2023년 185,081톤으로 사용량이 정체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직불금 지급대상 배합사료 사용량 】

(단위: 톤)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3,596	25,327	25,813
일반사료	9,277	7,590	22,320*
고품질	11,204	14,917	
곤충분	3,115	2,820	3,493

주 * 2023년부터 일반·고품질 사료 통합지원

자료: 해양수산부(사업실적보고서)

【 최근 3년간 전체 배합사료 사용량 】

(단위: 톤)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사료 사용량	649,349	639,781	639,313
배합사료 사용량	190,032	185,081	185,081
배합사료 사용 비율	29.3%	28.9%	2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최근 3년간 전체 배합사료 공급규모 】

(단위: 톤)

연도별	2021	2022	2023
배합사료 공급 규모	190,032	185,081	177,5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이와 같이 배합사료의 사용량 증가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는, 양식어민들의 배합사료 성능에 대한 불신이 있고, 배합사료의 경우 기존 생사료 대비 성장 효율이 낮아 상품 출하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 수익성이 낮고, 일부 양식품종의 경우 배합사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현재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류)에 한정되어 있는 직불금 지원대상 어종을 확대하는 등, 직불금 지급 확대를 통해 배합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안에 전년 대비 79억 9000만원(40%) 증액된 27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배합사료의 사용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늘리려는 해양수산부의 편성방향에는 정책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배합사료의 성능이 생사료 대비 부족한 점 및 그로 인한 어업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하고 있고,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67] 사업으로 추진되던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사업'[68]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부족 판단에 따른 사업포기(2024년)로

67) 농특회계 -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3140-300)
68)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국비30%, 지방비20%, 자부담50%)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 사업 종료되었음. 현재 같은 세부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차질을 빚는 등, 배합사료의 사용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지급예산의 증액 외에도 배합사료의 성능개량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배합사료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등, 직불금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임.

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과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의 경우 타 부처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되고 있다는 점, 최근 3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해당 회계의 세입으로 세출예산 충당이 지속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고려시 ,두 사업을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은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 기구 협상과 대응·지원 및 수산통상협상 대응을 통하여 어촌, 어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억 9,100만원이(23.8%) 증액된 7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69].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 확보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억 1,100만원이(3%) 증액된 44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70].

6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3542-301)
7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 2025년도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 「연안국과의 협력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4,000	5,822		7,213	1,391	23.8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27,723	43,647	26,175	44,958	1,311	3

*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에 필요한 경비, 예수금과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전출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71]

---

7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해양수산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수행하고 있는 총 134개의 세부사업은 수산식품산업육성, 수산물수출 지원, 수산물유통 개선, 친환경양식육성, 원양어업기반구축 등의 단위사업의 내에서 수행되고 있음.

'원양어업기반구축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에는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3542-301)」 및 「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사업」과 원양어업기반구축을 위해 원양업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수산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원양어업활성화 사업」,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에 지원을 하기 위한 「원양어선 감독관리 체계구축 사업」이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중 원양어업기반구축(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목록 현황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지원목적, 대상, 방식이 나타나도록 기술 요청)
원양협력	원양어업 기반구축	① 원양어업활성화	· (목적)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및 공해상 조업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수역 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원양업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수산식량자원 확보 · (대상) 원양어업자 등 · (방식)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②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 (목적) (국제수산기구협상) 국제수산기구 관련 주요 국가와의 양자협의체 등 국제 해양수산 양자·다자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지원목적, 대상, 방식이 나타나도록 기술 요청)
			협의체 대응 및 해양수산 국제규범 논의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 (수산통상협상) 해양·수산·통상 전문가 협의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WTO/FTA 등 통상협상에 대응하여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 (대상) 어업인 등 수산업종사자, 일반국민 · (방식) 직접수행, 민간위탁(한국원양산업협회), 민간경상보조(한국수산자원공단)
		③ 연안국과의 협력(ODA)	· (목적)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 확보 및 해외 수산자원 안정적 확보에 기여 · (대상) 개발도상국 · (방식)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④ 원양어선감독관리 체계구축	· (목적) 원양어선 IUU어업 예방을 위해 실시간 위치 및 조업활동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위성 수신료,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지원 * 국제수산관리기구 회의 참석, 원양어선 현지 승선검색, 영문에디터 인건비, 원양어업자 교육 등 · (대상)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 · (방식) 직접수행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단위사업 원양어업기반구축 내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협상대응력 강화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원조하는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비함.

□ 또한, 국제협상 및 ODA 사업의 경우 타 부처에서도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해 설치된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72]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3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회계의 세입으로 세출예산 충당이 지속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최근 3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구분	'23년	'24년 (A)	'25년안 (B)	증감 (B-A)	구분	'23년	'24년 (A)	'25년안 (B)	증감 (B-A)
계(구조+농특세)	1,369	318	321	3	계(구조+농특세)	15,001	16,799	16,710	△88
[구조개선계정]	1,288	249	251	2	[구조개선계정]	9,158	10,114	9,120	△993
○ 자체수입	1,288	249	251	2	○ 일반지출 ○ 내부거래지출	7,350 -	8,553 -	10,196 -	1,643 -
[농어촌특별세계정]	80.8	68.5	70.2	1.7	[농어촌특별세계정]	5,843	6,684	7,590	905
○ 자체수입	80.8	68.5	70.2	1.7	○ 일반지출	5,843	6,684	7,590	905

* 자료: 해양수산부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과 '연안국과의 협력(ODA)' 세부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개선 사업계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2) ○ 국제협상 사업의 경우 농림부, 국토교통부 모두 일반회계로 수행함
○ ODA 사업은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중기부 일반회계로 수행함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과 「연안국과의 협력 사업」 현황 】

구분 (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사업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대응·지원 및 수산통상협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 확보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
수행방식	직접·민간위탁	직접, 민간보조
사업기간	'99～계속	'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5년도 예산안	7,213백만원	44,598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보면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3542-301)」 및 「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사업」은 UN 해양법 발효('94) 이후 세계 주요 연안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외국어선 조업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다자간의 협상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미래 자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 두 사업은 ① 국제지역수산관리기구 협상에서 적극 대응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이 해외어장에서 안정적 조업활동을 통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② 연안국과의 우호적 협력 확대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었지만, 국제협상 및 ODA를 수행하는 타 부처의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설명임.

- 다만, 2025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어 회계변경이 어려우므로 2026년 예산편성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비목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비목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시험연구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 없는 홍보물품 경비의 편성·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 확보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억 1,100만원이(3%) 증액된 44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73].

【 2025년도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27,723	43,647	26,175	44,958	1,311	3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1,330	2,370	1,850	1,900	△470	△19.8

* 자료: 해양수산부

7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인도네시아 고유 수산생물(나폴레옹피쉬, 유큐마)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대화 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이 용역 발주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비목별로 일반용역비 16억 7,000만원과 시험연구비 2억 3,000만원으로 총 19억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의 세부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편 성		산출내역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일반 용역비	1,670	직접 인건비	56	(2급)6.1백만원x5명x12개월x12%=44.3백만원 (3급)3.6백만원,x1명x12개월x15%=6.5백만원 (5급)2.9백만원x1명x12개월x15%=5.3백만원
			제경비	61	인건비x110%
			기술료	47	(인건비+제경비)x40%
			파견 경비	67	체재비24.0백만원+ 항공료(국제선) 1.6백만원x11회 + 안전보건관리비 0.3백만원 +교통비(차량임차)+0.3백만원x24회 +교통비(현지항공)+0.9백만원x11회+통역료0.3백만원x24일
			양식 기술개발	545	연구인건비 270백만원 + 경비 230.0백만원 + 간접경비/일반관리비 45.0백만원
			시설/ 기자재	651	케이섬 해조류 건조시설 구축 및 종자배양, 수산 기자재 지원 651백만원
			역량강화	91	연수인건비 10.4백만원 + 제경비 5.0백만원 + 파견경비 51.1백만원 + 교육경비 22.3백만원 + 친교행사경비 1.0백만원 + 과정성과경비 1.2백만원
			부가세	152	총사업비x10%
	시험 연구비	230	출장비	64	8백만원x2인x4회=64
			사료개발연구	60	시료성분분석 20백만원x1회=20백만원 배합사료제작 10백만원X2회=20백만원 실험어 5백만원X2회=10백만원 기타물품 5.2백만원X4회=10백만원
			수용비	66	바탐센터 시험장비 유지관리비 66백만원
			재료비	15	전산용품 5백만원 사무용품 5백만원 홍보용품 5백만원
			기타(수수료)	15	조달정산
			공공요금	10	
계		1,900			

*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중 '시험연구비' 관련 사항을 보면, 시험연구비(210-13)는 9개 세목이 통합된 비목[74]으로 동일 세목(210-13)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축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시험연구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있어서 탄력적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시험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연구 관련 경비(재료비, 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 등은 시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23-'24년도에는 시험연구비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현장점검(여비), 나폴레옹피쉬 배합사료 개발연구 등의 업무추진이 어려워 비목 간 예산 재배정(일반용역비 중 일부를 시험연구비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74) **2024년 예산편성지침 [시험연구비: 9개 통합비목]**

비목	세목(내역)
일용임금(110-04)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일반수용비(210-0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210-03)	피복비
임차료(210-07)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장비 리스료 등
유류비(210-08)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등에 필요한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재료비(210-1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여비(220-01/02)	국내/국외여비

【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인도네시아 양식사업(비목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2023	시험연구비	(210-13)	-	-	-	130	130	100	100	-	-
	일반용역비	(210-14)	1,330	-	-	1,200	1,200	100	100	-	-
2024. 9월	시험연구비	(210-13)		-	-	160	60	34.8	34.8	-	-
	일반용역비	(210-14)	2,370	-	-	2,210	1,850	82.4	82.4	-	-

* 자료: 해양수산부

- 또한, 2023년·2024년 일반용역비에서 세목조정하여 집행된 시험연구비의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재료비 명목으로 홍보용품(연수생 방문 또는 인도네시아 기관방문 시 사업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배포[75]) 각각 5백만원, 8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 그런데,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의 경우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76]되어 있는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집행으로 보여짐.

75)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보용품은 초청 연수생 방한이나 사업책임자 현지 기관방문 시 동 사업홍보를 위한 기념품(멀티어댑터, 에코백 등) 제작에 사용하였다는 설명임.

76)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시험연구비(210-13목) p.209)
□ 시험연구비는 9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다만,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 2025년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2억 3,000만원의 예산안도 역시 홍보용품비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의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결산현황 】

구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2023년	일반 용역비	1,330	시험연구비 (세목조정) 130	출장비	50	6.25백만원x4인x5일x4회=50
				자문비	34	전문가 자문 85만원x4인x10회=34
				사료개발연구	15	후보군 비교분석 15
				재료비	13	전산용품 7 **홍보용품 5**
				기타(수수료)	18	조달정산
2024년	일반 용역비	2,370	시험연구비 (세목조정) 160	출장비	50	6.25백만원x4인x5일x4회=50
				사료개발 연구	60	시료성분분석 20백만원x1회=20백만원 배합사료제작 10백만원X2회=20백만원 실험어 5백만원X2회=10백만원 기타물품 5.2백만원X4회=10백만원
				재료비	25	전산용품 9백만원 사무용품 8백만원 **홍보용품 8백만원**
				기타(수수료)	20	조달정산
				공공요금	5	
	계	2,370				2,370

* 자료: 해양수산부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나폴레옹피쉬 배합사료 개발연구 사업(내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2024년부터 시험연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2025년의 경우 동 내내역사업에 시험연구비 2억 3,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세목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시험연구비 편성의 내역에 홍보물품비가 여전히 계상되어 있고, 2023년·2024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된 시험연구비 비목에서 홍보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비목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교통시설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조 7,736억 4,200만원으로, 2024년(1조 7,530억 7,000만원) 대비 1.17% (205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주된 증가 사유는 정부출자수입이 증가(26억 6,300만원)되었기 때문임.

【 2024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17,531	17,736	205	1.17
○ 관유물대여료	27	28	1	3.70
○ 정부출자수입	47	73	26	55.3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8	39	1	2.63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89	400	11	2.83
○ 변상금및위약금	48	49	1	2.08
○ 가산금	20	2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11	321	10	3.22
○ 면허료및수수료	165	170	5	3.03
○ 항공항만및용수수입	107	110	3	2.80
○ 잡수입	67	69	2	2.99
○ 고정자산매각대	68	69	1	1.47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2	54	2	3.85
○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0.3	0.3	-	-
○ 전입금	15,693	15,801	108	0.69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7,736억원으로, 2024년도(1조 7,531억원) 대비 1.2%(205억원) 증가하였음.

【 2024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표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17,531	17,736	205	1.2
○ 일반지출	17,531	17,736	205	1.2

* 자료: 해양수산부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군장항(2단계) 사업은 1,164억 2,200만원으로 2024년(241억 6,500만원) 대비 381.8%(922억 5,700만원), 동해신항 사업은 999억 6,000만원으로 2024년(323억 6,100만원) 대비 209%(675억 9,900만원) 증가한 반면,

울산신항 사업은 557억 1,000만원으로 2024년(1,387억 6,200만원) 대비 59.9%(△830억 5,200만원),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이 479억 8,000만원으로 2024년(994억 3,600만원) 대비 514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음.

【 2025년도 교특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군장항(2단계)	39,442	24,165	116,422	92,257	381.8
- 동해신항	23,543	32,361	99,960	67,599	208.9
- 울산신항	136,360	138,762	55,710	△83,052	△59.9
- 재해안전항만구축	116,025	99,436	47,980	△51,456	△51.7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의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동 내역사업은 공사비 등을 연례적으로 전용·불용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포항영일만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제철산업 및 배후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는 대북방 물류거점 항만 육성과 국제·연안여객부두 및 친수공간 확충을 통해 관광기능 강화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2,000만원이 감액된 9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77].

【 2025년도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78]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	10,200	-	9,180	△1,020	△10.0
- 남방파제(2단계)	-	10,200	-	9,180	△1,020	△10.0

자료: 해양수산부

77)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78) 2023년 예산액 70억 중 49억 6,1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20 전액을 불용하였음.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철산업 및 배후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는 대북방 물류거점 항만을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신항에 방파제 6.7km, 일반부두 420m, 역무선부두 250m, 준설토 투기장 1,140m, 어항시설 1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33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992~2030년으로, 2015년 12월에 남방파제 1단계(1.3km)는 준공되었고,

현재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상황임.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개요 】

ㅇ (목적) 제철산업 및 배후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는 대북방 물류거점 항만 육성 ㅇ (규모) 방파제 6.7km, 일반부두 420m, 역무선부두 250m, 준설토 투기장 1,140m, 어항시설 1식 등 ㅇ (총사업비 / 사업기간) 1조 1,336억원 / '92년 ~ '30년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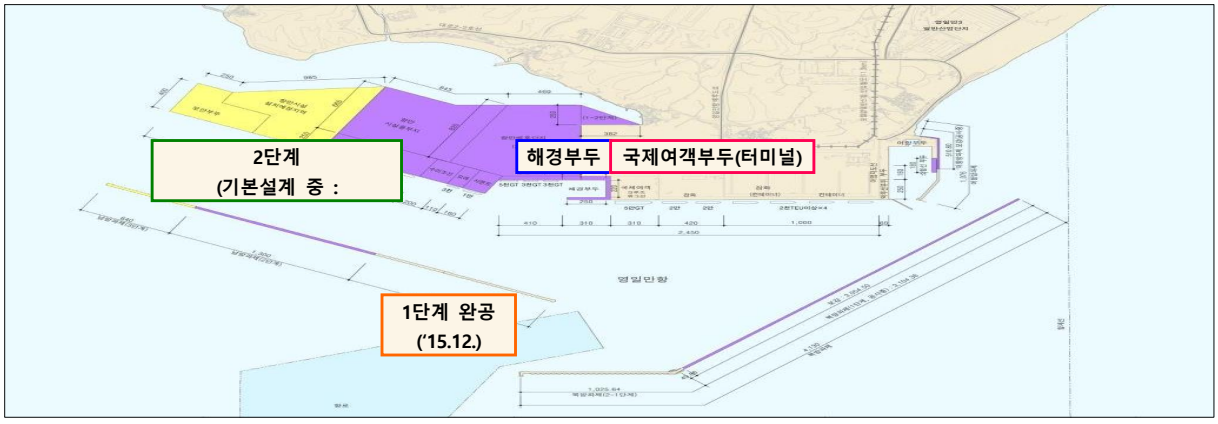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은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남방파제(2단계)를 축조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은 2007년 3월 기재부가 실시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79]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총사업비 1조 1,336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 1개만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남방파제 2단계 사업(내역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남방파제 2단계 내역사업 세부 산출내역	금액
○ 보상비 54백만원[90,000㎡ × 300원/㎡ × 2(지역계수)] ○ 공사비 8,026백만원[방파제 35m × 229.3백만원/m] ○ 감리비 1,000백만원[건설사업관리기술 10개월 × 83.3백만원/월] ○ 부대비 100백만원[8,026백만원 × 1.26%]	9,180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 「남방파제 2단계 내역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2단계) 기초자료조사용역을 2010년

79) 「국가재정법」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9조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료하였으나, 기초조사('10년) 이후 물가변동과 설계기준 개정 적용 등 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2.10.~'23.7.) 및 총사업비 협의('23.8.~'24.2.)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 소요되면서 2024년 5월에 일괄입찰(Turn-key) 공고가 실시되어 사업의 발주가 당초 대비 14개월 지연(발주 : 당초 '23.2월 → 변경 '24.5월) 되었음.[80]

【 「남방파제 2단계 사업(내역사업)」의 주요 추진경과 】

○ '07. 3.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결과 예타면제 대상사업 해당)
○ '09. 1.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남방파제 4.7km → 2.6km)
○ **'09. 4. ~ '10. 3.**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2단계) 기초자료조사용역**
○ **'11. 1.**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개발사업 간이타당성재조사(KDI) 완료**
○ '11. 7.	: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반영
○ '22. 6.~ '22. 8.	: 남방파제 2단계 기초조사 보완
○ **'22. 10. ~ '23. 7.**	: **남방파제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 **'23. 8. ~ '24. 2.**	: **남방파제 2단계 총사업비 협의**
○ **'24. 5.**	: **남방파제 2단계 사업 일괄입찰 공고(기본설계 심의 '24. 12.)**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2022년부터 추진된 동 내역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매년 공사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음.

80)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 턴키공사 발주를 통해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2025년 1월에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심의 및 일괄입찰 실착공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2022～2024년도 「남방파제 2단계 사업(내역사업)」의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100	-	-	100	-	-	-	-	100
2023	7,000	-	△4,961	2,039	-	-	-	-	2,039
2024	10,200	-	△4,900	5,300	-	-	-	-	-

자료: 해양수산부

- 먼저 2022년에는 공사비 등 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추진되면서 불용되었고, 2023년 예산은 공사비 등 7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2.10.～'23.07.)가 진행되면서 49억 6,100만원은 타 사업으로 전용(감액)하고 나머지 예산현액 20억 3,9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에도 전년대비 증액된 102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23.08.～'24.02.), 대형공사 입찰방법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49억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감액)하고, 9월말 기준으로 나머지 예산현액 53억원 중 집행액은 없는 상황임.

【 2022~2024년도 「남방파제 2단계 사업(내역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현황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2	공사비	50	-	50	-	50
	감리비	50	-	50	-	50
	소 계	100	-	100	-	100
2023	공사비	6,895	△4,961	1,934	-	1,934
	감리비	100	-	100	-	100
	부대비	5	-	5	-	5
	소 계	7,000	△4,961[81]	2,039	-	2,039
2024	공사비	10,100	△4,900	5,200	-	-
	감리비	95	-	95	-	-
	부대비	5	-	5	-	-
	소 계	10,200	△4,900[82]	5,300	-	-
합 계		17,300	△9,861	7,438	-	2,139

자료: 해양수산부

81) 2023년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5.)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420-03 (공사비)	1,000	포항영일만신항 (5050-322)	420-03 (공사비)	"포항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공사"의 '23년 예산 조기 소진 예정에 따라 연속시공(블록제작공)을 위한 공사비 확보
		420-03 (공사비)	1,000	울릉(사동)항 (5059-305)	420-03 (공사비)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공사"의 '23년 예산 조기 소진 예정에 따라 상부공 및 지반침식 응급복구공의 연속작업을 위한 공사비 필요
전용 ('23.10.)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420-03 (공사비)	200	일반항 (5059-302)	420-03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의 준공 소요 공사비 확보 필요
		420-03 (공사비)	161	일반항 (5059-302)	420-04	"후포항 정비(생활형SOC)사업" 및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의 감리비 조기 소진 및 물가변동 반영에 따른 감리비 확보
전용 ('23.11.)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420-03 (공사비)	252	포항영일만신항 (5050-322)	420-03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의 물가변동 반영 및 추가 물량 발생으로 공사비 추가 필요
			348	포항영일만신항 (5050-322)	420-04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안전 전담 감리 배치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 필요
			2,000	재해안전항만구축 (5063-302)	420-03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의 '23년 고압분사 물량 조기완료에 따라 기초보강공 연속시공을 위한 추가 공사비 확보

□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에 공사비, 보상비 등 예산안 9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지만, 현재까지 기본 실시설계 심의('24년 12월 예정) 및 일괄입찰에 따른 실착공 등의 착공 전 사전절차들이 남아 있어, 해당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 사업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2022년 사업 추진 당시 2023년 2월 공사 발주를 통해 2027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료 하였으나 현재 사업지연으로 완공 시점이 당초 계획된 일정('27년 상반기)보다 1년 지연('28년 상반기) 되었는바, 계획대로 '24년 12월에 기본설계 심의를 마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연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2)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2024년 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5.)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420-03 (공사비)	4,900	광양(여천)항 (5059-303)	420-03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의 일괄입찰 낙찰자 실시설계비, 공사보험료 등으로 공사비 추가 확보

【 「남방파제 2단계 사업(내역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

구 분	최초 사업 추진 당시 계획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23. 3. 기준)	실제 추진 현황 ('24. 9. 기준)
신항만기본계획	'09.01.	'09.01.	'09.01.
기초조사용역	'09.04.~'10.02.	'22.06.~'22.08. * 물가상승 및 개정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보완	'22.06.~'22.08. * 물가상승 및 개정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보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2.10.~'23.상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완료	'22.10.~'23.07.
총사업비 조정 협의	'22.10.~'22.12		'23.08~'24.02.
공사 발주	'22.12.	'23.상	'24.04.
공사 실착공	'23.하	'24.하	'25.상
완공	**'27.하**	**'28.상**	**'28.하**

자료: 해양수산부

2)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부지 확보 관련 법안심사 경과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3D 수리모형실험시설 추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강원도'에 건립을 위해서는 현재 행안위에 제출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반영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심사경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연내 함께 집행이 어려운 비목이므로 향후 사업경과에 따른 예산이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2025년에 완료될「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용역 결과 지연 시 전체예산이 불용되고 완공시기도 늦추어질 우려가 있는바 향후 추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연안침식 원인 규명,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등 방재연구와 해안·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83].

【 2025년도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84]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	-	-	2,002	2,002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83)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5063-304)
84) 2023년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57억 5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1,0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나) 검토의견

(1)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부지 확보 관련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방재연구 및 해안항만 건설기술 실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최초 사업 계획 시 2023년 9월 완공 목표였으나 2020년 사업 추진 이후 사업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재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24년 9월말 기준 완공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로 변경됨.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

구 분		최초 사업 추진 당시 계획 (타당성 조사 후)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 ('24. 4. 기준)	실제 추진 현황 ('24. 9. 기준)
(인·허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014.12.9.)	좌동	좌동
	교통영향평가	(2017. 1.6.)	좌동	좌동
	환경영향평가	(2017. 4.27.)	좌동	좌동
	재해영향평가	(2017.10.23.)	좌동	좌동
타당성조사		'18.5～'18.11.	좌동	좌동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 3. ～ '20. 11.	'20. 3.～'21.08.	좌동
사업부지 선정		강원 강릉시, 인천 영종도 투기장, 여수 세계박람회장 검토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내 부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등***
타당성 재조사		(500억 원 미만)	'21.10.～'23.02.(철회**)	'25. 1.～'25. 9.(추정)****
부지 무상사용		-	'23. 3.	'25. 12.
공사기간		'21.～'23.	'25.～'26.	'25.～'27.

자료: 해양수산부

* 강원도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지정 시 주요 인·허가사항 완료되어 동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인허가는 불필요

** 방재연구센터 운영계획 재검토, 연구시설 규모 조정, 총사업비 재산출 등 사업계획 재수립

*** 사업예정부지의 변동은 없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타 후보지 대상 검토

****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 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진행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집행실적도 저조하여 2020년·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후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는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99% 해당하는 57억 500만원을 광양항(3단계) 및 군장항(2단계)로 전용[85]하였고, 남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사업 추진일정 순연으로 불용하여 전액 미집행함. 또한, 2024년에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실시 후 철회로 인하여 예산이 미반영되었음.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2020년	1,600	1,600	-	1,600	875	427	298	54.7%
2021년	100	100	-	527	421	-	106	79.9%
2022년	11,812	1,012		1,012	-	-	1,012	0%
2023년	5,715	5,715	△5,705	10	-	-	10	0%
2024년	-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사업의 경과를 보면,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부지 확보 관련 이견 등으로 2018년 사업추진 이후 지연되었는데,

85) 2023년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30.)	계		5,705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5063-304)	420-03 (공사비)	4,421	광양항(3단계) (5050-316)	410-00 (보상비)	「토지보상법」 제76조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감정평가 결과(‘23.10.)를 반영한 보상비 반영
		420-01 (기본조사설계비)	1,081	군장항(2단계) (5058-314)	310-02 (배상금)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준공이후, 시공사에서 제기한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소송 판결금의 지연이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배상금(4,719백만원) 확보 필요
		420-03 (감리비)	203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강릉시 옥계지구에 ‘2차원 수로 실험동’을 포함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20. 3. ~ ’21. 8.) 과정에서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면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2021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였음.[86]

【 연안항만 방재연구 시설현황 】

전체 조감도(2D, 3D)

① 2D 수리모형실험시설	② 3D 수리모형실험시설

* 자료: 해양수산부

- 타당성재조사 시행 중 2023년 2월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0.23으로 낮아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수산부가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였음.

86) 당초 2차원 실험동만 구축하려 하였으나(총사업비 452억원) 설계과정에서 3차원 실험동도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총사업비 1,166억원)되어 총사업비가 714억원 증가하였음.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지연경위 】

- '18. 11.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강원대, 전남대, 관동대)
* 2차원 단면수로 포함된 시스템 구축(3차원 평면수조 제외), B/C = 1.006
- '19. 12.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예산(2020년도) 편성
* 총사업비 452억원, 사업기간: 2020년~2023년 (3차원 평면수조 제외)
- '20. 3. ~ '21. 8.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총사업비 1,162억원으로 증액, 사업기간: 2021년~2027년 (3차원 평면수조 포함)
- '21. 10. ~ '23. 2.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타당성재조사 실시 및 철회
* 2023년 2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B/C결과가 0.23에 불과하여 미리 철회 (3차원 평면수조 포함)
- '23. 3. : 강릉 옥계지구 무상 사용허가 신청(해수부 → 강원도)
- '23. 6. : 건물 축조시 기부채납 조건 등으로만 무상임대 가능하다는 회신(강원도 → 해수부)
- 현재 : 2차원 수리실험동 건립 우선 추진 등 사업계획 재검토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해양재해 증가추세에 따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의 구축이 시급하나, 동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실시 후 철회로 인하여 2024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부지확보도 어려워짐.

- 특히, 동 사업의 부지사용 관련 법률 검토 과정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강원도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20. 6.)'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체결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21. 11.)'[87]에 따르면, 강원도가 별도의 조건 없이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87)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20년 6월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기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음.

강원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건부 사용허가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2023년 6월 강원도에서는 영구시설물 축조시 부지 교환 또는 기부채납[88] 조건으로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음.

- 건립부지 관련 관계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려는 옥계지구 부지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 사용허가[89]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90]으로서 해양수산부는 이를 부지 선정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강원도'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

8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8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9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강원특별법」이라 함)에 조건부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마련 등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동 사업의 조건부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84호, 한기호·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91]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설명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내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9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84호)

제73조의21(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임대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해야 한다.

(2) 향후 추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025년 예산안에는 2차원 및 3차원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종전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차원 실험시설과 연구동을 우선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2021년에 기완료된 실시설계비 10억원, 공사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 등 총 2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3년까지	'24년 예산		'25년 요구	장래
			본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45,219	1,296	-	-	2,002	41,931
실시설계비(420-01)	1,723	-	-	-	1,000[92]	-573
공사비(420-03)	42,100	-	-	-	1,000	41,100
감리비(420-04)	1,300	-	-	-	-	1,300
시설부대비(420-05)	96	-	-	-	2	104

* 자료: 해양수산부

- 당초 완료된 실시설계비가 2025년에 10억으로 재편성된 것은 2025년에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통과 시 부지사용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타 후보지를 검토 후 결정[93]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실시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임.

- 또한, 2025년에 편성된 공사비 10억, 시설부대비 2백만원은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84호)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92) 부지 무상임대 불가 시 강원도 외 부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금액 반영으로 향후 총사업비 조정 계획임
93) 당초 '부지선정' 시 검토되었던 지역 중 하나인 인천 영종도 준설투기장 내에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 결정하게 되면, 해당 부지는 국가소유로서 부지마련 확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없음.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용역[94] 결과가 2025년에 종료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9개월 이내)[95]를 요청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연내에 강원도에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착공을 위한 것임.

- 2025년 20억 2백만원으로 편성된 동사업의 예산안은 ①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시 실시설계비 10억원 불용이 불가피하고, ② 해당 법안 미 통과시 공사비 10억 2백만원이 불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처럼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부지 확보 관련 법령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연내 함께 집행이 어려운 두 비목의 예산이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2025년에 완료될「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용역 결과 지연 시 타당성 재조사도 순차적으로 늦춰짐에 따라 연내에 동 사업의 착공이 어려워져 전체예산이 불용되고 완공시기도 늦추어질 우려가 있는바 향후 추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94)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5058-316) 세부사업의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내역사업)
- 총요역비/기간/내용 : 887백만원/'22~'25/'25년 용역비 291백만원

95)「총사업비 관리지침」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③ <u>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u>(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8억 4,500만원으로 2024년(38억 5,1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이 2,8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38억 1,700만원임.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38	38	0.06	△0.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34	0.28	△0.06	△0.2
○ 기타경상이전수입	38	38	-	-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18억원으로, 2024년도(633억원) 대비 2.3%(△15억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표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633	618	△15	△2.3
○ 일반지출	633	618	△15	△2.3

* 자료: 해양수산부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이 230억 5,000만원으로 2024년(226억 2,400만원) 대비 1.9%(4억 2,6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13,000	22,624	23,050	426	1.9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 실제 신조 수요 반영으로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중소·중견선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탄소 배출 저감 정도에 따라 보조비율을 차등지급하여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신조를 장려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종별 실제 선가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현실화된 선가와 실제 차등 지원비율을 반영하는 등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노후 선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선사의 소유 선박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보조율을 높여 중소·중견선사의 의사결정 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은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2,600만원(1.9%) 증액된 2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96].

【 2025년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13,000	22,624	22,624	23,050	426	1.9

자료: 해양수산부

96) 회계(기금)-세부사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6133-328)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국내선사가 외항화물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신조하는 경우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에 따라 신조선가의 10% 이내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사업내용	국적 외항선사가 친환경선박 신조 시 선가의 최대 10%까지 보조금 지원			
예산집행	년도	예산액(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23	13,000	13,000	-
	’24(9월말)	22,624	-	-
2024년 추진일정	• 공모(2.15-5.10., 7.11.-10.18.)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10월말-11월초 예정) • 보조금 지급(11-12월)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18년~2022년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선사에 대해 외항화물선의 친환경 고효율선박 전환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부터는 해당 기존 사업의 친환경선박 개념 요건을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정도에 따라 보조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을 하며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으로 신설하였음.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의 기 실시사업과의 비교 】」

구분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 사업 (2018년~2022년 실시 기존사업)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2023년 신규사업)
친환경선박의 개념	기존선박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박 (기존연료사용 연비제고) (예: 저마찰페인트, 저항최소 디자인, 선내발전기 사용 등)	탄소배출량이 저감되거나 없는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친환경 연료 사용) (예: LNG, 메탄올 등 저탄소배출 연료 사용 또는 전기배터리 등 무탄소배출 선박 등)
보조비율	탄소배출 저감정도와 무관	탄소배출 저감정도에 따라 보조비율 차등 지급(7~10%)
목표	노후선박 폐선·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18~22, 50척)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에 따른 외항선박('21~'30, 82척)의 친환경 전환 및 실현전략에 따른 국적선사 선복량 확대
규제강화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채택('18) ('50년까지 '08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국제해사기구 초기전략 개정 논의 ('23.上.) ('50년까지 '08년 대비 온실가스 100% 감축)
기존선박	폐선의무	국적선사 선복량 확대를 위해 폐선의무 없음

자료: 해양수산부

- 당초 동 사업(「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은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21~'30)에 따라 '30년까지 민간선박(외항선) 82척 전환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23.2)하여 '30년까지 외항선 친환경 전환 목표를 118척(36척↑)으로 상향하였고, 2023년에는 그 중 12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였음.

□ 그런데, 2023년에 신규편성된 동 사업의 2023년·2024년·2025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2023년의 경우 예산안 산출시 차등보조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조율을 8%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된 보조율은 탄소배출 저감정도에 따른 보조비율 차등지급에 따라 각각 1등급 1%(5척), 2등급 0.6%(3척), 2등급 0.2%(3척), 2등급(0.1%)로 총 12척을 선정·집행하였음.

- 이처럼 편성 및 집행 보조율의 차이가 발생한 데에는 편성된 선가(컨테이너선 440억)와 집행 선가(컨테이너선 1,616억원)와의 차이가 크고, 편성 당시 보조율을 일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보조비율을 차등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 참고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3년 보조금 지급액 결정 시 해당 사업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 지침에 따라 예비 친환경 등급 및 건조계약 체결 연도에 따른 차등을 두되, 보조율이 아닌 '보조금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97]하였는 바, 같은 지원금에도 선가에 따른 보조율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 또한,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안)을 보면, 선가가 높은 자동차운반선 2척과 벌크선 2척이 지원대상으로 편성되면서, 2023년·2024년 보조율 8%가 보조율 2.8%로 하향조정하는 등 기준 보조율 적용이 일관성 없게 이루어지고 있음.

97) '23년 계약 체결, 1등급: 15.95억원 / '22년 계약 체결, 2등급: 7.18억원 지급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편성내역(안)	집행내역
2023년	(컨테이너선 1척 × 선가 440억원 × 보조율 8%)+ (석유·케미컬겸용 3척 ×선가 240억원 × 보조율 8%)+ (케미컬운반선 3척×선가 158억원 × 보조율 8%)	(컨테이너선 5척×선가 1,616억원×보조율 1%)+ (자동차운반선 3척×선가 1,271억원×보조율 0.6%)+ (LNG운반선 4척×선가 2,816억원×보조율 0.2%)
2024년 9월	(컨테이너선 3척 × 선가 466억원×보조율 8%)+ (석유·케미컬겸용 3척 × 선가 254억원×보조율 8%)+ (케미컬운반선 4척 × 선가 158억원×보조율 8%)	현재 공모 진행 중(7.11-10.18)이고,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11월초 예정
2025년	(컨테이너선 6척×선가 466억원 × 보조율 2.8%)+ (벌크선 2척×선가 864억원 ×보조율 2.8%)+ (석유·케미컬겸용 2척 ×선가 254억원 ×보조율 2.8%)+ (자동차운반선 2척×선가 1,600억원×보조율 2.8%)	

자료: 해양수산부

【 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번	선종	선박 규모	선가(USD) (A)	친환경 예비 인증등급	보조금 (B)	보조율 (B/A)	보조율 차등 지급 사유
1	컨테이너선	9천 TEU	124,290,000	1	1,595백만원	1.0%	친환경 예비인증 등급 (1등급) 및 건조연도 (2023년) 고려
2	컨테이너선	9천 TEU	124,290,000	1	1,595백만원	1.0%	
3	컨테이너선	9천 TEU	124,290,000	1	1,595백만원	1.0%	
4	컨테이너선	9천 TEU	124,290,000	1	1,595백만원	1.0%	
5	컨테이너선	9천 TEU	124,290,000	1	1,595백만원	1.0%	
6	자동차운반선	2만 DWT	97,800,000	2	718백만원	0.6%	친환경 예비인증 등급 (2등급) 및 건조연도 (2022년) 고려
7	자동차운반선	2만 DWT	97,800,000	2	718백만원	0.6%	
8	자동차운반선	2만 DWT	97,800,000	2	718백만원	0.6%	
9	LNG운반선	9.3만 DWT	214,600,157	2	718백만원	0.3%	
10	LNG운반선	9.3만 DWT	212,750,000	2	718백만원	0.3%	
11	LNG운반선	9.2만 DWT	213,730,616	2	718백만원	0.3%	
12	LNG운반선	8.1만 DWT	225,400,400	2	718백만원	0.2%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예산상 편성된 선가와 실제 선가와의 차이로 인해 편성 보조율(8%)과 실제 집행 보조율(1등급 1%)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당초 탄소배출 저감 정도에 따라 보조비율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신조를 장려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이 기존 사업보다 친환경선박의 개념이 강화되어서 탄소배출 저감 정도에 따라 보조비율 차등 지급하기로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 팬데믹, 국지적 이슈 등으로 글로벌선사의 선박 발주 증가 및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매년 친환경선의 선가가 높아진다는 점[98]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종별 실제 선가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현실화된 선가를 반영하는 등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실제 집행가능한 사업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국내 외항선사의 노후 선박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동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선령 25년을 초과하는 노후 선박은 LNG 운반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선종별로 총 90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90척의 노후 선박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약 89%에 이르는 80척의 선박이 대형 선사가 아닌 중소·중견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98)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4년 6월 신조선가지수(187.23p)는 '20년 평균(127p) 대비 47.4% 상승하였으며, 생산력 한계로 재래선 대비 친환경선박 선가 급등하고 있다는 설명임.

대형선사에 비해 낮은 신용도와 높은 부채 비율 등으로 선박금융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중소·중견선사가 노후된 외항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99].

【국내 외항선사의 노후 선박 및 중소·중견선사 소유 현황】

선종	LNG 운반선	LPG 운반선	견인용 예선	광석 운반선	기타선	기타 예선	냉동 냉장선	산물선(벌크선)	석유제품/케미칼 겸용	석유제품 운반선	석탄 운반선	세미(혼재) 컨테이너선	예선	일반 화물선	자동차 운반선	케미칼 운반선	풀컨테이너선	합계
척수	8	1	1		1	-	25	13	7	-	1	-	-	8	10	-	15	90
중소 중견 선사 소유 척수	4	1	-		1	-	25	13	7	-	1	-	-	8	7	-	13	80

※ 자료 : 해양수산부, 선령 25년 이상 기준, PORT-MIS(2024.10.14. 작성기준)

□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전체 노후 선박의 8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 마련 없이 동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99) 중대형선사는 신조건조 비율이 전체 소유 선박의 81%(중고선 도입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본 부족 및 낮은 신용도로 선박금융 및 자기 자본 조달이 어려운 중소선사는 신조건조 비율이 39%에 불과(중고선 도입 58%)함.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중소·중견선사 소유의 노후 외항 선박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0억 2,100만원으로, 2024년(77억 3,700만원) 대비 35.1%(△27억 1,600만원) 감소하였음. 주된 감소 사유는 지역자율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감액(△27억 800만원)되었기 때문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77.4	50.2	△27.2	△35.1
지역자율계정	69	42	△27	△39.1
○ 기타재산수입	4.7	2.9	△1.8	△38.3
○ 기타경상이전수입	64.4	39.2	△25.2	△39.1
지역지원계정	7.8	7.9	0.1	1.3
○ 기타재산수입	0.8	0.7	△0.1	△12.5
○ 기타경상이전수입	7.0	7.2	0.2	2.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5	0.3	△0.2	△40.0
○ 기타경상이전수입	0.5	0.3	△0.2	△40.0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392억원으로, 2024년도(5,038억원) 대비 26.9%(1,354억원)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표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5,038	6,392	1,354	26.9
○ 일반지출	5,038	6,392	1,354	26.9

* 자료: 해양수산부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어촌신활력사업은 2,257억 3,400만원으로 2024년(961억 8,000만원) 대비 134.7%(1,295억 5,400만원) 증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360억원으로 신규 반영되었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어촌신활력	42,500	96,180	225,734	129,554	134.7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	36,000	순증	신규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 미흡,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전북·경북)에 대해 지자체의 사업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2025년 편성 예산을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주도형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전남), 수산식품클러스터(부산) 및 스마트가공종합단지(전북, 경북)를 조성하여 권역별로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8억 6,300만원(85.2%)이 증액된 279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100)]

【 2025년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100	15,098	10,568	27,961	12,863	85.2

100) 회계(기금)-세부사업: 지특회계-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2835-301)

(나) 검토의견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육성 등을 위해 권역별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및 수산식품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수산가공인프라와 R&D 및 수출지원 기능을 결합한 종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① 전남권 수산식품수출단지, ② 부산권 수산식품클러스터, ③ 스마트가공종합단지(전북, 경북)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별로 설계 및 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자본보조비(국비보조율 70%) 279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별 보조금액, 보조율 및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2025예산안)	보조율	세부 산출내역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전남도	18,339	70	연차사업비(6년차) 총사업비 106,418 × 70%(국비) × 24.6%(공정율) = 18,339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부산시	2,000	70	연차사업비(4년차) 총사업비 70,764×70%(국비)×4.0%(공정율) = 2,000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전북도, 경북도	7,622	70	(전북) 총사업비 38,339 × 70%(국비) × 19.5%(공정율) = 5,250 (경북) 총사업비 38,000 × 70%(국비) × 8.9%(공정율) = 2,372
-전북		5,250	70	
-경북		2,372	70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중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전북, 경북)은 전북과 경북에 전통 수산가공업을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형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스마트가공시설, 임대형 가공공장, 스마트 R&D센터, 협력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등을 건립하는 사업임.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사업개요(전북, 경북)】

(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전북)</th></tr>
<tr><td>건립위치</td><td colspan="7">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산46번지 일원(새만금산업단지 2공구)</td></tr>
<tr><td>사업주체</td><td colspan="7">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7">2022년~2026년</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7">부지 33,058㎡, 시설면적 11,300㎡ (꽃새우, 메기, 박대 등 특화)
스마트가공시설, 임대형 가공공장, 스마트R&D센터, 협력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td></tr>
<tr><td rowspan="3">총사업비</td><td colspan="7">433억원(국비 268억, 지방비 115억(토지보상비 50억원 제외)</td></tr>
<tr><td>연도</td><td>2022</td><td>2023</td><td>2024</td><td>2025</td><td>2026</td><td>총 계</td></tr>
<tr><td>국비</td><td>2,000</td><td>6,564</td><td>-</td><td>7,500</td><td>27,275</td><td>43,339</td></tr>
<tr><td rowspan="4">예산집행
(단위: 백만원)</td><td colspan="2">연도</td><td colspan="2">예산액(예산현액)</td><td colspan="3">집행액(실집행액)</td></tr>
<tr><td colspan="2">2022</td><td colspan="2">1400</td><td colspan="3">1013</td></tr>
<tr><td colspan="2">2023</td><td colspan="2">1482</td><td colspan="3">0</td></tr>
<tr><td colspan="2">2024.8월</td><td colspan="2">1482 (2023년 이월액)</td><td colspan="3">461</td></tr>
<tr><td>건립일정</td><td colspan="7">
<table>
<tr><th colspan="2">당초계획</th><th colspan="2">실제(공사완료기준)</th><th>비 고</th></tr>
<tr><td colspan="2">2022.3</td><td>공모선정</td><td colspan="2">2022.3</td><td>공모선정</td><td></td></tr>
<tr><td colspan="2">2022.5</td><td>기본계획 수립</td><td colspan="2">2022.9</td><td>기본계획 수립</td><td>유관기관 등 의견 반영</td></tr>
<tr><td rowspan="3">기본실시설계</td><td>2023. 5</td><td>계획설계</td><td rowspan="3">기본실시설계</td><td>2023. 12.</td><td>계획설계</td><td>조달청 검토</td></tr>
<tr><td>2023. 11.</td><td>중간설계</td><td>2024. 4.</td><td>중간설계</td><td>조달청 검토, 기재부 협의</td></tr>
<tr><td>2025. 2.</td><td>실시설계</td><td>2024. 11. 예정</td><td>실시설계</td><td>조달청 검토, 기재부 협의</td></tr>
<tr><td colspan="2">2023. 12.</td><td>토지 보상</td><td colspan="2">2023. 10.</td><td>토지 보상</td><td>부지매입완료</td></tr>
<tr><td colspan="2">2024. 4.</td><td>공사착공</td><td colspan="2">2025. 3. 예정</td><td>공사착공</td><td>공사기간 18개월</td></tr>
<tr><td colspan="2">2025. 11.</td><td>완공</td><td colspan="2">2026. 12 예정</td><td>완공</td><td></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경북)</th></tr>
<tr><td>건립위치</td><td colspan="6">경상북도 영덕군 제2로하스 농공단지</td></tr>
<tr><td>사업주체</td><td colspan="6">경상북도(영덕군)</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23년～2026년</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6">부지 33,058㎡, 시설면적 11,300㎡, (붉은대게, 오징어, 가자미 특화)
스마트가공시설, 임대형 가공공장, 스마트R&D센터, 협력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td></tr>
<tr><td rowspan="3">총사업비</td><td colspan="6">392억원(국비 266억, 지방비 114억)</td></tr>
<tr><td>연도</td><td>2023</td><td>2024</td><td>2025</td><td>2026</td><td>총 계</td></tr>
<tr><td>국비</td><td>1,393</td><td>3,929</td><td>16,889</td><td>17,000</td><td>39,211</td></tr>
<tr><td rowspan="3">예산집행
(단위: 백만원)</td><td colspan="2">연도</td><td colspan="2">예산액(예산현액)</td><td colspan="2">집행액(실집행액)</td></tr>
<tr><td colspan="2">2023</td><td colspan="2">1,000</td><td colspan="2">0</td></tr>
<tr><td colspan="2">2024.8월</td><td colspan="2">1,512</td><td colspan="2">15</td></tr>
<tr><td>건립일정</td><td colspan="6">
<table>
<tr><th colspan="2">당초계획</th><th colspan="2">실제(공사완료기준)</th><th colspan="2">비 고</th></tr>
<tr><td colspan="2">2023.4</td><td>공모선정</td><td colspan="2">2023.4</td><td>공모선정</td><td></td></tr>
<tr><td colspan="2">2023.5</td><td>기본계획 수립</td><td colspan="2">2023.9</td><td>기본계획 수립</td><td>가공라인 세부공정 내용 보완 등</td></tr>
<tr><td rowspan="3">기본실시설계</td><td>2024. 2</td><td>계획설계</td><td rowspan="3">기본실시설계</td><td>2024. 11월 예정</td><td>계획설계</td><td>조달청 검토</td></tr>
<tr><td>2024. 6.</td><td>중간설계</td><td>2025. 4월 예정</td><td>중간설계</td><td>조달청 검토, 기재부 협의</td></tr>
<tr><td>2025. 2.</td><td>실시설계</td><td>2025. 11월 예정</td><td>실시설계</td><td>조달청 검토, 기재부 협의</td></tr>
<tr><td colspan="2">2023. 12.</td><td>토지 보상</td><td colspan="2">2024. 3</td><td>토지 보상</td><td>부지매입완료</td></tr>
<tr><td colspan="2">2025. 3.</td><td>공사착공</td><td colspan="2">2025.12월 예정</td><td>공사착공</td><td></td></tr>
<tr><td colspan="2">2026. 12.</td><td>완공</td><td colspan="2">2027 예정</td><td>완공</td><td></td></tr>
</table>
</td></tr>
</table>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사업지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 14억 8,200만원 전액을 미집행 이월하였고, 2024년의 경우 2023년도 이월 예산(이월액 1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8월 말 기준 집행액이 7,400만원임.

경북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의 경우에도 2023년 예산현액 10억원 전액을 이월하였고, 2024년의 경우 8월 말까지 예산현액 15억 1,2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0.9%임.

【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사업지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역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전북	2022	1,400	1,400	1,400	1,400	-	1,400	1,013	387	-	72.4
	2023	1,095	1,095	1,095	1,095	387	1,482	0	1,482	-	0
	2024.8	-	-	-	-	1,482	1,482	74	-	-	
	2025	5,250	-	-	-	-	-	-	-	-	-
경북	2023	1,000	1,000	1,000	1,000	-	1,000	0	1,000	-	-
	2024.8	1,000	1,000	1,000	512	1,000	1,512	15	-	-	-
	2025	2,372	-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우선 전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설계공모가 지연되었고, 이후 조달청의 설계업체 공모·선정, 건설자문위원회 심의, 부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2024년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101], 2024년 10월 현재 중간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01) 2024년에는 당해연도 예산반영 없이 2023년도 예산 이월액(14억 8,200만원)을 집행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경북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2023.4월) 후 사업대상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지반조사 용역, 공공건축사업심의 등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4년 연내 설계용역 공모를 진행하여 2025년 하반기(2025.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2025.12월)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임.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해지면서, 전북의 경우 공사착공이 당초 계획한 2024년 4월에서 2025년 3월로, 완공예정일도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0월로 1년 가량 연기되었고, 경북의 경우에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전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설계 용역	계획설계	’23. 2 ~ 5	’23. 8 ~ 12	
	중간설계	’23. 6 ~ 11	’24. 1 ~ ‘24. 4	
	실시설계	’23. 12 ~ ‘24. 2	’24. 5 ~ ‘25. 2	
토지 보상		’23. 1~12	’23. 9~10	부지매입 완료(12월)
공사 착공		’24. 4 ~’25. 10	’25. 3 ~ 26. ’9	공사기간 18개월
완공		’25. 11	‘26. 1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동 사업들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수립지연으로 인한 설계 지연이나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필수 사전행정절차의 지연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미흡했던 점, 사전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전북 및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에 대해서는 2025년 공사착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각 52억 5,000만원, 23억 7,200만원의 지자체 보조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의 경우 2024년 10월 현재 중간설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최종 설계결과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착공 및 공사수행에 투입되는 5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의 경우 2024년 10월 현재 설계공모절차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연말에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인바,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과정에서 거치는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필수 행정절차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의 사업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해양수산부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하여 집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의 사업여건 및 수요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 및 재활용 촉진 목적 등을 고려해 육상처리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은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폐류에서 발생하는 패각의 자원화 및 해양배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178억원(51.0%)이 감액된 17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102].

【 2025년도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A)	집행		(B-A)	%
친환경 어구보급	53,952	34,870	34,870	17,070	17,800	△51
-인증부표 보급	42,482	30,000	30,000	15,000	△15,000	△50
-패각친환경처리	2,070	2,070	2,070	2,070	-	-

102) 회계(기금)-세부사업: 지특회계-친환경어구 보급(3150-310)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및 어장환경 훼손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성능이 개량된 인증부표[103]로 교체하기로 하고, 어민들의 인증부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굴 박신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패각(굴 껍데기 등 폐류의 껍데기 부산물을 뜻함)이 어촌에 방치되어 연안 오염을 초래하거나 수산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패각친환경처리 내역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9년부터 패각의 재활용을, 2019년부터 패각의 해양배출을 동 내역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인증부표 보급 사업개요 】

구분	인증부표 보급
사업배경	○ 스티로폼 부표의 어장환경 훼손에 따라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성능이 개선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2015년 ~ 현재)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1호·제15호 ○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내용 및 보급현황	○ **(인증부표 보급)**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 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103) 기존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스러지는 발포폴리스티렌(EPS)를 사용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경유해성·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부표를 지원하는 것임.

구분	인증부표 보급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표(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인증부표 교체로 회수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지원('23년에 한정해 1회 편성, 국비 30%, 지방비 70%) ○ **(보급현황)** 김, 미역, 굴 등의 양식장에 55백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며, '23년 기준 인증부표 누적 보급률은 55.9%(30.7백만 개) * 양식장 부표(백만개): 김 22(40.1%), 미역 8, 굴 7(12.9%), 전복 7, 기타 11

자료: 해양수산부

【 패각친환경처리 사업개요 】

구분	패각친환경처리
사업배경	○ 매년 30만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패각이 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및 주민 민원 발생
사업개요	○ **(사업내용)** 양식 패류 알맹이 생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자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 ○ **(지원주체/보조율)** 지자체(경남, 전남)/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20% ○ **(사업기간/ '25년 예산)** '09년 ~ 계속/국비 20.7억원 * 연도별 예산 (국비, 억원) : ('20) 20.7 → ('21) 20.7 → ('22) 20.7 → ('23) 20.7 → ('24) 20.7 → ('25 요구액) 20.7
패각 처리절차 및 지원내역	○ **(처리절차)** 박신장(발생) → 폐기물수집운반업체 → 재활용업체(처리) ○ **(지원내역)** 어업인(박신장) 등 에게 육상 3만원/톤, 해양 5.9만원/톤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동 세부사업의 경우 2024년까지는 농특회계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균형 적합사업으로 분류되어 지특회계로 이관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인증부표 보급과 패각친환경 처리에 필요한 예산액 178억원이 편성되었음.

(1) 인증부표 보급사업 집행 제고 필요

□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539억 5,200만원에서 2024년 348억 7,000만원, 2025년 178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선 내역사업이던 '생분해어구보급' 사업이 2024년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이관되고 굴껍데기자원화 시설구축사업이 2024년도에 종료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또한, 추가적으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실시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굴·홍합 등 양식품종의 작황을 고려한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2024년(8월 말)까지 주요 내역사업(인증부표 보급, 패각친환경처리)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예산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우선, 보조사업(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으로 추진되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단계에서의 실집행률이 2020년 90.6%에서 2023년 59.2%로 하락하였고, 2024년의 경우 9월 말까지 집행액이 약 206억원으로 보조금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1.4%로 나타남[104)]

104) 2024년 교부액(전년도 이월액 제외) 300억원 중 집행액은 78억원으로 해당 집행률은 26.1%임.

【 인증부표 보급 사업 집행 현황(2020~2024년) 】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0	7,000	7,000	7,000	247	7,247	6,565	489	193	90.6
2021	20,000	20,000	20,000	418	20,418	16,603	2,450	1,365	81.3
2022	40,000	40,000	40,000	2,450	42,450	33,918	6,907	1,625	79.9
2023	42,482	42,482	42,482	6,875	49,357	29,212	19,694	451	59.2
2024.8	30,000	30,000	30,000	19,694	49,694	20,600	-	-	41.4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① 2023년 양식굴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시기 연기로 인해 부표 교체시기가 늦어져 인증부표를 포함한 신규 부표의 설치시기가 지연되었고, 같은 해 양식홍합 등 양식작황 부진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로 자부담(30%) 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아져 사업 연기가 다수 발생한 점, ② 2024년의 경우 이상수온(고수온) 지속에 따른 양식생물 대량폐사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③ 2022년 이후 국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것에 비해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일부 지연된 점 등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설명한 바 있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액의 경우 2024년(300억원) 대비 50% 감액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다만,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수온 현상이 지속되어 양식업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했던 출하시기 연기, 어업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5년 예산 집행 시 인증부표 보급 및 예산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인증부표 보급 현황】

(단위: 백만원, 천 개,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국비	400	3,480	5,200	3,500	3,500	7,000	20,000	40,000	40,000	30,000
보급량 (누적)	1,416 (10,723)	1,853 (12,576)	1,045 (13,621)	1,089 (14,710)	767 (15,477)	1,873 (17,351)	3,529 (20,879)	5,143 (26,022)	4,706 (30,728)	2,954 (33,682)
누적 보급률	19.5	22.9	24.8	26.7	28.1	31.5	38.0	47.3	55.9	61.2

자료: 해양수산부

□ 또한, 현재 보급되는 인증부표의 경우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감소시킨 제품이나, 역시 현재 판매되는 인증부표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확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기존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규 소재 개발 등 플라스틱 어구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105].

105)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부표 개발 및 실증화 등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임(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과제)

【인증부표 및 스티로폼 부표 비교】

구분		제품사진	제품 정보
인증 부표	발포		· **(생산방식)** 폴리프로필렌 발포성형(EPP) · **(용도)** 김 양식용 및 가두리 · 뗏목용 · **(평균가격)** 40L 기준 10,000원/개 · **(보급)** '18~
			· **(생산방식)** 폴리에틸렌 발포성형(EPE) · **(용도)** 김 양식용 및 가두리 · 뗏목용 · **(평균가격)** 40L 기준 9,000원~17,000원/개 · **(보급)** '18~
			· **(생산방식)** 발포성형(EPP, EPE) + 피복(PP, PE) · **(용도)** 수하식 패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 **(평균가격)** 64L 기준 28,000원/개 · **(보급)** '20~
	비발포		· **(생산방식)** 고강도 합성수지(PP, PE 등) 공기주입 밀폐형 · **(용도)** 모든 양식 및 가두리 뗏목용 · **(평균가격)** 64L 기준 20,000원~40,000원/개 · **(보급)** '15~
			· **(생산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서 제작 · **(용도)** 모든 양식 및 가두리 · 뗏목용 · **(평균가격)** 64L 기준 25,000원~30,000원/개 · **(보급)** '17~
			· **(생산방식)** PET병 여러개를 중첩하여 제작 · **(용도)** 모든 양식 및 가두리 · 뗏목용 · **(평균가격)** 64L 기준 29,000원~49,000원/개 · **(보급)** '18~

사업기간	2022. 4월 ~ 2026. 12월	총사업비	73.23억원 (국비 72.85억)
수행기관	(주관) 한국세라믹기술원 (공동) KCL, 동덕여자대학교, ㈜복합재자동화기술		
연구내용	세라믹 계열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친환경 부표를 개발하고, 부표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속 시험 및 등급화 기술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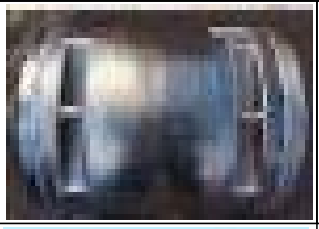	· (생산방식) 알루미늄 소재 · (용도) 모든 양식 및 가두리 · 뗏목용 · (평균가격) 64L 기준 30,000원~63,000원/개 · (보급) '20~
스티로폼 부표			· (생산방식) 폴리스티렌 발포성형(EPS) · (용도) 모든 양식 및 가두리 · 뗏목용 · (평균가격) 2,500~10,000원/개

자료: 해양수산부

(2)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의 집행 제고 필요

□ 다음으로, **패각친환경처리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2025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 편성), 실집행률은 2020년 77.3%에서 2023년 44.0%, 2024년 8월 말에는 30.5%로 낮아져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월액도 2020년 3억 9,000만원에서 2023년 11억 1,600만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패각친환경 처리사업 집행 현황(2020~2024년) 】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0	2,070	2,070	2,070	38	2,108	1,638	390	80	77.3
2021	2,070	2,070	2,070	390	2,460	1,950	340	170	75.4
2022	2,070	2,070	2,070	340	2,410	1,635	775	0	62.6
2023	2,070	2,070	2,070	775	2,845	1,521	1,116	43	44.0
2024.8	2,070	2,070	2,070	1,116	3,186	971	-	-	30.5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은 집행 부진 및 이월액 확대의 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패각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굴 패각(연간 27만 톤)이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에 발생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고[10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2.7월 시행)

106) 매년 1월부터 3월에 발생하는 굴 패각은 전년도 예산으로부터 이월된 금액으로 처리하는 체계임.

에 따른 굴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 사업(2023년～)[107]을 통해 패각 분쇄기가 보급되면서, 굴 박신장 등의 패각 반출 빈도가 줄어들어 패각을 더 오래 보관함에 따라 연간 처리량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다만, 현재 굴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집행이 아직 저조한 상황[108]임을 고려할 때 향후 동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굴박신장의 굴 패각 반출 횟수가 추가로 감소할 소지가 있어 사업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굴 패각이 동절기에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유임에도 매년 실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사업수요가 편성된 예산 대비 부족했던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계의 경영상황 등 사업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및 그에 따른 사업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7) 농특회계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140-355)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추진되는 '굴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뜻함.

108)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현황(2023년)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예산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전라남도	36	34	-	2	94.4
경상남도	1,509	601	908	-	39.8
'합계	1,545	635	908	3	**41.1**

자료: 해양수산부

□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굴 패각을 재활용업체에 보내서 처리하는 '육상 처리' 방식과 해양에 투기하는 '해상 처리'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육상 처리 단가는 3만원/톤으로, 해상 처리 단가는 5.9만원/톤으로 산정되어 있고 물량의 경우 해상 처리가 13.8만톤, 육상 처리가 7.3만톤으로 산정되어 있음.

【 패각친환경 처리사업 예산안 산출내역(2022~2025년) 】

(단위: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	2024예산	2025예산(안)
2,070 (해상)13.8만톤×59천원×20% (육상)7.3만톤×30천원×20%	2,070 (해상)13.8만톤×59천원×20% (육상)7.3만톤×30천원×20%	2,070 (해상)13.8만톤×59천원×20% (육상)7.3만톤×30천원×20%	2,070 (해상)13.8만톤×59천원×20% (육상)7.3만톤×30천원×20%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관련, 해상 처리 방식은 패각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므로 해양쓰레기의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제1항[109]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방법인 육상처리와 비교할 때 패각 재활용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비 절감 여지 및 재활용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시 육상 처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생략)

3)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대상인 특수목적선의 설계·건조 및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의 관리강화가 필요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One-stop 해상처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00만원(11.9%) 감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음[110].

【2025년도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10.15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	2,135	227	190.4	200	△27	△11.9

* 자료: 해양수산부

110)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특회계-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4132-313)

(나) 검토의견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2~2026년이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100%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사업의 업무 및 재원 분담 체계를 보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선상 one-stop 처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업무(총사업비 105억원)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수소 기반 친환경 선박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업무(총사업비 173억원)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특수목적선을 설계·건조하는 업무를 담당함.

【 업무 및 재원 분담 체계 】

구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업무	해양쓰레기 선상 one-stop 처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LNG-수소 기반 친환경 선박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특수목적선 설계·건조, 시범운항
재원분담	105억원	173억원	100억원* *울산, 부산, 경남 공동 매칭
※ 계획된 총사업비는 총 469억원(해수부 105, 산업부 173, 지방비 100, 민자 91억원)			

□ 그런데 이 사업의 해양수산부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도 실집행률 81.2%, 2023년도는 실집행률 58%로 당해연도에 출연(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된 예산의 42%가 2024년도로 이월

되어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주요 연구개발 내용이 변경되고, 예산 규모 조정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핵심3종 모듈[111] 제작 및 선박건조 계약 발주가 지연된 것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 플라즈마 재질 기반 해양쓰레기 열분해 기술검증 및 선박 안전성 이슈 제기로 플라즈마에서 일반열분해로 연구개발 내용이 변경되었고, 선박건조 비용 증가로 건조 규모를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핵심모듈 재설계가 필요해짐.

- 당초 업무 분담체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해양쓰레기 선상 열분해 처리 시스템, 선박용 LNG-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여 해상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원자재가격 상승 등 선박건조 비용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예정된 선박 건조 계약 발주 등 사업이 지연됨.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사업 실집행 현황 】

구분	집행액(집행률)	실집행액(실집행률)
2022	1,837,000,000원(100%)	1,491,446,029원(81.19%)
2023	2,135,000,000원(100%)	1,240,666,879원(58%)
		1,777,416,160(83%) *'23년 이월액 포함 누적 실집행률(10.15기준)
2024(24.10.15 기준)	227,000,000원(100%)	190,400,000원(83%)

* 자료: 해양수산부

111) 핵심모듈: 동결파쇄, 탈염 전기화학처리 시스템, 열분해 시스템

□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처리 모듈 상세설계와 해양쓰레기 처리 모듈 통합 시스템 요소 제작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함. 그러나, 사업 시작 이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약 105억원의 예산을 기 투입한 점을 고려할 때, 개발된 기술의 활용 전제가 되는 특수목적선 설계·건조사업의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여 관리하는 등 사업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연도별 재원투입 규모 】

구분	2022	2023	2024
총 재원투입	40.17억원	49.18억원	16.05억원
해양수산부	18.37억원	21.55억원	2.2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1.8억원	27.63억원	13.78억원

* 자료: 해양수산부

6. 수산발전기금

가. 개 요

□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2024년 8,434억원 대비 230억원(△2.7%) 감소한 8,204억원임.

□ 2025년 수산발전기금은 법정부담금 685억원과 융자원리금 회수 4,842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6,890억원, 정부내부수입으로 1,000억원, 여유자금회수 314억원을 통해 총 8,204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직접피해지원, 수산자원회복, 수산물유통자금지원 등 사업비로 7,956억원, 기금운영비로 7억원을 각각 지출하고, 공자기금에 51억원을 예수이자상환으로, 197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5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6,265	6,265	6,890	625	10.0
	○ 법정부담금	600	600	685	85	14.0
	○ 재고자산(수산물)매각대금	1,121	1,121	1,178	57	5.0
	○ 면허료및수수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50	40	△10	△20.0
	○ 융자원금 회수	4,346	4,346	4,842	494	11.4
	○ 기타경상수입·이자수입 등	147	147	146	△1	△0.6
	2.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등)	1,000	1,000	1,000	-	-
	3. 여유자금회수	1,169	1,169	314	△855	△73.2
합 계		8,434	8,434	8,204	△230	△2.7
지출	1. 일반지출	8,100	8,100	7,956	△144	△1.8
	○ 사업비	8,093	8,093	7,949	△144	△1.8
	- 경상사업	3,285	3,285	2,676	△609	△18.5
	- 융자사업	4,808	4,808	5,273	465	9.7
	○ 기금운영비	7	7	7	-	-
	2. 정부내부지출	20	20	51	31	154.1
	3. 공자기금 예탁	-	-	-	-	-
	4. 여유자금운용	314	314	197	△117	△37.2

*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내역사업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공고, 착공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 보전·관리,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8억 8,200만원(77.3%) 감액된 5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112].

【 2025년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10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10,831	23,142		5,260	△17,882	△77.3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1,357	16,082		1,000	△15,082	△93.8

* 자료: 해양수산부

112) 회계(기금)-세부사업 : 수산발전기금-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1065-304)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서식지 특성 분석, 대체서식지 조성, 인공증식·복원기술 및 현지 방사 기법 개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산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10억원	▪ 공사비= 960백만원 ▪ 감리비=30백만원 ▪ 시설부대비=10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개요 】

구 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사업목적	해양생물 종복원·증식 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해양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주요기능	① 법정관리 해양생물 관리 정책 수립 지원 ② 해양생물 복원·증식 연구 ③ 해양동물 구조·치료·재활·방류 총괄 관리 ④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증진
건립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155-6 외 6필지
사업규모	연면적 9,586㎡ / 지하1층, 지상2층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26. 개관 및 운영 예정)
총사업비	총 439억 3,500만원(국비 100%)

조직도	

* 1차 총사업비 조정 결과 374억→439억원('24.3,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 자료 : 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건립 이후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지원, 해양생물 보전·복원 연구, 유해 해양생물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의 관리와 같은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경우에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아 차년도로 이월('22년 16억 3,200만원, '23년 38억 4,800만원)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5%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E)	불용액 (F)
2021	200	-	200	188	-	12
2022	1,650	-	1,650	18	1,632	-
2023	3,573	1,632	5,205	1,357	3,848	-
2024*	16,082	3,848	19,930	700	16,082	3,148

* 2024년의 경우 D, E, F는 '24.12월 기준 예상액임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2년 12월에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고,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4년 9월에, 감리비 조정 검토는 10월에 완료하여, 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및 환경보전방안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공사 발주 예정으로 2025년부터 건립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진행상황 】

- ’21. 6. : 입지 선정평가 및 우선협의 대상지(경북 영덕군) 선정
- ’21. 11. : 타당성조사 완료 및 입지 선정 완료
- ’22. 4. : 사업부지 무상사용 등에 관한 협약 체결(해수부·경상북도·영덕군)
- ’22. 5. : 총사업비 신규 등록
- ’22. 7 : 예산 수시배정
- ’22. 9.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 ’22. 10. : 설계용역 공모
- ’22. 12. : 설계용역 공모작 당선
- ’22. 12. :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24. 3.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총사업비 증액(총사업비 439억원)
- ’24. 9~10. :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9월), 감리비 조정 검토완료(10월)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2026년 개관 및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입찰 공고 및 착공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 연례적인 예산액 조정을 고려한 편성의 정확도 제고 및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해양수산부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내에서 산지유통활성화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수요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산물 실질 거래 상황과 타 사업의 예산편성 규모를 고려하여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정산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은 산지위판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생산자(단체)의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원물 확보자금 및 직거래 자금,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등을 융자하여 수산물 유통구조의 건전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6억원(10.6%)이 증액된 1,31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113].

【 2025년도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산지 및 소지지 유통자금	117,624	118,686	95,212	131,286	12,600	10.6

113)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3068-300)

(나) 검토의견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은 산지와 소비지간 수산물의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생산자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지원대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의 내역사업으로 분류되는데,

① '산지위판장출하지원'은 산지위판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② '산지유통활성화'는 생산자(단체)의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원물확보자금 및 직거래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③ '도매시장출하지원'은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정가매매·수의매매[114]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융자를 위한 50억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결제자금 지원을 위한 ④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사업(예산액 55억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 4개의 내역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도매시장에서의 매매방법에 대해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가격과 물량을 정하고(정가),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이며, 수의매매는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출하자와 구매자(중도매인 등)가 협상을 통해 매매하는 방식임.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내역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지위판장출하지원	산지유통활성화	도매시장출하지원
사업내용	■ 산지위판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생산자(단체)의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원물확보자금 및 직거래 자금 융자 지원	■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융자
시작년도	■ (위판장) '79년 ■ (중도매인) '01년	■ (원물확보) '13년 ■ (직거래) '98년	■ (어대금) '82년 ■ (정가수의) '15년
지원대상	■ 위판장 ■ 산지중도매인	■ (원물확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회원조합 등 생산자(단체) ■ (직거래) 직판장 운영 수협 등 직거래 업체	■ (어대금)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정가수의매매)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지원규모	■ 96,686백만원 - (위판장) 77,350 - (중도매인) 19,936	■ 7,900백만원 - (원물확보) 4,000 - (직거래) 3,900	■ 14,100백만원 - (어대금) 7,600 - (정가수의) 6,500
융자한도	■ (위판장) 사업자당 50억원 * 부산공동어시장은 150억원 ■ (중도매인) 사업자당 7억원 * 신규 사업자는 7천만원	■ 당해 판매사업계획 80% 이내	■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
금리 및 상환기간	■ (위판장) 융자100%, 금리 3%, 1년 상환 ■ (중도매인) 융자 100%, 금리 3%, 1년 상환	■ (원물확보) 융자80%, 금리 3%, 3년상환 ■ (직거래) 융자 80%, 금리 3%, 1년 상환	■ (어대금) 융자 100%, 금리 3%, 1년 상환 ■ (정가수의) 융자 100% 금리 1.5%, 1년 상환
운용기관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자료: 해양수산부

(1) 예산의 연례적 조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해양수산부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요가 부족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사업 예산을 다른 내역사업으로 자체변경하여 집행한바 있음.

【 내역사업간 자체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배정액		조정사항	
	계 획 (a)	배정액 (b)	조정액 (c)	조정 후 배정액 (b+c)
◆ 2021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105,836	105,836	△8,971	96,865
산지유통활성화자금	7,900	7,900	△4,340	3,560
도매시장출하지원	14,100	14,100	+13,311	27,411
◆ 2022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96,686	96,686	△70	96,616
산지유통활성화자금	7,900	7,900	△840	7,060
도매시장출하지원	14,100	14,100	+910	15,010
◆ 2023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96,686	96,686	△70	96,616
산지유통활성화자금	7,900	7,900	△4,300	3,600
도매시장출하지원	14,100	14,100	+4,370	18,470
◆ 2024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96,686	96,686	+2,500	99,186
산지유통활성화자금	7,900	7,900	△5,900	2,000
도매시장출하지원	14,100	14,100	+3,400	17,500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내역사업간 조정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융자 신청 저조 등 사업수요 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사업 예산을 수요가 많은 내역사업으로 조정해 집행함으로써 불용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내역사업으로 융자되는 원물확보 및 직거래 자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수요가 증가한 내역사업으로 조정·집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① 내역사업간 조정액수가 크게는 당초 편성금액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작지 않고[115] 내역사업간 조정 뿐만 아니라, 개별 내역사업 내 융자 항목 간에도 매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의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짐.

- 특히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내역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 계획액 79억원 중 43억 4,000만원을, 2023년 79억원 중 43억원을, 2024년도 79억원 중 59억원을 타 내역사업으로 조정하여 최근 4년동안 연례적으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타 사업으로 조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도매시장 출하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2021년 계획액 141억원 대비 2배가 넘는 133억 1,000만원을,

115) 2021년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지원 내역사업의 당초 편성액은 141억원이었으나, 타 내역사업으로부터 133억원을 조정하여 최종 배정액은 274억원에 달함. 2023년의 경우에도 도매시장 출하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편성액(141억원)의 30%에 달하는 43억 7,000만원이 조정(증)되었고, 2024년의 경우 같은 도매시장 출하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편성액(141억원)의 24%에 상응하는 34억원이 조정(증)되었음.

2022년에는 9억 1,000만원을, 2023년에는 43억 7,000만원을, 2024년에는 34억원을 조정받아 사용하였음.

따라서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간, 그리고 내역사업 내 융자항목 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안 중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21억원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사업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DC) 등 수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 원물확보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 업체를 지원하는 등 유통구조 선진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액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업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정산자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필요

□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116]에서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정산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 50억원 및 55억원을 2025년 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음.

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 지원사업은 같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구매 결제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고,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자금 지원사업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가 구매 즉시(1일)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임.

【 2025년도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 지원·정산지원 사업】

구 분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 지원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사업내용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 결제자금 융자 지원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가 구매 즉시(1일)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구매자로 등록 및 거래 승인된 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기관) *여신사용 희망자는 정산소 운영

116) 농림축산식품부와 AT공사는 2023년 11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시켰으며, 2024.7.1.부터 수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함.

구 분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자금 지원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기관의 심사를 받아 별도의 약정 체결
지원규모	▪ 5,000백만원(2025년)	▪ 5,500백만원(2025년)
지원한도/금리	▪ 개소당 10억원 / 연1.5%, 1년만기 *수발기금 운영지침에 따름	▪ 무이자, 1년 상환
사업의무	▪ 융자금액의 100% 이상 수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의무 미이행시 미이행 상당 대출금에 대해 위약금 징수	-
비 고	▪ 기존 내역사업(도매시장 출하지원)에 포함	▪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

자료: 해양수산부

□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7월 취급개시 이후 9월 말까지 3개월간 총 거래물량은 857톤, 거래액은 26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농축산물의 거래물량(54,836톤) 및 거래액(1,468억원)의 1.5%, 1,7%임[117].

【 온라인도매시장 농축산물, 수산물 거래현황* 】

(단위: 억원, 톤, %)

구분	합계		7월		8월		9월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농축산물(A)	1,468	54,836	466	20,970	441	15,773	561	18,093
수산물(B)	26	857	10	223	2	236	14	398
비율(B/A)	1.7	1.5	2.1	1.0	0.4	1.4	2.4	2.1
합계(A+B)	1,494	55,693	476	21,193	443	16,009	575	18,491

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 2024.7월~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집계
자료: 해양수산부

117) 농축산물 거래 개시 첫 3개월('23.10~'24.1) 거래액(86억원), 거래물량(3,007톤) 대비해서는 30% 수준에 해당함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 결제지원 자금, 정산지원 자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50억원 및 55억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380억원과 220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거래규모 대비로는 편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임[118].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사업'의 경우 연간 거래목표액을 1,000억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액 55억원을 산출[119]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총 거래금액이 26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예산액의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수산물 유통단계의 선진화를 통해 합리적인 구조와 비용 하에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현재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120]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바,

118)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농축산물 첫 거래 실적(3개월, 86억원)과 비교할 때 과다 편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119) 55억원 = 거래목표액 1,000억원 ÷ 18.25(무이자 20일)
120)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 중 실증특례는 현행 규제의 적용 없이 제도의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것을 뜻함.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5.10월에 만료될 예정[121]이므로 해당 기간 전까지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근거법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122]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1) 2023.10~2025.10.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12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024.6.28.), 의안번호 제2201109호